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 촌 진 흥 청 소관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전 문 위 원 임 재 금

목 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1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

1. 총 괄 ---- 3

가. 총수입·총지출 ---- 3

나. 세입·세출예산안(총계 기준) ---- 6

다. 기금운용계획안 ---- 9

라.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 10

2.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 12

가. 2025년 신규사업 ---- 12

나. 2024년 종료사업 ---- 15

3.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 16

Ⅱ. 예산안 총괄 분석 ---- 21

1. 수입 관련 ---- 21

2. 지출 관련 ---- 23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약 ---- 36

Ⅲ. 회계·기금별 검토 ---- 41

1. 일반회계 ---- 41

가. 개 요 ---- 4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43

1) 세입: 세입예산 규모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미회수채권 관리 강화 필요 -- 43

(1) 세입예산 규모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44
(2) 미회수채권 관리 강화 필요 ---- 48
2) 공통: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에 대한 적정한 성과목표 설정 필요 ---- 51
3)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 집행 불가능한 일부 예산 감액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65
(1) 집행 불가능한 일부 예산 감액 필요 ---- 68
(2)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70
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 농특위 업무연속성·범부처 협의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및 임차료 절약 필요 ---- 74
(1) 위원장 임기 명시 등으로 농특위 업무연속성 제고 필요 ---- 75
(2) 부처간 협업 역량 강화 필요 ---- 77
(3) 회의장 임차료 절감 노력 필요 ---- 80
(4) 사무실 임차료 절감 노력 필요 ---- 84
5) 국제농업협력(ODA) :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86
6)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안 편성 필요 ---- 93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97
가. 개 요 ---- 9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00
1) 세입: 농어촌특별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필요 ---- 100
2) 농촌고용인력지원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의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107
3) 농업재해보험 :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실제 가입 수요에 기반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 116
(1)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117
(2) 실제 보험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 120
4) 농식품바우처 :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 123

5) 농산물안전성조사 :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 130
6) 농촌용수관리 : 목표수질 미달성 지구의 수질개선 방안 마련 필요 -- 136
7) 국립농업박물관운영 : 국립농업박물관 운영 출연금의 비목 변경, 사업비 비중 상향, 기타 공공기관 지정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42
(1) 기관운영출연금 중 사업비 항목의 사업출연금으로의 비목 변경 필요 -- 143
(2) 사업비 비중 상향 필요 ---- 145
(3)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노력 필요 ---- 147
(4) '찾아가는 국립농업박물관' 등 박물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148
8)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 농촌공간정비사업 일정관리 철저 및 농촌공간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150
9)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 :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및 관련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및 일정관리 노력 필요 ---- 157
(1)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 160
(2)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 ---- 161
(3)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 ---- 165
10) 푸드서비스 선진화 :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의 타부처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편성금액 조정 필요 ---- 168
(1) 예산편성안 관련 검토 ---- 169
(2) 조정안 관련 검토 ---- 173
11)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집행관리 및 국비보조 취득재산 관리 철저 ---- 176
(1)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사업 집행관리 철저 ---- 177
(2)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재산의 구분등기 등 관리 철저 필요 -- 180
12)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사업 성과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182
13) 종자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중복 편성 예산 감액 필요 ---- 186
14) 연구개발(R&D)사업 공통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R&D)사업 관련 미흡한 관리·감독 개선 필요 ---- 191
15)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운영 개선 및 저

탄소 축산물 인증제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명확성 제고 필요 ----- 202
(1)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운영 개선 필요 ---------- 203
(2)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명확성 제고 필요 --- 208
16)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 211
17)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지원: 연내 폐업자에 대한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연내 미지급 가능성 고려 필요 등 ---------- 217
(1) 연내 폐업자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연내 미지급 가능성 고려 필요 -- 219
(2)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 개선 필요 --- 222
18) 살처분 보상금: 방역관련 의무 준수 유인체계의 보완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필요 ---------- 228
19) 가축백신지원: 아프리카마역 예방백신 비축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234
(1) 아프리카마역 예방백신 비축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235
(2) 철저한 백신 접종을 통한 럼피스킨병 발생 억제 필요 ---------- 239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245
가. 개 요 ---------- 245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247
가. 개 요 ---------- 247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48
가. 개 요 ---------- 248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50
가. 개 요 ---------- 250

7. 양곡관리특별회계 ---------- 251
가. 개 요 ---------- 251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253
가. 개 요 ---- 25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55
1)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가입물량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255
2) 비축지원: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적으로 고려 필요 등 ---- 267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수수료 편성 비목 변경 필요 ---- 268
(2) 신규 사업인 과실지정 출하지원 사업의 관리 철저 필요 ---- 271

9. 농지관리기금 ---- 276
가. 개 요 ---- 27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78
1) 맞춤형농지지원(융자):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업계획 변경 지양 등 필요 ---- 278
(1)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업계획 변경 지양 등 필요 ---- 280
(2)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철저한 관리 등 필요 ---- 282

10. 축산발전기금 ---- 285
가. 개 요 ---- 28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87
1)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선정 필요 ---- 287
2)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건비 별도 편성 및 통합 운영 필요 ---- 292
3) 가축분뇨처리지원 :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및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필요 ---- 296
4) 가축위생방역지원: 안전예산 확충 등의 방안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02

11.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309
가. 개 요 ---- 30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11
1) 공익기능증진직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 및 공익직불사업 예산의 변동성 최소화 필요 ---- 311
(1)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312
(2) 농특회계로의 이관을 위한 공익직불사업 예산 변동성 최소화 필요 -- 319

1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322
가. 개 요 ---- 32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24
1) 축사시설 현대화 :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및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필요 ---- 324

1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331
가. 개 요 ---- 331

14. 양곡증권정리기금 ---- 333
가. 개 요 ---- 333

[농촌진흥청 소관] ---- 335

I. 예산안 개요 ---- 337

1. 총 괄 ---- 337
가. 총수입·총지출 ---- 337
나. 세입·세출예산안 ---- 339

2.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 341
가. 2025년 신규사업 ---- 341
나. 2024년 종료사업 ---- 342
다. 주요 증액사업 ---- 343

3. 연구개발(R&D) 사업규모 ---- 344

4.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주요 특징 ---- 346

Ⅱ. 예산안 총괄 분석 ---- 353
1. 수입 관련 ---- 353
2. 지출 관련 ---- 354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약 ---- 360

Ⅲ. 회계·기금별 검토 ---- 361
1. 일반회계 ---- 361
가. 개 요 ---- 36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64
1)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R&D) : 장립종 쌀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364
2)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R&D) : 합리적 성과지표 및 사업 추진 출연 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371
(1) 합리적인 성과지표 설정 필요 ---- 375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 범위에 법적 근거 명시 필요 ---- 378
3)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R&D) :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지연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380
4) 치유농업확산센터 구축 : 공사비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 390
5) 축산 시험 연구(R&D) : 편성된 내역에 부합한 예산 집행 필요 399
6) 농업기술 정보화 : 소속기관 운영 시스템 내역사업 이관 필요 등 -- 406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14
가. 개 요 ---- 414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16
가. 개 요 ---- 41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총 괄

가. 총수입·총지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7개 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구성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총수입[1]은 13조 5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2억원(△3.4%) 감소하였음.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1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조 6,02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0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

1) 총수입은 총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회계의 총계,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를 모두 더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함. 여기서 내부거래수입이란, 어느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차입이나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됨. 보전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 입장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함.

계 0.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4,893억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3,608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3,924억원, 축산발전기금 6,349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71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416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61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 3억원임.

이를 성질별로 보면, 농어촌특별세 7조 4,153억원,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789억원, 재산수입 2,172억원, 경상이전수입 1조 2,879억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515억원, 수입대체경비수입 12억원, 관유물매각대 7,967억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조 7,037억원 등으로 구성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총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7,807,376**	**8,463,502**	**8,159,239**	**△304,263**	**△3.6**
-일반회계	7,509	21,216	21,333	117	0.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171,561	7,833,160	7,602,011	△231,149	△3.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504	43,047	43,047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35	-	34	순증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43	11,822	3,481	△8,341	△70.6
-양곡관리특별회계	619,324	554,257	489,333	△64,924	△11.7
기 금	**4,532,235**	**5,042,077**	**4,893,186**	**△148,891**	**△3.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47,239	2,274,402	2,360,763	86,361	3.8
-농지관리기금	1,329,179	1,697,569	1,392,423	△305,146	△18.0
-축산발전기금	558,891	475,590	634,946	159,356	33.5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기금	41,570	4,790	7,066	2,276	47.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63,730	430,907	341,612	△89,295	△20.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88,309	158,532	156,089	△2,443	△1.5
-양곡증권정리기금	3,317	287	287	-	-
합 계	**12,339,611**	**13,505,579**	**13,052,425**	**△453,154**	**△3.4**

주: 일반수입 기준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2] 18조 7,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4억원(2.2%) 증가하였음.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9,25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조 3,773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3,624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7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7,925억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조 1,897억원, 농지관리기금 1조 8,265억원, 축산발전기금 9,089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조 9,951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890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06억원임.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년 대비 2.7%(75억원) 증가한 2,865억원, 자치단체이전(경상 및 자본)은 전년 대비 2.7%(1,502억원) 증가한 5조 6,672억원,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0%(13억원) 증가한 323억원, 융자사업은 전년 대비 5.7%(△1,953억원) 감소한 3조 2,465억원, 일반출연금은 전년 대비 145.8%(1,213억원) 증가한 2,045억원임.

2)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함(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예 산	9,210,120	9,896,323	10,489,819	593,496	6.0
-일반회계	738,097	833,870	925,345	91,475	1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400,387	5,485,998	5,377,317	△108,681	△2.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150	17,363	16,495	△868	△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31,728	795,256	1,362,423	567,167	71.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7,817	15,697	△2,120	△11.9
-양곡관리특별회계	2,324,758	2,746,019	2,792,542	46,523	1.7
기 금	7,822,527	8,442,914	8,259,777	△183,137	△2.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41,111	2,141,807	2,189,650	47,843	2.2
-농지관리기금	1,829,801	2,023,720	1,826,528	△197,192	△9.7
-축산발전기금	979,274	910,508	908,935	△1,573	△0.2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지불기금	2,544,839	2,909,217	2,995,105	85,888	3.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26,787	337,063	288,954	△48,109	△14.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715	120,599	50,605	△69,994	△58.0
-양곡증권정리기금	-	-	-	-	-
합 계	17,032,647	18,339,237	18,749,596	410,359	2.2

주: 일반지출 기준

나. 세입·세출예산안(총계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16조 8,739억원으로 전년 대비 4,388억원(△2.5%) 감소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조 13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0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7,925억원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 농어촌특별세가 7조 6,1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6억원(△2.7%)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1조 2,644억원(47.8%)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편성하지 않았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7,509	21,216	21,333	117	0.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242,220	14,490,553	14,013,456	△477,097	△3.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504	43,047	43,047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36	-	34	34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43	11,822	3,481	△8,341	△70.6
양곡관리특별회계	2,429,035	2,746,019	2,792,542	46,523	1.7
합 계	**16,687,747**	**17,312,657**	**16,873,893**	**△438,764**	**△2.5**

주: 총계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3조 7,4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637억원(7.0%)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조 2,67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조 2,893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3,624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7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7,925억원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재해보험 1,448억원 및 농업자금이차보전 1,2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해대책비 1,200억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세사업계정에서 구조개선계정으로 전출금 9,760억원이 감액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493,925	5,804,217	7,267,309	1,463,092	25.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268,558	12,799,379	12,289,278	△510,101	△4.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150	17,363	16,495	△868	△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31,728	795,256	1,362,423	567,167	71.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17,817	15,697	△2,120	△11.9
양곡관리특별회계	2,324,758	2,746,019	2,792,542	46,523	1.7
합 계	**20,834,119**	**22,180,051**	**23,743,744**	**1,563,693**	**7.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구성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조 4,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766억원(△18.5%) 감소하였음.

기금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조 5,978억원, 농지관리기금 2조 3,289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 254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조 1,045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826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059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은 5,509억원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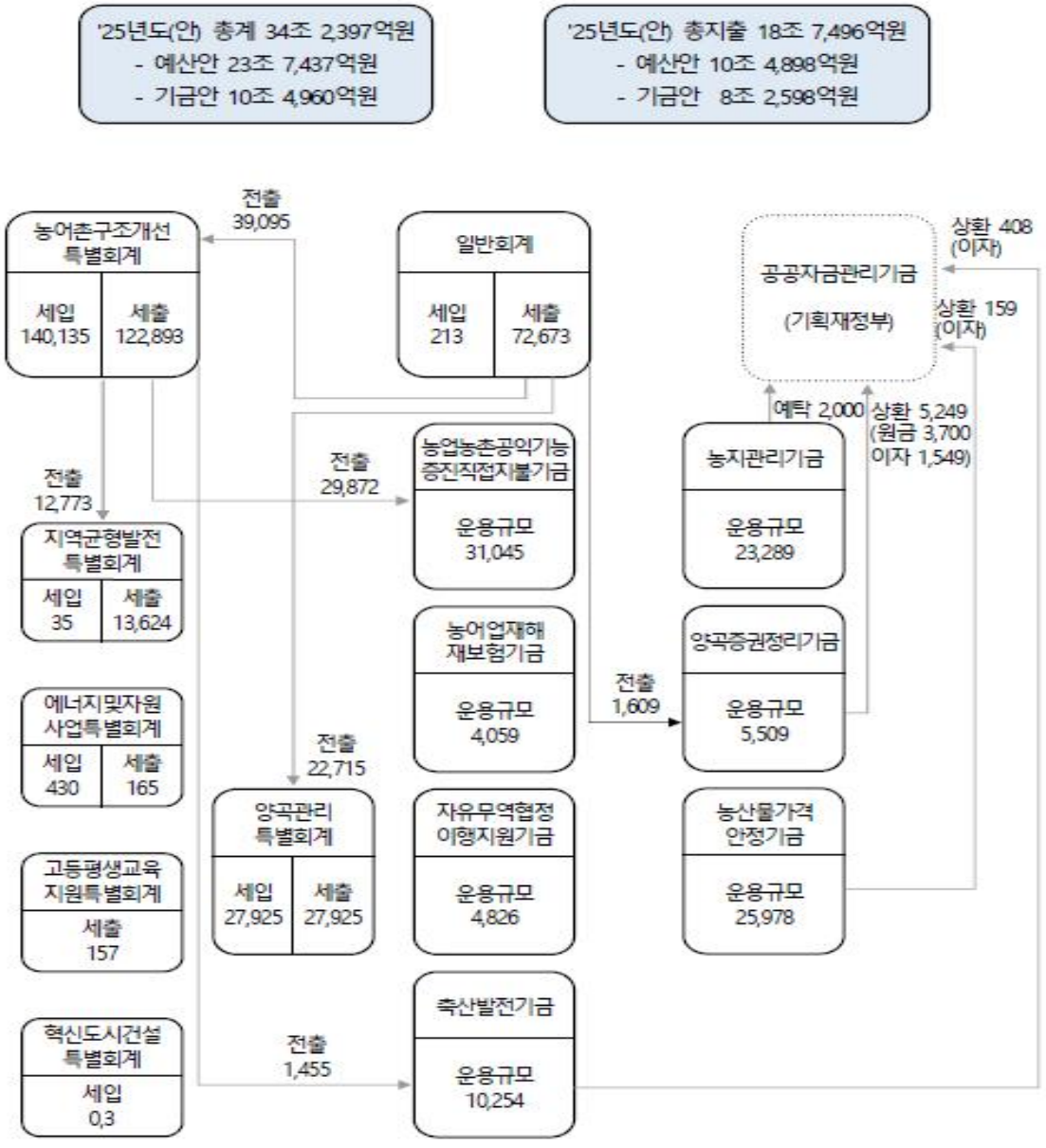
구 분	2023 결산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감	
				B-A	(B-A)/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88,578	2,394,770	2,597,796	203,026	8.5
농지관리기금	3,153,289	4,006,330	2,328,915	△1,677,415	△41.9
축산발전기금	1,116,843	962,087	1,025,446	63,359	6.6
농업농촌공익증진직접지불기금	2,781,691	3,019,399	3,104,461	85,062	2.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26,199	588,566	482,612	△105,954	△18.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00,150	370,372	405,862	35,490	9.6
양곡증권정리기금	1,056,262	1,531,096	550,904	△980,192	△64.0
합 계	**11,123,012**	**12,872,620**	**10,495,996**	**△2,376,624**	**△18.5**

주: 총계 기준

라.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 일반회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3조 9,095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2조 2,715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1,609억원이 각각 전출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2,773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2조 9,872억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455억원이 각각 전출됨.

□ 농지관리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000억원을 예탁함.

□ 축산발전기금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각각 408억원 및 159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700억원의 예수원금 및 1,549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함.

2.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가. 2025년 신규사업 내역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신규사업은 총 10개 사업, 892억원 규모임.

□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은 농촌소멸 극복을 위해 농촌 체험 기회 확대와 빈집 활용 제고로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②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사업은 개식용 관련 업계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한 이행촉진지원금, 시설 철거비용, 시설물 잔존가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③ 농식품기후정보플랫폼구축 사업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사업 연계, 데이터 실증 및 기후변화정보 맞춤형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업관계자에게 체계적인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임.

④ 스마트과수특화단지조성 사업은 기계화, 무인화된 스마트 과수원 조성을 위해 생산기반 정비, 공동 농기계 구비 및 농가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⑤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사업은 농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위해 데이터 기반 핵심 기술 확보 및 디지털 영농 모델 개발·보급을 통해 노지 스마트팜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임.

⑥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행 육종 핵심기술의 현장 확산을 촉진하고, 종자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⑦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R&D) 사업은 식량 안보 위협, 경지 면적 감소, 기후위기 심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서 K-수직농장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임.

⑧ 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R&D) 사업은 축산 현장의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소모성 질병의 진단·예방기술 및 의약품 등의 국산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증대 및 질병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임.

⑨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R&D) 사업은 농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농산업 현장의 문제해결 및 부가가치 제고 목적의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⑩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기술개발(R&D) 사업은 기후변화 및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대응 첨단기술,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공급관리 기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5년 예산안	회계명	사 업 내 용
▪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1,989	농특회계	• 농촌소멸 극복을 위해 농촌 체험 기회(농촌 체류 활성화 지원) 확대와 빈집 활용 제고(빈집은행 활성화, 빈집재생)로 생활인구 유입 촉진
▪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54,413	농특회계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 대한 전업·폐업 자금 지원
▪ 농식품기후정보플랫폼구축	87	농특회계	•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책·사업 연계, 데이터 실증 및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을 추구
▪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1,278	농특회계	• 기계화, 무인화를 위한 스마트 과수원 조성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공동 농기계 구비, 농가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지원
▪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6,750	농특회계	• 농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위해 데이터 기반 핵심 기술 확보 및 디지털 영농 모델 개발·보급을 통한 노지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
▪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 기술개발(R&D)	6,375	농특회계	•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행 육종 핵심기술의 현장 확산 촉진, 종자 부가가치 향상 등 산업적 활용도 제고기술 개발 지원
▪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R&D)	6,150	농특회계	• 식량 안보 위협, 경지 면적 감소, 기후위기 심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대응 수단으로서 K-수직농장 모델 구축 및 국내·외 확산 지원
▪ 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 국산화기술개발(R&D)	6,375	농특회계	• 축산 현장의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소모성 질병의 진단·예방기술 및 의약품 등 국산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증대 및 질병대응력 향상
▪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R&D)	1,500	농특회계	• 농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농산업 현장의 문제해결 및 부가가치 제고 목적의 혁신기술 개발 지원
▪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 관리기술개발(R&D)	4,312	농특회계	• 기후변화 및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대응 첨단기술,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공급관리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합 계	89,229		

나. 2024년 종료사업

□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산업식품햄프산업클러스터조성 등 총 12개로, 2025년 해당 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액은 총 767억 6,700만원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4년도 종료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 예산
산업식품용햄프산업클러스터조성(경북안동)	1,250
시설농가면세유유가연동보조금한시지원	6,972
수삼경매제도입타당성조사용역	100
원유소비활성화(융자)	7,000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28,815
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R&D)	13,933
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R&D)	3,039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R&D)	11,505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산업화(R&D)	3,786
동식물검역검사(ODA)	242
농산물안전성조사(ODA)	49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ODA)	76
합 계 (12개 사업)	**76,767**

3.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정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7,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4억원(2.2%) 증가하였음.

예산안의 일반지출 규모는 10조 4,8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5,935억) 증가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2,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831억) 감소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 감 (B-A)	%
▣ 예산+기금(총지출)	183,392	187,496	4,104	2.2
○ 예산	98,963	104,898	5,935	6.0
○ 기금	84,429	82,598	△1,831	△2.2

□ 부문별로는 혁신성장·체질강화(1.8%), 농가소득·경영안정(2.1%), 농촌복지·지역개발(1.9%), 양곡관리·유통혁신(2.0%), 재해대책·기반정비(0.1%), 식품(5.1%), 동물복지(239.3%) 분야는 증가한 반면, 기타사업비(△3.8%)는 감소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문별 총지출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비중(%)	'25예산안 (B)	비중(%)	전년대비 (B-A)	%
총지출		183,392	100	187,496	100	4,104	2.2
부문별	◇ 사업비	178,921	97.6	182,913	97.6	3,992	2.2
	▣ 농업·농촌	169,212	92.3	172,187	91.8	2,975	1.8
	• 혁신성장·체질강화	39,014	21.3	39,731	21.2	717	1.8
	• 농가소득·경영안정	52,636	28.7	53,722	28.7	1,086	2.1
	• 농촌복지·지역개발	13,350	7.3	13,597	7.3	247	1.9
	• 양곡관리·유통혁신	44,819	24.4	45,718	24.4	899	2.0
	• 재해대비·기반정비	19,393	10.6	19,419	10.4	26	0.1
	▣ 식품	8,939	4.9	9,397	5.0	458	5.1
	▣ 동물복지	242	0.1	821	0.4	579	239.3
	▣ 기타 사업비	528	0.3	508	0.3	△20	△3.8
	◇ 기본적 경비	4,471	2.4	4,583	2.4	112	2.5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정비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실적과 이에 따른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추가적인 일정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계속적인 사업지연 발생 시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규모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최근 3년 연구개발과제(R&D) 환수처분 등에 대한 환수조치 결과, 약 70%에 이르는 6억 5,900만원의 미환수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미환수 금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리·감독에 미흡했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환수 금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지원 사업은 폐업한 개사육농장주에 대하여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정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마련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대로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이 이행되는 경우, 2025년 8월 7일 이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는 2025년에 지급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장주의 폐업이행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가축백신지원 사업은 아직 국내에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마역(馬疫) 예방백신을 비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마역 발생시 초동대응 물량을 크게 초과한 전체 말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백신 비축규모를 책정하고 있는바,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가입물량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고, 실집행률 수준도 2023년 기준 9.7% 수준으로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실적 제고 및 가입물량 확대를 위하여 지역농협 등의 사업비 조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도 목표 가입물량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규모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은 2024년 사업 수행 도중 지원대상을 청년농에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지연된 상황에서 2025년 내 사업 완료라는 목표 달성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계별 소요기간 단축으

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바,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일곱째,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료원료 구매자금 사업은 사료 제조기업의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사료값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2024년 동 사업 추진 시 사료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기업들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예산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Ⅱ. 예산안 총괄 분석

1. 수입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예산안 총수입[3]은 13조 524억원이며, 2021년~2023년 결산 결과 매년 예산안에 비하여 실제 수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식품부 총수입 예산안 대비 실제 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예산안 총수입	11,365,528	12,583,926	13,048,637	13,505,579	13,052,425
실제 수입(결산)	15,250,963	12,614,332	13,194,758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 2025년도 농어촌특별세 세입 예산안은 7조 4,153억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총수입의 56.8%를 차지하고 있음.

3) 총수입은 총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회계의 총계,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를 모두 더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함. 여기서 내부거래수입이란, 어느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차입이나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됨. 보전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 입장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함.

【농어촌특별세 세입 예산안 대비 실제 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농특세 세입 예산안	5,470,700	6,680,200	6,988,000	7,619,900	7,415,300
농특세 실제 수입(결산)	8,899,997	7,013,196	6,562,807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총수입은 2024년도 대비 3.4% 감소하였으며, 이 중 농어촌특별세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에 비하여 2,046억원 감소(△2.7%)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수입 감소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예산안 총수입 대비 농어촌특별세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A)	2025년안(B)	증감액(B-A)	증감률(B-A/A)
예산안 총수입	13,505,579	13,052,425	△453,154	△3.4
농특세 세입 예산안	7,619,900	7,415,300	△204,600	△2.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농어촌특별세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보다 소폭 증가(56.4%→56.8%)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총수입 중 농어촌특별세 세입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중	42.2	48.1	53.1	53.6	56.4	56.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2. 지출 관련

□ 2025년도 정부 총지출[4]은 677.4조원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하여 3.2%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지출은 18조 7,496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해 2.2% 증가하였음.

정부 총지출 중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2.79%→2.77%)하였음.

【정부 총지출 중 부처별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예산 (본예산)	2025년 예산안	비중	
			2024 예산	2025 예산안
총지출	**6,566,182**	**6,774,108**	**100.0**	**10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69	0	0.00	0.00
감사원	1,462	1,508	0.02	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54	646	0.01	0.01
경찰청	129,907	135,364	1.98	2.00
고용노동부	336,825	353,661	5.13	5.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7	253	0.00	0.00
공정거래위원회	1,584	1,634	0.02	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6,213	190,178	2.84	2.81
관세청	6,624	6,583	0.10	0.10
교육부	957,888	1,048,767	14.59	15.48
국가교육위원회	103	106	0.00	0.00
국가보훈부	64,057	64,814	0.98	0.96
문화재청	13,659	13,878	0.21	0.20
국가인권위원회	413	424	0.01	0.01
국가정보원	8,921	9,310	0.14	0.1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604	6,747	0.10	0.10
국민권익위원회	1,116	1,054	0.02	0.02
국방부	433,523	451,769	6.60	6.67
국세청	19,512	20,040	0.30	0.30

4)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함(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구 분	2024년 예산 (본예산)	2025년 예산안	비중	
			2024 예산	2025 예산안
국토교통부	609,439	582,161	9.28	8.59
국회	7,677	7,762	0.12	0.11
금융위원회	15,031	17,409	0.23	0.26
기상청	4,482	4,698	0.07	0.07
기획재정부	407,195	423,988	6.20	6.26
농림축산식품부	183,392	187,496	2.79	2.77
농촌진흥청	10,974	10,616	0.17	0.16
대법원	21,738	23,127	0.33	0.34
대통령경호처	1,341	1,391	0.02	0.0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031	1,040	0.02	0.02
문화체육관광부	69,545	71,214	1.06	1.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50	358	0.01	0.01
방송통신위원회	491	505	0.01	0.01
방위사업청	176,432	180,607	2.69	2.67
법무부	43,640	44,774	0.66	0.66
법제처	454	463	0.01	0.01
병무청	4,119	4,732	0.06	0.07
보건복지부	1,223,779	1,256,565	18.64	18.55
산림청	26,126	26,246	0.40	0.39
산업통상자원부	115,188	115,010	1.75	1.70
새만금개발청	477	1,128	0.01	0.02
소방청	3,404	3,311	0.05	0.05
식품의약품안전처	7,182	7,489	0.11	0.11
여성가족부	16,861	17,769	0.26	0.26
외교부	41,905	43,194	0.64	0.64
우주항공청	0	9,614	0.00	0.14
원자력안전위원회	1,360	1,488	0.02	0.02
인사혁신처	266,541	284,888	4.06	4.21
재외동포청	1,067	1,071	0.02	0.02
조달청	2,425	2,466	0.04	0.04
중소벤처기업부	149,497	152,920	2.28	2.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572	3,635	0.13	0.0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67	169	0.00	0.00
질병관리청	6,488	4,921	0.10	0.07
통계청	4,253	5,628	0.06	0.08
통일부	10,965	10,554	0.17	0.16
특허청	5,485	5,641	0.08	0.08
해양경찰청	18,967	19,923	0.29	0.29
해양수산부	66,879	67,837	1.02	1.00
행정안전부	724,474	720,872	11.03	10.6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48	2,288	0.02	0.03
헌법재판소	568	585	0.01	0.01
환경부	135,534	139,819	2.06	2.06

※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정부 총지출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3.1%였으나, 2021년에 3% 미만으로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3%를 넘지 못하고 있음.

【정부 총지출 중 농림축산식품부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2020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2025년(안)
비중	3.1%	2.9	2.8	2.7	2.8	2.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 2025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49조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 일반·지방행정(111.3조원), 교육(98.5조원)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R&D(12.1%), 보건·복지·고용(4.8%), 환경(4.0%) 등의 순으로 높고, 전년 대비 총지출 규모가 감소한 분야는 SOC(△3.4%) 분야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2025년 예산안은 25.9조원으로, 2024년도에 비하여 2% 증가하였음.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 : 조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본예산 대비	
			증감액 (B-A)	증감률 (B-A/A)
1. 보건·복지·고용	237.6	249.0	11.4	4.8
2. 교육	95.2	98.5	3.3	3.5
3. 문화·체육·관광	8.7	8.8	0.1	1.1
4. 환경	12.5	13.0	0.5	4.0
5. R&D	26.5	29.7	3.2	12.1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3	0.3	1.1
7. SOC	26.4	25.5	△0.9	△3.4
8. 농림·수산·식품	25.4	25.9	0.5	2.0
9. 국방	59.4	61.6	2.2	3.7
10. 외교·통일	7.5	7.8	0.3	4.0
11. 공공질서·안전	24.4	25.1	0.7	2.9
12. 일반·지방행정	110.5	111.3	0.8	0.7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12대 분야의 지난 5년간 증가율을 보면, 환경(13.3%), R&D(11.0%), 일반·지방행정(10.0%)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향후 5년간 증가율은 보건·복지·고용(4.8%), 일반·지방행정(4.5%) 순으로 증가율이 높으며, 12대 모든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증가율보다 낮음.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난 5년간 증가율은 5.1%로 12대 분야 중 세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향후 5년간 증가율은 1.4%로 네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12대 분야 재원배분 변화】

(단위 : 조원, %)

구분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1 본예산	2022 본예산	2023 본예산	지난 5년간 증가율	2024 본예산	2025 예산안	2026 계획	2027 계획	2028 계획	향후 5년간 증가율
1. 보건・복지・고용	161.0	180.5	199.7	217.7	226.0	8.8	237.6	249.0	261.0	273.5	286.3	4.8
2. 교육	70.6	72.6	71.2	84.2	96.3	8.1	95.2	98.5	102.1	105.5	108.9	3.4
3. 문화・체육・관광	7.2	8.0	8.5	9.1	8.6	4.5	8.7	8.8	8.9	9.0	9.1	1.0
4. 환경	7.4	9.3	10.6	11.9	12.2	13.3	12.5	13.0	13.1	13.3	13.4	1.7
5. R&D	20.5	24.1	27.4	29.8	31.1	11.0	26.5	29.7	30.0	30.3	30.5	3.5
6. 산업・중기・에너지	18.8	37.2	28.6	31.3	26.0	8.4	28.0	28.3	28.6	29.0	29.3	1.1
7. SOC	19.8	23.2	26.5	28.0	25.0	6.0	26.4	25.5	26.0	26.4	26.9	0.4
8. 농림・수산・식품	20.0	21.5	22.7	23.7	24.4	5.1	25.4	25.9	26.3	26.6	26.8	1.4
9. 국방	46.7	50.2	52.8	54.6	57.0	5.1	59.4	61.6	63.4	65.4	67.1	3.1
10. 외교・통일	5.1	5.5	5.7	6.0	6.4	5.8	7.5	7.8	7.9	8.0	8.1	1.9
11. 공공질서・안전	20.1	20.8	22.3	22.3	22.9	3.3	24.4	25.1	25.7	26.3	26.8	2.3
12. 일반・지방행정	76.6	79.0	84.7	98.1	112.2	10.0	110.5	111.3	118.9	125.4	131.9	4.5

* 향후 5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로 작성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정부 전체의 의무지출은 365.6조원으로 총지출의 54%를 차지하여, 재량지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무지출은 3.7조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의 19.5%에 불과하여,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5].

5) 일반적으로 재량지출의 비중이 높을 경우, 정책기조·세수여건 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의무/재량지출 비율 비교】

(단위 : 조원, %)

	정부 전체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	677.4	18.7
의무지출	365.6	3.7
(비중)	(54.0)	(19.5)
재량지출	311.8	15.0
(비중)	(46.0)	(80.5)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농림축산식품부 의무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회계/기금	2024년 본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가액	증가율
1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870,184	2,953,622	84,438	2.9
2	수입양곡대	양곡관리특별회계	616,262	592,206	△24,056	△3.9
3	살처분보상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1,315	81,315	-	-
4	국제기구분담금(ODA)	일반회계	23,252	28,391	5,139	22.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무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향후 5년간 증가율은 10.8%, 살처분보상금 사업은 6.9%로 나타남.

【향후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의무지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1 본예산	2022 본예산	2023 본예산	지난 5년간 증가율	2024 본예산	2025 예산안	2026 계획	2027 계획	2028 계획	향후 5년간 증가율
수입 양곡대	379,167	432,076	440,426	432,194	554,496	10.0	616,262	592,206	592,983	592,983	592,983	△1.0
국제기구 분담금 (ODA)	16,216	19,214	19,819	18,880	20,485	6.0	23,252	28,391	29,300	33,900	38,600	13.5
살처분 보상금	60,000	75,000	59,930	55,795	50,215	△4.4	81,315	81,315	106,000	106,000	106,000	6.9
공익기능 증진직불	-	2,631,428	2,417,206	2,422,186	2,857,596	2.8	2,870,184	2,953,622	3,733,977	4,045,221	4,322,277	10.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안은 5조 6,672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하여 1,503억원(2.7%)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31개 부처 중 5번째로 큰 규모임.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안 부처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24 예산	일반회계(A)		특별회계(B)		기금(C)		합계 (D= A+B+C)
		2025 예산안	A/D	2025 예산안	B/D	2025 예산안	C/D	
보건복지부	536,579	530,569	94.7	15,588	2.8	13,940	2.5	560,097
환경부	76,361	3,477	4.4	69,017	87.0	6,862	8.6	79,356
교육부	52,697	55,010	73.1	20,252	26.9	-	0.0	75,263
국토교통부	69,804	32,372	44.9	30,647	42.5	9,021	12.5	72,039
농림축산식품부	55,169	-	0.0	22,740	40.1	33,932	59.9	56,672
행정안전부	24,553	4,127	23.6	13,362	76.4	-	0.0	17,488
여성가족부	14,491	5,323	34.9	892	5.9	9,017	59.2	15,233
문화체육관광부	12,062	1,606	12.2	4,164	31.6	7,403	56.2	13,173
산림청	10,945	4,672	42.3	6,366	57.7	-	0.0	11,038

해양수산부	10,361	676	6.2	10,094	92.3	165	1.5	10,935
산업통상자원부	7,196	245	3.4	5,019	69.7	1,938	26.9	7,202
국가유산청	6,524	5,936	88.8	282	4.2	470	7.0	6,689
기획재정부	6,342	-	0.0	-	0.0	6,322	100.0	6,322
농촌진흥청	2,223	896	43.4	1,169	56.6	-	0.0	2,065
고용노동부	2,505	854	43.2	1,120	56.7	1	0.1	1,975
중소벤처기업부	1,473	-	0.0	1,658	98.8	20	1.2	1,6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96	33	2.2	1,473	97.8	-	0.0	1,506
식품의약품안전처	745	733	95.0	38	5.0	-	0.0	771
외교부	70	501	100.0	-	0.0	-	0.0	501
법무부	372	1	0.3	-	0.0	386	99.7	387
소방청	237	287	100.0	-	0.0	-	0.0	287
통일부	222	106	92.2	-	0.0	9	7.8	115
대법원	142	112	100.0	-	0.0	-	0.0	112
질병관리청	171	108	100.0	-	0.0	-	0.0	108
새만금개발청	22	93	100.0	-	0.0	-	0.0	93
경찰청	67	27	35.0	50	65.0	-	0.0	77
국가보훈부	106	43	64.3	24	35.7	-	0.0	67
방위사업청	23	30	100.0	-	0.0	-	0.0	3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8	100.0	-	0.0	-	0.0	8
재외동포청	-	7	100.0	-	0.0	-	0.0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	0.0	2	100.0	-	0.0	2
국방부	1	-	0.0	-	0.0	1	100.0	1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5	-	-	-	-	-	-	-
총계	**892,667**	**647,851**	**68.8**	**203,957**	**21.7**	**89,488**	**9.5**	**941,296**

※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민간 보조사업 예산안은 3조 4,475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하여 1,018억원(3.0%) 증가하였으며, 민간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총 42개 부처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 보조사업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농업재해보험 사업(예산액: 8,019억원) 및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예산액: 7,617억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2025년도 민간 보조사업 예산안 부처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24 예산	일반회계(A)		특별회계(B)		기금(C)		합계 (D= A+B+C)
		2025 예산안	A/D	2025 예산안	B/D	2025 예산안	C/D	
농림축산식품부	33,439	1,996	5.8	27,185	78.9	5,294	15.4	34,475
문화체육관광부	29,425	13,485	46.8	1,141	4.0	14,218	49.3	28,844
산업통상자원부	26,167	6,522	29.1	10,082	44.9	5,831	26.0	22,435
중소벤처기업부	23,906	7,872	36.8	195	0.9	13,332	62.3	21,399
보건복지부	10,697	12,064	87.5	482	3.5	1,236	9.0	13,783
국토교통부	13,470	4,254	34.4	6,753	54.6	1,354	11.0	12,360
환경부	8,875	29	0.3	9,629	99.6	7	0.1	9,665
기획재정부	8,443	49	0.6	-	0.0	7,446	99.4	7,495
고용노동부	5,974	3,984	60.7	143	2.2	2,433	37.1	6,561
외교부	7,050	6,387	100.0	-	0.0	-	0.0	6,387
통일부	5,500	126	2.4	-	0.0	5,188	97.6	5,314
해양수산부	6,395	1,401	27.2	3,715	72.1	39	0.8	5,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90	79	2.4	609	18.0	2,691	79.6	3,380
교육부	5,070	1,940	70.6	809	29.4	-	-	2,749
산림청	1,869	1,501	84.7	270	15.3	-	-	1,771
법무부	1,422	1,283	85.7	-	0.0	214	14.3	1,497
국가유산청	1,094	987	86.1	-	0.0	159	13.9	1,146
국가보훈부	1,176	1,004	90.7	94	8.5	9	0.8	1,106
행정안전부	731	816	97.0	25	3.0	-	-	841
특허청	776	-	-	789	100.0	-	-	7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10	531	100.0	-	0.0	-	-	531
여성가족부	525	395	75.3	-	0.0	130	24.7	524
국방부	420	327	69.4	-	-	144	30.6	471
식품의약품안전처	372	224	100.0	-	-	-	-	224
금융위원회	136	141	100.0	-	-	-	-	141
질병관리청	132	134	100.0	-	-	-	-	134
방송통신위원회	122	120	100.0	-	-	-	-	120
국회	104	102	100.0	-	-	-	-	10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9	90	100.0	-	-	-	-	90
새만금개발청	-	65	100.0	-	-	-	-	65
대법원	43	-	-	-	-	43	100.0	43
조달청	9	-	-	21	100.0	-	-	21
경찰청	19	20	100.0	-	-	-	-	20
농촌진흥청	37	20	100.0	-	-	-	-	20
해양경찰청	17	17	100.0	-	-	-	-	17
국세청	15	14	100.0	-	-	-	-	14
방위사업청	28	12	100.0	-	-	-	-	12
우주항공청	-	3	100.0	-	-	-	-	3
국조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2	100.0	-	-	-	-	2
국가인권위원회	2	2	100.0	-	-	-	-	2
공정거래위원회	2	2	100.0	-	-	-	-	2
재외동포청	8	2	100.0	-	-	-	-	2
국민권익위원회	1	1	100.0	-	-	-	-	1
소방청	1	-	-	-	-	-	-	-
총계	**198,153**	**68,002**	**35.8**	**61,942**	**32.7**	**59,770**	**31.5**	**189,714**

※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5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은 26조 5,369억원으로 2024년에 비하여 11.8% 증가하였으나,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R&D 예산은 2,159억원으로 5.0% 증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R&D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 전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R&D 예산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정부 전체 R&D	265,369	296,783	31,414	11.8
농림축산식품부 R&D	2,159	2,267	107	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R&D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총 계	**215,922**	**226,669**	**10,747**	**5.0**
주요 R&D	**190,857**	**200,762**	**9,905**	**5.2**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15,779	16,636	857	5.4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	1,500	3,050	1,550	103.3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	5,470	8,098	2,628	48.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37,611	40,880	3,269	8.7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기술개발	5,288	6,938	1,650	31.2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	8,809	6,750	△2,059	△23.4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40,664	41,787	1,123	2.8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	5,670	3,762	△1,908	△33.7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7,462	4,501	△2,961	△39.7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	5,325	5,325	-	-
기술사업화지원	20,516	25,573	5,057	24.6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	4,500	6,000	1,500	33.3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신규)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	-	6,150	6,150	순증
(신규)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	6,750	6,750	순증
(신규)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	-	6,375	6,375	순증
(신규)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	-	1,500	1,500	순증
(신규)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관리	-	4,312	4,312	순증
(신규)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국산화	-	6,375	6,375	순증
(종료)노지분야스마트농업기술단기고도화	13,933	-	△13,933	순감
(종료)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	11,505	-	△11,505	순감
(종료)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	3,786	-	△3,786	순감
(종료)농업기반및재해대응기술개발	3,039	-	△3,039	순감
일반 R&D	**25,065**	**25,907**	**842**	**3.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1,411	11,531	120	1.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	6,028	6,187	159	2.6
검역본부 인건비 일부(9%)	7,626	8,189	563	7.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12개 소관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기관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2023 결산	2024 본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농어촌공사(위탁집행형)	3,441,410	3,878,407	3,721,869	△156,538	△4.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위탁집행형)	2,427,932	2,558,017	2,655,404	97,387	3.8
한국마사회(준시장형공기업)	9,759	6,733	6,578	△155	△2.3
축산물품질평가원(위탁집행형)	59,147	65,194	61,663	△3,531	△5.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기타공공기관)	229,162	167,632	176,693	9,061	5.4

기관명	2023 결산	2024 본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타공공기관)	192,842	237,637	254,365	16,728	7.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기타공공기관)	48,985	49,809	50,628	819	1.6
국제식물검역인증원(기타공공기관)	3,370	3,370	3,370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기타공공기관)	9,108	763,865	904,193	140,328	18.4
한식진흥원(기타공공기관)	11,188	10,643	14,780	4,137	38.9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기타공공기관)	44,264	31,129	28,951	△2,178	△7.0
축산환경관리원(기타공공기관)	7,344	7,937	8,527	590	0.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 각 공공기관 전체 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식진흥원의 경우 소요 예산 전액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공공기관별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예산 비중】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2024년			2025년		
	전체 예산(A)	농식품부 지원예산(a)	비중 (a/A)	전체 예산(B)	농식품부 지원예산(b)	비중 (b/B)
한국농어촌공사(위탁집행형)	4,641,346	3,878,407	83.6	미확정	3,721,86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위탁집행형)	2,664,253	2,558,017	96.0	2,776,944	2,655,404	95.6
한국마사회(준시장형공기업)	889,749	6,733	0.8	미확정	6,578	-
축산물품질평가원(위탁집행형)	65,194	65,194	100	61,663	61,663	10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기타공공기관)	167,632	167,632	100	176,693	176,693	100.0

기관명	2024년			2025년		
	전체 예산(A)	농식품부 지원예산(a)	비중 (a/A)	전체 예산(B)	농식품부 지원예산(b)	비중 (b/B)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타공공기관)	237,637	237,637	100	미확정	254,365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타공공기관)	58,796	49,809	84.7	59,885	50,628	84.5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기타공공기관)	13,559	3,370	24.9	미확정	3,37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타공공기관)	769,683	763,865	99.2	909,934	904,193	99.4
한식진흥원(기타 공공기관)	10,643	10,643	100.0	14,780	14,780	10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타공공기관)	37,463	31,129	83.1	36,779	28,951	78.7
축산환경관리원(기타공공기관)	9,370	7,937	84.7	9,960	8,527	85.6

* 공공기관 전체예산 미확정 기관의 경우 '24.11월 기관예산 편성, '24.12월 이사회 심의 후 확정 예정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 제출자료('24.10.1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약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1	일반회계	세입	21,333	세입예산 규모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 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2				미회수채권 관리 강화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회수채권에 대한 추징활동 강화, 소멸 시효 중단 조치 적극 추진 등을 통해 미회수채권 관리를 강화할 것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사업 공통	221,77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에 대한 적정한 성과목표 설정 필요	농식품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	
4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	23,946	집행 불가능한 일부 예산 감액 필요	5명분으로 편성된 장기현장실습 관련 예산은 2024년 미선발된 2명분에 대한 2,454만 8,000원을 감액할 것	
5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년에 동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합격자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개도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3,447	농특위 업무연속성·범부처 협의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및 임차료 절약 필요	농특위 업무연속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 임기를 명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 범부처 협의기구임을 고려한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율 제고, 연구용역 주제 선정, 임차료 절약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국제농업협력(ODA)	243,926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WFP 식량원조 사업의 부대비용 소요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농식품부는 물류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23년 결산 시정요구
8		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1,389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안 편성 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기본경비"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운영경비(7018-278)에 "주요사업비"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 편성으로 보이는바, 사업 성격에 적합한 예산안을 편성할 것	
9	농특회계	농어촌특별세	7,415,300	농어촌특별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특세 세입예산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교부로 세출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의 발생을 방지할 것	'24년 예산 (상임위)
10		농촌고용인력지원(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27,288 (5,020)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의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농식품부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규모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 대상을 조기 선정하고 대상지역 선정 시 주변지역 갈등요인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할 것	'22년·23년 결산 시정요구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11		농업재해보험	801,929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상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것	
12				실제 가입 수요에 기반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에 대하여 실제 가입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농특회계	농식품바우처	38,100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 시 지원의 시급성과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적정하게 선정할 것	
14		농산물안전성조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항공방제업 관리)	25,356 (370)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피해 분쟁조정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2025년도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것	
15		농촌용수관리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63,333 (38,334)	목표수질 미달성 지구의 수질개선 방안 마련 필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 시행 후 목표수질 미달성 지구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구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수처리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준공 지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정화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6		국립농업박물관운영	17,406	국립농업박물관 운영 출연금의 비목 변경, 사업비 비중 상향, 기타 공공기관 지정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업박물관사업 출연금 비목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사업비 비중의 상향,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찾아가는 박물관 등의 사업을 통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17		농촌공간계획 및재생지원 (농촌공간정비)	115,668 (104,450)	농촌공간정비사업 일정관리 철저 및 농촌공간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할 것	'22년 예산 '22년 결산 (상임위)
18		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	1,989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및 관련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및 일정관리 노력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며, 추진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19		푸드서비스 선진화 (외식산업 활성화(특화훈련))	3,285 (1,360)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의 타부처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편성금액 조정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중 (E-9) 특화훈련 사업과 중복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것	
20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16,631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집행관리 및 국비보조 취득재산 관리 철저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재산의 구분등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21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441	사업 성과 향상 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 현황을 보면, 2022년을 기점으로 신규 인증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인증 축종 7종 중에서 산란계와 육계 외에 타 축종의 인증 건수가 미미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므로, 사업 성과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22		종자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11,532	중복 편성 예산 감액 필요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 관련하여 국립종자원의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할 것	
23		연구개발 (R&D)사업 공통	226,669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R&D)사업 관련 미흡한 관리·감독 개선 필요	최근 3년 연구개발과제(R&D) 환수처분 등에 대한 환수조치 결과 약 70%에 이르는 6억 5,900만원의 미환수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미환수 금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리·감독에 미흡했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환수 금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4	농특 회계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4,068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명확성 제고 필요	국회의 예산심의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임의로 해당 예산을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환경관리원에 배정하는 것은 과도한 집행 재량의 소지가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기관별 소요 예산을 각각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	
25			4,068 (3,549)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운영 개선 필요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농가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참여 농가 수를 확대할 것	
26		반려동물연관 산업해외수출 산업화 (One-welfare Valley 조성)	6,690 (5,100)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농식품부는 One-welfare Valley 조성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27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개사육 농장주 폐업·전업지원)	54,413 (48,597)	연내 폐업자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연내 미지급 가능성 고려 필요	농식품부는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이 예상대로 이행되는 경우 2025년 8월 7일 이후 폐업자가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연내에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할 것	
28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 개선 필요	농식품부는 개사육농장주의 조기폐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할 것	
29		살처분보상금 (살처분보상금)	81,315 (80,215	방역관련 의무 준수 유인체계의 보완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필요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제도가 농가들의 방역관련 의무 준수를 원활하게 유인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30		가축백신지원	66,983 (1,827)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아프리카마역 예방백신 비축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농식품부는 아직 국내에 발생하지 않은 아프리카마역 예방백신 비축규모를 2023년 전국 말 사육두수보다 많은 28,000두로 책정한바 비축규모를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	
31			66,983 (15,367)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철저한 백신 접종을 통한 럼피스킨병 발생 억제 필요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가축방역 인력의 업무과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32	농안 기금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채소가격 안정지원)	21,116 (20,716)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가입물량 확대 방안 마련 필요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가입물량 확대를 위하여 지역농협 등의 사업비 조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도 목표 가입물량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검토할 것	'23년 예산 (상임위)
33		비축지원	812,532 26,87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수수료 편성 비목 변경 필요	비축사업관리비 사업은 국가의 사무(비축사업)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민간경상보조(320-01목)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되도록 할 것	
34			812,532 25,840	신규 사업인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의 관리 철저 필요	농식품부는 신규 추진되는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고려하여, 동 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5	농지 기금	맞춤형농지지원(융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1,113,440 (18,000)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업계획 변경 지양 등 필요	농식품부가 2024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 수행 도중 지원대상을 청년농에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 변경은 지양할 것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철저한 관리 등 필요	농식품부가 2025년 내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 완료라는 목표 달성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계별 소요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바,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	
36	축발 기금	사료산업 종합지원	101,200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선정 필요	농식품부는 사료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기업을 2024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측면 등 그동안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미흡했던 점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37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건비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건비 별도 편성 및 통합 운영 필요	최근 축산물 유통정책의 다각화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정책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인건비를 별도 편성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38		가축분뇨처리 지원	72,295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및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필요	농식품부는 2025년에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보조금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농식품부는 동 사업 관련한 미흡한 관리·감독에 따라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경과 및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2025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향후 실집행률 부진이 반복될 시 동 사업 계획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39		가축위생방역 지원	65,792	안전예산 확충 등의 방안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방역직 등 현장인력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안전예산 확충 등의 방안을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0	공익 기금	공익기능증진 직불	2,953,622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온실감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탄소농업 직불금을 확대해나갈 예정인바, 2025년 사업 예산의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탄소 농업활동에 대한 충분한 수요 확보와 이행 및 증빙방법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41				공익직불사업 예산의 변동성 최소화 필요	농식품부는 향후 공익직불사업의 농특회계로의 이관을 위하여 선택형 직불제를 체계화함으로써 공익직불사업 예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것	
42	FTA 기금	축사시설 현대화	133,517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및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에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보조금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관련한 미흡한 관리·감독에 따라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경과 및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2025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향후 실집행률 부진이 반복될 시 동 사업 계획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Ⅲ. 회계 · 기금별 검토

1. 일반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13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6%(1억 1,700백만원) 증가하였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212.2	213.3	1.2	0.6
○ 관유물대여료	7.3	7.3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4	2.5	1.1	82.4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0.8	20.8	-	-
○ 변상금및위약금	8.8	8.8	-	-
○ 가산금	0.3	0.3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	139.2	-	-
○ 면허료및수수료	20.0	20.0	-	-
○ 입학금및수업료	4.7	4.7	-	-
○ 실습수입	0.1	0.1	-	-
○ 잡수입	9.1	9.1	-	-
○ 고정자산매각대	0.5	0.5	-	-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
○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0.05	0.10	0.05	100.0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7조 2,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2%(1조 4,631억원) 증가하였음.

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계정) 전출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은 2,439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5%(817억 9,800만원) 증가한 반면,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은 1,566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86억 5,600만원) 감소하였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58,042**	**72,673**	**14,631**	**25.2**
○ 일반지출	8,339	9,253	914	11.0
○ 회계간거래	48,094	61,811	13,717	28.5
○ 기금전출금	1,609	1,609	-	-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세입: 세입예산 규모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미회수채권 관리 강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 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회수채권에 대한 추징활동 강화, 소멸 시효 중단 조치 적극 추진 등을 통해 미회수채권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가) 예산안 개요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13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00만원(0.6%) 증가하였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세입	7,512	21,216	21,333	117	0.6

나)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규모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매년 관유물대여료,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이 계상되고 있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	
			(B-A)	%
총 계	21,216	21,333	117	0.6
○ 관유물대여료	728	728	-	-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36	248	112	82.4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2,075	2,075	-	-
○ 변상금 및 위약금	878	878	-	-
○ 가산금	33	33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2	13,922	-	-
○ 면허료 및 수수료	2,000	2,000	-	-
○ 입학금 및 수업료	466	466	-	-
○ 실습수입	14	14	-	-
○ 잡수입	908	908	-	-
○ 고정자산매각대	50	50	-	-
○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1	1	-	-
○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5	10	5	10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제출자료('24.10.4)

□ 이 중 변상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위약금 등은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다계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먼저, 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은 20억 1,400만원~37억 6,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2억 6,300만원~27억 6,700만원에 불과함에도 매년 139억 2,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 예산안에도 동일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음.

② 변상금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은 7,600만원~1억 9,1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000만원~4,300만원이나, 매년 6억 7,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 예산안에도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음.

③ 위약금은 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은 800만원~1,700만원, 실제 수납액은 700~1,500만원에 불과함에도 2025년을 포함하여 매년 2억 6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과다계상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2020	13,922	2,384	1,789	12.9	75.0
	2021	13,922	2,474	1,545	11.1	62.4
	2022	13,922	3,760	2,767	19.9	73.6
	2023	13,922	2,247	1,693	12.2	75.3
	2024.9	13,922	2,014	1,263	9.1	62.7
	2025	13,922	-	-	-	-
변상금 (57-571)	2020	672	191	42	6.3	22.0
	2021	672	121	43	6.4	35.5
	2022	672	78	1	0.1	1.3
	2023	672	76	3	0.4	3.9
	2024.9	672	79	4	0.6	5.1
	2025	672	-	-	-	-

구분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위약금 (57-572)	2020	206	329	325	157.8	98.8
	2021	206	11	7	3.4	63.6
	2022	206	12	8	3.9	66.7
	2023	206	17	15	7.3	88.2
	2024.9	206	8	7	3.4	87.5
	2025	206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제출자료('24.10.4)

□ 이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일부 세입항목은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최근 연도 수납실적에 비하여 과다계상된 예산이 매년 관례적으로 편성되어 옴.

이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및 결산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매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5% 이상을 차지하여 세입예산의 전체 규모를 왜곡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음.

【최근 3년 세입항목별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총 계	20,910 (100.0)	6,089 (100.0)	20,710 (100.0)	9,025 (100.0)	21,170 (100.0)	7,512 (100.0)
○ 관유물대여료	728 (3.5)	271 (4.5)	728 (3.5)	481 (5.3)	728 (3.4)	487 (6.5)

구 분	2021		2022		2023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68 (1.3)	246 (4.0)	22 (0.1)	145 (1.6)	93 (0.4)	352 (4.7)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743 (8.3)	1,644 (27.0)	1,743 (8.4)	1,773 (19.6)	2,075 (9.8)	2,109 (28.1)
○ 변상금 및 위약금	878 (4.2)	50 (0.8)	878 (4.2)	9 (0.1)	878 (4.1)	18 (0.2)
○ 가산금	25 (0.1)	34 (0.6)	25 (0.1)	46 (0.5)	25 (0.1)	28 (0.4)
○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2 (66.6)	1,545 (25.4)	13,922 (67.2)	2,767 (30.7)	13,922 (65.8)	1,693 (22.5)
○ 면허료 및 수수료	2,000 (9.6)	1,473 (24.2)	2,000 (9.7)	1,604 (17.8)	2,000 (9.4)	1,868 (24.9)
○ 입학금 및 수업료	363 (1.7)	329 (5.4)	409 (2.0)	330 (3.7)	466 (2.2)	332 (4.4)
○ 실습수입	14 (0.1)	7 (0.1)	14 (0.1)	4 (-)	14 (0.1)	4 (0.1)
○ 잡수입	908 (4.3)	417 (6.8)	908 (4.4)	452 (5.0)	908 (4.3)	592 (7.9)
○ 고정자산매각대	50 (0.2)	- (-)	50 (0.2)	13 (0.1)	50 (0.2)	- (-)
○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1 (-)	70 (1.1)	1 (-)	1,390 (15.4)	1 (-)	23 (0.3)
○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10 (-)	3 (-)	10 (-)	11 (0.1)	10 (-)	3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제출자료('24.10.4)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세입항목의 예산 편성 시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최근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2) 미회수채권 관리 강화 필요

□ 일반회계 세입항목 중 과징금, 변상금 및 가산금[6] 등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간 연례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수납실적 저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과징금 (56-565)	2020	-	4,757	588	순증	12.4	4,169	-
	2021	287	4,939	529	184.3	10.7	4,410	-
	2022	287	4,445	575	200.3	12.9	3,870	-
	2023	619	4,794	740	119.5	15.4	4,054	-
	2024.9	619	4,210	556	89.8	13.2	3,655	-
	2025	619	-	-	-	-	-	-
변상금 (57-571)	2020	672	191	42	6.3	22.0	148	1
	2021	672	121	43	6.4	35.5	78	-
	2022	672	78	1	0.1	1.3	77	-
	2023	672	76	3	0.4	3.9	73	-
	2024.9	672	79	4	0.6	5.1	75	-
	2025	672	-	-	-	-	-	-
가산금 (58-581)	2020	25	273	19	76.0	7.0	254	-
	2021	25	341	34	136.0	10.0	307	-
	2022	25	412	46	184.0	11.2	364	-
	2023	25	392	28	112.0	7.1	363	-
	2024.9	33	390	13	39.4	3.3	376	1
	2025	33	-	-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제출자료('24.10.4)

6) 과징금, 변상금, 가산금 등 부과내용

구 분	내용
과징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
가산금	과태료 등 미납 시 부과
변상금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
토지대여료	국유재산(토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① 과징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은 45억원 내외였으나, 수납률은 10~15%에 불과하고, ② 가산금의 경우에도 수납률이 10% 내외에 불과함.

③ 변상금의 수납률 역시 연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2022년 및 2023년 수납률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음.

수납실적 저조에 따른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과징금은 총 36억 8,600만원의 미회수금 중 4년 이상 미수납된 금액이 72.3%에 이르고, 변상금은 7,000만원 중 5년 이상된 금액이 93.3%, 가산금은 2억 4,900만원 중 5년 이상된 금액이 66%에 이르며, 토지대여료는 미회수금 1억 3,800만원 전액이 5년 이상 미수납됨.

【체납발생경과기간에 따른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체납발생경과기간	과징금			변상금			가산금			토지대여료		
	건수	금액	비율(금액)	건수	금액	비율(금액)	건수	금액	비율(금액)	건수	금액	비율(금액)
1년 미만	16	56	1.5	3	3	4.0	2,609	36	9.5	-	-	-
1년 이상~2년 미만	6	258	7.0	2	-	-	968	11	2.9	-	-	-
2년 이상~3년 미만	2	303	8.2	-	-	-	1,395	55	14.6	-	-	-
3년 이상~4년 미만	3	403	10.9	2	1	1.3	1,429	12	3.2	-	-	-
4년 이상~5년 미만	17	1,761	47.8	2	1	1.3	1,775	15	4.0	-	-	-
5년 이상	**19**	**904**	**24.5**	**75**	**70**	**93.3**	**13,915**	**249**	**66.0**	**344**	**138**	**100.0**
총 계	63	3,686	100.0	84	75	100.0	22,089	377	100.0	344	138	10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제출자료('24.10.4)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납실적이 저조하고 장기체납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하여 미납자는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대부분으로 재력부족, 연락두절, 납부거부 등으로 미납액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미회수채권의 증가는 준법의식 약화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저하를 초래하고, 특히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채권은 「국유재산법」 제73조의3제1항[7]에 따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국가 세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촉장 발송, 주기적 납부기한 도래 확인 및 채권 납부 독려 등 추징활동을 강화하고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압류, 승인[8]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미회수채권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7) **「국유재산법」 제73조의3(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8)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채무 일부 납부 및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확인서 징구(徵求) 등을 통해 시효중단이 가능함.

2) 공통: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에 대한 적정한 성과목표 설정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9] 정부로 하여금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 편성시 「국가재정법」 제27조[10] 및 제68조의3[11]에 따라 예산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재정법」 제34조[12] 및 제71조[13]에 따라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

9) 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2022년에 예산의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부터 작성됨

10)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가재정법」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3) **「국가재정법」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을 기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작성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있고, 국내법상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퍼센트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있는바,[1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통하여 온실가스감축 관련 정부의 비전·목표가 예산 및 기금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설정한 부문별 감축목표에서 ① 배출에 있어 농축수산 부문, ② 흡수 및 제거에 있어 흡수원 부문[15] 등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부처로서,

---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15) LULUCF, 산림 탄소흡수원(산림청)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배출량 목표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이라 한다)등의 계획을 성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부문별 배출량 목표 】

(단위 : 백만톤CO_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 실적	2030 목표	
			기존 ('21. 10.)	수정 ('23. 3.)
배출량(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269.6	149.9 (44.4%)	145.9 (45.9%)
	산업	260.5	222.6 (14.5%)	230.7 (11.4%)
	건물	52.1	35.0 (32.8%)	35.0 (32.8%)
	수송	98.1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24.7	18.0 (27.1%)	18.0 (27.1%)
	폐기물	17.1	9.1 (46.8%)	9.1 (46.8%)
	수소	(-)	7.6	8.4
	탈루 등	5.6	3.9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
	국제감축	(-)	-33.5	-37.5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

□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은, 흡수원 부문의 경우 산림청 소관의 산림탄소흡수원이 중심이 되는 만큼, 배출의 농축수산 부문에서 보다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축수산 부문에서 추진 방향을 “저탄소 구조 전환을 통한 농축수산업 발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제시하고, 과제로서 다음 사항을 설정하였음.

【 「제1차 기본계획」상의 농축수산 부문 과제 】

① 저탄소 농업기술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
- 디지털·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반 마련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② 농업(재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 논물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 화학비료 사용 감축
- 바이오차 개발·보급을 통한 토양 탄소 저장능력 제고

③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저메탄사료 및 저단백사료 개발·보급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및 가축분뇨 저감
- 가축분뇨 활용 확대

④ 농업 분야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 시설농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⑤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농촌마을 RE100 추진

⑥ 수산업 활동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및 노후어선 효율성 제고
- 양식·수산가공 에너지 사용 고효율·스마트화
- 어항시설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

□ 농축수산 부문의 여섯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과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사항(농축산업)에 해당하는바, 해당 과제들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으로 전년 대비 7개 사업(100%)이 증가한 총 14개 사업을 선정한바,

i)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2,217억 7,500만원[16]이 편성되었고, ii) 온실가스 감축량은 전년 대비 △6만 7,052tCO$_2$eq(△19.4%) 감소한 27만 8,922tCO$_2$eq로 책정되었음.[17]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tCO$_2$eq)

회계/기금	구분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24년		'25년(안)		'24년 (A)	'25년 (B)	'30년까지 누적	증감 (B-A)
		전체	감축[18]	전체	감축				
합계		224,209	113,994	221,775	185,531	345,974	278,922	1,689,122	△67,052
	회계	135,732	52,949	131,610	95,366	282,974	149,890	914,930	△133,084
	기금	88,477	61,045	90,165	90,165	63,000	129,032	774,192	66,032

16) 감축사업(작성 대상사업 중 실제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기준으로는 953억 6,600만원이 편성됨

17) 전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2240-312) 사업의 내역사업인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2024년 온실가스 감축량: 15만 2,400tCO$_2$eq)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18) 작성대상 사업(세부사업 기준) 중 실제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1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회계/기금	구분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24년		'25년(안)		'24년 (A)	'25년 (B)	'30년까지 누적	증감 (B-A)
		전체	감축[18]	전체	감축				
일반회계	소계	7,660	7,660	5,000	5,000	5,360	1,876	11,256	△3,484
	농업기반시설 활용에너지개발	7,660	7,660	5,000	5,000	5,360	1,876	11,256	△3,484
에특회계[19]	소계	17,363	17,363	17,363	17,363	3,709	3,709	22,254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17,363	17,363	17,363	17,363	3,709	3,709	22,25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소계	106,472	27,926	104,158	67,914	273,905	144,305	881,420	△129,600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6,251	6,251	4,068	4,068	272834	140,450	842,700	△132,384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2,816	2,766	3,128	2,778	1,071	428	2,568	△643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26,332	10,100	25,837	8,055	-	-	-	-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8,809	8,809	6,750	6,750	-	-	-	-
	임대형 스마트팜	37,000	-	40,700	34,700	-	3,427	36,152	3,427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5,670	-	3,762	432	-	-	-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15,779	-	16,636	8,393	-	-	-	-
	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표준확산지원	3,815	-	3,277	2,738	-	-	-	-
지특회계[20]	소계	4,237	-	5,089	5,089	-	-	-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4,237	-	4,489	4,489	-	-	-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제주)	-	-	600	600	-	-	-	-
축발기금[21]	소계	68,946	61,045	72,295	72,295	63,000	129,000	774,000	66,000
	가축분뇨처리지원	68,946	61,045	72,295	72,295	63,000	129,000	774,000	66,000

회계/기금	구분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24년		'25년(안)		'24년 (A)	'25년 (B)	'30년까지 누적	증감 (B-A)
		전체	감축[18]	전체	감축				
FTA기금[22]	소계	19,531	-	17,870	17,870	-	32	192	32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	19,531	-	17,870	17,870	-	32	192	32

주) 회색 음영 사업은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서 신규 선정된 작성 대상사업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도 작성 대상사업인 14개 사업을 각각 「제1차 기본계획」상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다섯 가지 과제에 대응시켜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작성할 수 있음.

【 작성 대상사업과 「제1차 기본계획」상 과제와의 비교 】

구분	세부사업명	해당 과제[23]
기존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개발 (2230-301)	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2231-410)	④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2240-312)	①, ②, ③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2240-401)	⑤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2271-303)	①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사업(R&D) (2280-492)	④
	가축분뇨처리지원 (3735-329, 330)	③
신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2220-383)	①
	2025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2280-388)	③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2280-481)	①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확산 지원 (2220-377)	①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2274-301)	①
	친환경농업기반구축(제주) (2274-302)	①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 (3034-370)	①

21) 축산발전기금

2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그런데 신규 작성 대상사업이 ①번 과제인 “저탄소 농업기술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신규 작성대상 사업 중 6개 사업이 ①번 과제에 해당하는 스마트팜(4개 사업) 및 친환경농업 집적지구(2개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농축수산 부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다섯 가지 과제가 모두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 예산서 작성시 ①번 과제 외의 다른 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14개 사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① 정량사업 7개, ② 정성사업 4개, ③ R&D사업 3개로 분류되는데,

이중 신규로 작성된 7개 사업은 ① 정량사업 2개, ② 정성사업 3개, ③ R&D사업 2개로서, 정성사업과 R&D사업의 비중이 높음.

23) 원 문자는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과제 번호에 대응됨 (예: ③ →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사업 분류 】

구분	세부사업 수 (기존/신규)	정의
정량사업	7개(5개/2개)[24]	국제공인 배출계수, 실적, 통계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
정성사업	4개(1개/3개)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따른 감축량 정량화 방법이 정형화되지 않아 감축량의 정량화가 곤란한 사업
R&D사업	3개(1개/2개)	기술개발 또는 연구성과 상용화 시 발생하는 감축효과를 추정해야 하는 사업
계	14개(7개/7개)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한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의 실제 사업효과 발생 여부는 성과목표의 설정 및 달성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는 11개 성과목표 중 6개만을 달성하여 달성률이 54.5%로 나타났고,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 1개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100%로 나타났음.

24) 가축분뇨처리지원(3735-329,330) 사업은 내역사업에 정성사업과 정량사업이 혼재되어 있는데,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p.16.)에서는 이러한 경우 정량사업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성과목표 달성여부 】

구분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달성여부
예산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개발 (2230-301)	재생에너지 설치용량(MW)	달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2231-410)	연간 에너지절감량(천TOE)	달성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2240-312)	자발적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 사업건수(건)	달성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유효농가(호)	달성
		중간물떼기 이행률(2주 이상)	달성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2240-401)	재생에너지 설치용량(MW)[25]	미달성
		재생에너지 설치용량(MW)[26]	미달성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2271-303)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개소)	미달성
		거점단지 조성(개소)	미달성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사업 (R&D) (2280-492)	우수논문지수(mrnIF)	달성
		기술실시(10억원 당)	미달성
기금	가축분뇨처리지원 (3735-329, 330)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가동 개소수(개소)	달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다만, 성과목표와 관련해서는 달성률 외에 성과목표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 특히 정량사업의 경우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중 정량사업과 그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음.

25) 영농형태양광재배모델 실증지원 내역사업

26)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내역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정량사업 성과목표 】

구분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이행지표	목표
예산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개발 (2230-301)	재생에너지 설치용량(MW)	3.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2231-410)	연간 에너지절감량(천TOE)	4.6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2240-312)	자발적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 사업건수(건)	58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유효농가(호)	15,033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2240-401)	재생에너지 설치용량(MW)	0.8
	임대형 스마트팜 (2220-383)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율(%)	85
기금	가축분뇨처리지원 (3735-329, 330)[27]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가동 개소수(개소)	13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 (3034-370)	연간 에너지절감량(TOE)	11.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정량사업의 경우 그 정의에 따르면, 정성사업·R&D사업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화가 가능한바, 성과목표 설정시 되도록 그 이행지표를 직접적으로 감축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등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실제로 일부 부처의 경우, 2025년도 정량사업의 성과목표 설정시 이행지표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선정한 경우도 존재함.

27) 내역사업 중 공동자원화시설 및 가축분뇨이용촉진 사업만 정량사업에 해당함

【 정량사업 성과목표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선정한 타부처 사례 】

구분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5년 성과목표	
			이행지표	목표
예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5139-302)	온실가스 감축량 ($tCO_2eq.$)	428,432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사업(자율) (5139-308)	온실가스 감축량 ($tCO_2eq.$)	10,978
	국토교통부	전환교통 지원사업 (4034-302)	온실가스(CO_2) 감축량 ($tCO_2eq.$)	122,288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3150-306)	온실가스 감축량 ($tCO_2eq.$)	289
기금	기획재정부[28]	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산업부) (6131-303)	온실가스 누적감축량 ($tCO_2eq.$)	447,015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6332-401)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tCO_2eq.$)	17,526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농식품부) (6433-400)	온실가스 감축량 ($tCO_2eq.$)[29]	5,392
			온실가스 감축량 ($tCO_2eq.$)[30]	2,153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의 집계가 가능한 정량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설정시 그 이행지표를 재생에너지 설치용량·감축실적 인증 사업건수·인증 유효농가·입주율·가동개소수 등 간접적인 지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설정한 경우는 전무한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

28) 기후대응기금

29)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지원사업 내역사업

30) 농식품기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내역사업

획서 작성지침」중 작성방법 설명을 위한 서식 자료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는 사업, 정량적 감축량 측정이 곤란한 사업이 존재하므로 이행지표를 온실가스 감축량이 아닌 감축효과 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량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설정가능”[31]이라는 문구에 근거하여 작성했다는 입장임.

□ 다만,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성과목표의 이행지표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는 등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이행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성사업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 활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량화 가능한 이행지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도와 작성지침의 취지를 고려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화할 수 있는 정량사업의 경우 되도록 이행지표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31) 기획재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 2024, p.14.

정부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32]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33]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3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3)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 집행 불가능한 일부 예산 감액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5명분으로 편성된 장기현장실습 관련 예산은 2024년 미선발된 2명분에 대한 2,454만 8,000원의 감액이 필요함.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년에 동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합격자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개도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책임운영) 사업은 재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장기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비,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들의 영농·영어 정착 비용 및 대학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보다 6억 300만원(2.6%) 증액된 239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34].

【2025년도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책임운영)	21,068	23,343	10,682	23,946	603	2.6%

34)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1110-300)

(나) 검토의견

□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3,300만원 증액된 1억 7,463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5년도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	-	142	4.3	176	34	23.9%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은 개도국 청년농업인을 교육하여 K-농업 관련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2024년도에 관련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음.

동 사업은 개도국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라 함)의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과 기반 등을 활용하여 농업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도국 학생 지원(항공료, 실습비, 생활비 등) 및 교육운영비(강사수당, 교재비) 등의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 개요 】

구분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
사업목적	○ 개도국 대상 청년농업인을 K-농업 관련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기간	2024년～계속
사업주체	한국농수산대학교
지원대상	○ 개도국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동등 이상의 학력보유자) 및 졸업 예정자 5명
지원내용	○ 한농대의 특화된 농업교육 커리큘럼과 기반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 ▸ 개도국 학생 지원(항공료, 실습비, 생활비 등) ▸ 교육운영비(강사수당, 교재비 등)

□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에 따른 교육과정은 총 3년으로, 동 사업 대상으로 선발된 유학생은 입학 연도에 교내에서 이론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해(2학년) 장기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후 그 다음 해(3학년) 다시 교내 이론교육을 이수하게 됨.

【 개도국 유학생 교육과정 】

1학년(2024년)	2학년(2025년)		3학년(2026년)		졸업학년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교내교육(이론)	(교내외)장기현장실습		교내교육(이론)		교내교육(창업설계)

※ 자료 : 한농대 교육개발센터 제출자료(’24.10.4)

(1) 집행 불가능한 일부 예산 감액 필요

□ 2024년 및 2025년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 예산은 각각 모집인원 5명을 목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5명 중 3명만이 최종 선발[35]되었음.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 예산은 크게 개도국 유학생에 대한 교육경비와 개도국 학생들에게 통역 등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5년도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 예산 산출내역】

구분	예산과목	세부내역	단가(원)	기간	횟수	인원(명)	총계(원)
총계							174,631,482
교육경비	소계						135,065,200
	상용임금(110-03)	교육비(강사료)	80,000	25시간	8주	1	16,000,000
	급식비(210-04)	식비	7,000	240일	3식	5	25,200,000
	기타보전금 (310-04)	현장실습 실습수당	1,000,000	4개월	2회	5	40,000,000
		현장실습 지도수당	500,000	4개월	2회	5	20,000,000
		왕복항공료	2,256,000	-	1회	5	11,280,000
		건강보험	71,920	12개월	-	5	4,315,200
		생활비	500,000	4개월	-	5	10,000,000
		어학연수비	800,000	-	1회	5	4,000,000
	일반수용비(210-01)	교재비	20,000	2학기	6과목	5	1,200,000
	재료비(210-11)	실험실습비	350,000	2학기	1과목	1	700,000
	피복비(210-03)	실습복 등	200,000	-	1회	5	1,000,000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실습종합보험	60,000	1년	1회	10	570,000
		실습장배상책임보험	10,000	8개월	1회	10	800,000

35) 2024년 교육생 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이하 목차에서 검토하기로 함

구분	예산과목	세부내역		단가(원)	기간	횟수	인원(명)	총계(원)
인건비	소계							39,566,282
	상용임금 (110-03)	통역	연봉	2,711,450	12개월	-	1	32,537,400
			초과근무	2,851,450/209시간X1명X1.5시간X12월X1.5				368,360
			정액급식비	140,000	12개월	-	1	1,680,000
			명절휴가비	550,000	-	2회	1	1,100,000
	고용부담금(320-09)	기관부담금		34,585,760원X11.22%				3,880,522

※ 자료 : 한농대 교육개발센터 제출자료('24.10.4)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경비 예산은 개도국 유학생 5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이에 대하여 한농대는 2025년 예산은 기존 2024년 모집인원 5명(24학번)과 2025년 모집인원(25학번) 5명을 합한 총 10명에 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즉, 2025년에 2학년 과정으로 장기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24학번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실습수당, 현장실습 지도수당, 실습종합보험, 실습장배상책임보험[36]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2025년에는 입학하는 25학번에 대한 지원 예산이라는 설명임.

그런데 2024년의 경우 총 모집인원 5명 중 최종 선발인원은 3명[37]으로, 2학년 과정인 2025년 장기현장실습 관련 예산은 3명

36) 실습종합보험, 실습장배상책임보험 예산은 학생뿐 아니라 해당 실습을 제공하는 농장 등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어 10명분에 대해 편성됨.

37) 한농대에 따르면 2024년 최종 선발인원 3명 중 1명은 2025년 1월에 입학 예정이나, 해당 학생은 대졸 학력을 보유한 자로서 학기 시작 전 약 2달간의 적응 프로그램 이수 후 24학번 유학생 커리

분에 대해서만 반영되어야 함.

이에 따라 장기현장실습 과정 이수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계상해보면 총 6,137만원 중 3,682만원이 해당함.

【2025년도 장기현장실습 예산 감액 필요분】

구분	'25 편성 예산		실집행 가능 예산		감액 필요분(원)
	인원(명)	총계(원)	인원(명)	총계(원)	
현장실습 실습수당	5	40,000,000	3	24,000,000	16,000,000
현장실습 지도수당	5	20,000,000	3	12,000,000	8,000,000
실습종합보험	10	570,000	6	342,000	228,000
실습장배상책임보험	10	800,000	6	480,000	320,000
합계		61,370,000		36,822,000	24,548,000

따라서 동 사업 2025년 예산안 1억 7,600만원에서 2,454만원은 감액될 필요가 있음.

(2)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한농대는 2024년에 개도국 유학생 5명 모집을 목표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스마트팜, 농기계 등 농업기술 전수 분야 교류협력 요청이 있었던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3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 3월에 모집공고를 하였음.

큐럼에 맞추어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는 설명임.

한농대는 3개국에서의 지원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베트남을 대상국에 추가하여 지원자를 모집하였음.

이에 라오스인 1명, 캄보디아인 4명, 베트남인 14명이 개도국 유학생 사업에 지원하였고, 라오스인 1명, 캄보디아인 2명, 베트남인 2명이 개도국 유학생으로 최종 선발[38]되었음.

【 개도국 유학생 사업 지원자수 및 선정자수 등 】

구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합계
지원자수	1	4	14	-	19
선정자수	1	2	2	-	5
최종 입학	1	1(입학 예정)	1	-	3

※ 자료 : 한농대 교육개발센터 제출자료('24.10.4)

그런데 최종 선발된 5명 중 2024년 현재 1학년 과정을 이수 중인 유학생은 2명임.

한농대에 따르면 2명은 각각 비자발급 거절과 교통사고의 사유로 입학을 포기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현지에서 비자 관련 서류 발급이 지연(현지 '최종학력증명서' 발급 3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2025년 1학기에 입학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38) 선발기준은 1차 서류 및 2차 면접 심사로 이루어지며 각 평가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서류심사 평가 기준: 전문지식 응용능력(40점), 지원동기(60점)
* 면접심사 평가 기준: 한국어능력(40점),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20점), 인성(20점), 지원동기(20점)/면접 방법은 비대면 zoom 활용

□ 이와 관련하여 한농대가 2025년에 동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첫째, 2024년의 경우 기존에 합격한 2명이 입학을 포기하였음에도 예비합격자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기존에 계획한 인원에 미달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음.

이에 대하여 한농대는 최종합격자 2인이 입학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각각 '24.6.30/8.16)에는 예비합격자에게 '학기 시작 전 비자 발급 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025년은 사업 2년 차인 만큼 모집공고 등 선발절차를 2024년보다 앞당겨 진행[39]하고, 예비합격자도 비자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합격자의 예상치 못한 입학 포기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동 사업 지원자수를 보면, 수요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농대는 동 사업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 예측이나 조사 없이 동 사업을 설계하였는데, 이에 따라 당초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베트남인이 대부분 지원한 데 반하여 인도네시아인[40]은 한 명도

39) 한농대는 24년에는 3월에 모집공고하였으나, 25년부터는 전년도 12월부터 모집공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임.

40) 한농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할랄음식 등 인도네시아 학생에 대한 문화적 배려를 제공하

지원하지 않았음.

동 사업의 목적이 K-농업 기술 확산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들이 동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 중 해외협력사업 중점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유관기관의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인지한 현지 기관·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함.

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 농특위 업무연속성·범부처 협의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및 임차료 절약 필요

○ 농특위 업무연속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 임기를 명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 범부처 협의기구임을 고려한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율 제고, 연구용역 주제 선정 및 임차료 절약집행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논의 및 대통령 자문 목적의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5,900만원 증액(1.7%)된 34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41].

【2025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운영	3,258	3,388	2,008	3,447	59	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1)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7033-341)

(나) 검토의견

□ 농특위는 시장개방·농촌소멸 등 농어업·농어촌이 직면한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임.

(1) 위원장 임기 명시 등으로 농특위 업무연속성 제고 필요

□ 법률에 별도의 설치근거를 둔 대통령직속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원장의 임기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거나, 위촉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해당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위원장 임기를 규정하고 있음.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기】

구 분	임기규정	비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위원중에서 임명하지 않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무총리, 전문가 위원 중 지명	전문가 위원의 임기 2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임명	위촉위원 임기 2년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 위촉위원 중 임명	위촉위원 임기 2년
국가도서관 위원회	2년	
국가건축위원회	위촉위원 중 지명	위촉위원 임기 2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2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중에 위촉	위촉위원의 임기 3년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 중 임명	위촉위원 임기 2년
국가물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위촉위원중 임명	위촉위원 임기 3년

반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임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실질적으로 1기 위원장의 경우 1년만 재임하였고, 2기 위원장도 1년 3개월간 재임하였으며, 제2기 위원장 퇴임 이후 제3기 위원장이 위촉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3개월여의 공석이 발생하였고, 제2기 위원장의 공식적 퇴임 이전에도 상당기간 업무상 공백이 발생한 바 있음.

【 농특위 위원장 위촉내역】

구분	임기 시작일	임기 종료일
1기 위원장	2019.04.25.	2020.05.05.
2기 위원장	2020.06.26	2022.09.20.
3기 위원장	2022.12.0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 한편, 위원회 출범 이후 연구용역 발주 실적을 살펴보면 위원장 공석이 발생한 '22년의 경우 예산액 10억원 대비 계약액이 3억 8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0%에 불과하여, 위원장의 부재가 연구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농특위 회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농특위 본회의가 분기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위원장 공석이 발생한 '22년의 경우는 4월 이후 본회의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회의진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농특위 발족 이후 연구용역 및 본회의 개최 내역】

연도	연구용역 내역			본회의내역
	건수	예산액	계약액	
'19년(4월 발족)	13건	500	499	6월, 9월, 12월 (3회)
'20년	17건	1,000	904	2월, 7월, 10월, 12월 (4회)
'21년	18건	1,000	971	2월, 4월, 6월 11월 (4회)
'22년	6건	1,000	308	1월, 2월, 3월, 4월 (4회)
'23년	14건	800	643	2월, 7월, 9월, 12월 (4회)
'24년	10건	600	589	3월, 7월, 9월, 12월(예정) (4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 농특위는 시장개방·농촌소멸 등 농어업·농어촌이 직면한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향후 삶의 질 위원회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그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것임을 감안할 때, 위원장 임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농특위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부처간 협업 역량 강화 필요

□ 농특위는 중장기적 농정 의제를 발굴하고 농업·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범부처 협의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5인의 당연직위원을 두고 있음.

□ 그런데 농특위 출범이후 당연직위원 참석현황을 살펴보면,

당연직위원의 참석율은 평균 60%정도로 추산되나, 그 중 대부분은 대리참석으로, 당연직위원 중 1인이라도 직접 농특위 회의에 참석한 경우는 총 22회 본회의 중 4회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을 제외한 타 부처 당연직위원은 직접 참석한 바 없음.

【농특위 당연직위원 참석현황】

일시		회 차	당연직위원 회의참석		
			참석인원	참석현황	
2019	6.18	제1차	3인	불참	식약처장, 국조실장
				참석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대참	기재부장관
	9.24	제2차	2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국조실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12.3	제3차	3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국조실장
2020	2.19	제4차	2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국조실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7.14	제5차	3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국조실장
	10.13.	제6차	2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국조실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12.21~23	제7차	서면회의		
2021	2.22~24	제8차	서면회의		
	4.20	제9차	3인	불참	기재부장관, 국조실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식약처장
	6.23	제10차	2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국조실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11.3	제11차	2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국조실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일시		회 차	당연직위원 회의참석		
			참석인원	참석현황	
2022	1.18	제12차	2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국조실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2.23	제13차	서면회의		
	3.22	제14차	3인	불참	기재부장관, 국조실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식약처장
	4.8	제15차	서면회의		
2023	2.16	제16차	3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국조실장
	7.6	제17차	4인	불참	식약처장
				참석	**농식품부장관**
				대참	기재부장관, 해수부장관, 국조실장
	9.25.	제18차	3인	3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국조실장
	12.13	제19차	3인	불참	기재부장관, 국조실장
				참석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대참	식약처장
2024	3.20	제20차	3인	불참	기재부장관, 국조실장
				참석	**농식품부장관,**
				대참	해수부장관, 식약처장
	7.5	제21차	3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국조실장
	9.25.	제22차	3인	불참	기재부장관, 식약처장
				참석	-
				대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국조실장

※ 농특위 홈페이지 공개자료 재구성

□ 한편, '24년 농특위의 연구용역 목록을 살펴보면, 축산업발전, 전통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등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연구과제와의 차별성이 높지 않은 연구과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2024년도 농특위 연구용역 주제】

주제	수행기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농산어촌형 공공디자인 지자체 도입방안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지역 특화 식품산업 지도(map) 제시 연구	이시도르 지속가능 연구소
미래 수산업 대응 수산업·수산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촌소멸위기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참여 확대방안	(사)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 연구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전통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수출 1천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 농특위는 향후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률 제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연구용역 역시 특정부처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주제 위주로 선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범부처 협의기관으로서의 농특위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회의장 임차료 절감 노력 필요

□ 농특위는 '25년도 예산 중 임차료(210-07) 비목으로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사무실 임차료는 4억 2,800만원, 회의장 임차료는 6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임.

농특위는 '24년 회의장임차료 예산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월

기준 회의장 임차료를 2,913만원 집행하였고, 12월 기준으로는 약 4,0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42]됨. 이는 예산 편성액 대비 과다한 집행으로, 이로 인하여 농특위는 추가적인 세목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사무실 및 회의장 임차 예산 및 지출내역】

구분	'24년 예산	지출내역	
		2024.9.	2024.12.(예상)
회의장 (부대경비 포함)	60만원	2,913만원	4,000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회의장 임차 내역(2024년)】

(단위: 원)

경비지급일	행사명	지급금액
2024-02-26	제35차 운영위원회 및 워크숍	900,000
2024-03-04	그린바이오파운드리 전문가 자문회의(2.27)	363,000
2024-03-12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식(3.12)	764,500
2024-03-18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3.15)	2,079,000
2024-03-2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0차 본회의(3.20)	4,000,000
2024-03-2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0차 본회의(3.20.) 마이크 및 시스템 임차	770,000
2024-04-17	미래수산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8차 특별위원회(4.15)	445,500
2024-04-18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4.9) 심사	360,800
2024-04-18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4.17) 심사	1,599,400

42) 농특위가 제시한 예상액 기준

경비지급일	행사명	지급금액
2024-04-22	제22차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위촉식(4.17)	759,000
2024-05-17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5.3)	2,800,000
2024-05-24	농어업분과위원회 축산 TF 4차 회의(5.22)	233,200
2024-05-27	위원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토론회 공동주최	376,200
2024-07-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7.10)	1,980,000
2024-08-16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정책토론회(8.9)	2,800,000
2024-08-27	농어촌 삶의질 지수 지자체 설명회(8.26)	1,366,200
2024-09-10	농업법인 세제개선방안 현장토론회	808,500
2024-09-3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2차 본회의(9.25)	5,400,000
2024-09-3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2차 본회의(9.25) 시스템 임차	450,000
2024-09-3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2차 본회의(9.25) 델리게이션 및 중계기	880,000
소 계		29,135,3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 이에 대하여 농특위는 농특위 사무공간 면적이 작아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개최하기에 협소하고, 분과위원회 등의 경우에도 동시에 다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회의장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역대 본회의 개최장소를 보면, 제1차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는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텔 연회장 등 회의실 임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농특위 본회의 개최장소 내역】

회 차	일 시	장 소	회 차	일 시	장 소
제1차~ 제5차	19.6.18., 19.9.24., 19.12.3., 20.2.19., 20.7.14.	농특위 대회의실	제14차	22.3.22.	프레지던트호텔
제6차	20.10.13.	코리아나호텔	제15차	22.4.8~22.4.12.	서면회의
제7차· 제8차	20.12.21.~20.12.23., 21.2.22.~21.2.24.	서면회의	제16차	23.2.16.	프레지던트호텔
제9차	21.4.20.	정동1928 아트센터	제17차· 제18차	23.7.6., 23.9.25.	코리아나
제10차	21.6.23.	코리아나호텔	제19차· 제20차	23.12.13., 24.3.20.	프레지던트호텔
제11차	21.11.3.	영상회의	제21차	24.7.5.	청양군청
제12차	22.1.18.	프레지던트호텔	제22차	24.9.25.	코리아나호텔
제13차	22.2.23.~22.2.25.	서면회의			

※ 농특위 홈페이지 공개자료 재구성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회의 개최 시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등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임차료 초과 집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향후 불필요한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비목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사무실 임차료 절감 노력 필요

□ 농특위는 '25년도 예산 중 임차료(210-07) 비목으로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사무실 임차료는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4년도와 동일한 금액임.

농특위는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예산편성액 및 집행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사무실 및 회의장 임차 예산 및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9*	2025(안)
예산액	312	312	360	374	428	428
집행액	310	373	367	379	3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 농특위는 사무실 임차예산의 증가는 임대료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또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성 경비를 원칙적으로 임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침에 따른 적합한 편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지침은 위원회 등 한시적 성격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사무실 임차료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아울러, 농특위는 출범된 지 이미 5년 이상 경과되고, 존속기한이 연장(29. 4. 24. 까지)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동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무공간을 지속적으로 임차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한편, 유사한 한시적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는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서울 정부청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시적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임차현황】

구분	존속기한	사무실 임차여부	사무실 소재지
지방시대위원회	28. 7. 9.	○	세종시 어진동 세종타워
국민통합위원회	27. 5. 31.	×	정부서울청사(13층)
농특위	29. 4. 24.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특위는 농특위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사실과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향후 삶의 질 위원회와의 통합을 추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종, 과천 및 서울 정부청사에 입주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무실 임차료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국제농업협력(ODA) :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WFP 식량원조 사업이 식량 위기국에 쌀을 현물로 원조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곡대 보다는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동 사업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내산 쌀의 매입·원조가 최대한 많은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은 농림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물적·인적자원의 교류, 농업 정책과 관련한 공동 조사 및 연구, 국제기구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817억 9,800만원(50.5%)이 증액된 2,439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43].

【 2025년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국제농업협력(ODA)	91,556	162,128	146,362	243,926	81,798	50.5
WFP 식량원조	51,857	111,960	111,960	190,069	78,109	69.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2024. 10. 21.) 제출

43)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국제농업협력(5031-300)

(나) 검토의견

□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내역사업 중 “WFP[44] 식량원조 사업”은 식량 위기국[45]을 대상으로 쌀을 원조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46]에 가입한 ’18년부터 매년 쌀 5만톤을 원조하던 것을 ’24년부터는 원조 물량을 두배로 확대하여 쌀 10만톤을 원조하였고, ’25년 예산안은 원조 물량을 쌀 15만톤으로 추가 확대 편성하였음.

【 식량원조협약 일반현황 】

구 분	세부내용
목 적	세계 식량안보 증진 및 개도국 대상 식량지원
회원국	16개국 - 호주, EU,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대한민국
지원방법	회원국은 물량 또는 금액 기준 최소 원조규모를 서약하여 현금 또는 곡물(쌀 포함), 긴급구호 물품 등 기여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2024. 10. 21.) 제출

---

44) UN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 식량 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엔(UN) 산하의 기구

45)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유럽연합, 미국 국제개발처 등이 협력하여 구성한 식량안보정보네트워크(FSIN)는 세계 식량 상황을 관측하여 매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내용에 식량위기국이 포함되어 있음.

46) 세계 식량안보를 증진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현재 미국, 일본, 호주, EU 등 1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음. 식량원조협약 회원국은 매년 물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원조규모를 서약하게 되며, 이를 현금 또는 곡물(쌀 포함) 등의 형태로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

【WFP 식량원조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예 산(억원)		460	460	460	503	519	519	1120	1901
물 량(톤)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0,000	150,000
국가별 지원물량(톤)	케냐	13,000	10,000	10,000	9,500	11,000	11,000	21,000	25,000
	에티오피아	15,000	16,000	16,000	13,680	13,000	13,000	13,582	25,000
	우간다	5,000	5,000	5,000	4,500	6,000	2,492	3,000	5,000
	기니비사우	-	-	-	-	-	-	2,400	3,000
	모리타니	-	-	-	-	-	-	6,720	19,000
	시에라리온	-	-	-	-	-	-	2,400	3,000
	모잠비크	-	-	-	-	-	-	3,000	3,000
	마다가스카르	-	-	-	-	-	-	10,002	17,000
	시리아	-	-	-	3,000	-	3,006	-	-
	예멘	17,000	19,000	19,000	18,000	18,686	18,000	18,000	30,000
	라오스	-	-	-	1,320	1,314	-	-	-
	아프가니스탄	-	-	-	-	-	2,502	4,896	4,000
	방글라데시	-	-	-	-	-	-	15,000	16,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2024. 10. 21.) 제출

□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사업예산 전액을 WFP에 공여하면 WFP가 해당 예산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정부관리양곡을 구매한 후 이를 식량 위기국으로 운송하여 수혜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WFP가 지급한 원곡대는 다시 정부 수입액(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판매수입)으로 수납되고, 그 밖의 비용은 WFP가 해상·내륙 운송비, 창고 보

관비, 분배비용, 모니터링 등 부대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이 식량 위기국에 쌀을 현물로 원조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와 비교해 볼 때, 원곡대 보다는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WFP 식량원조사업 최근 5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원국가			4개국	4개국	6개국	5개국	6개국
지원물량			5만톤	5만톤	5만톤	5만톤	5만톤
예산 집행 내역	원곡대		22,401 (48.7%)	19,921 (43.3%)	18,022 (35.8%)	11,439 (22.1%)	19,974 (38.5%)
	물류비 등 부대비용		**23,599 (51.3%)**	**26,079 (56.7%)**	**32,301 (64.2%)**	**40,418 (77.9%)**	**31,883 (61.5%)**
		해상물류[47]	4,583 (10.0%)	5,285 (11.5%)	6,480 (12.9%)	16,982 (32.7%)	9,292 (17.9%)
		내륙운송 및 창고[48]	11,758 (25.6%)	13,578 (29.5%)	16,819 (33.4%)	15,404 (29.7%)	15,688 (30.3%)
		분배 및 모니터링 등[49]	7,258 (15.8%)	7,216 (15.7%)	9,002 (17.9%)	8,032 (15.5%)	6,903 (13.3%)
계			46,000	46,000	50,323	51,857	51,85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2024. 10. 21.) 제출

47)(해상운송비)
○ 한국 선적항부터 수원국 하역항까지의 해상운송비, 항구, 통관 등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UN의 물류를 담당하는 WFP가 선박을 수배하여 해상운송 진행
- WFP는 물류 비용 최소화 및 분쟁으로 인한 선사 기피 지역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대형 선사들과 글로벌 MOU를 체결하고 있음
-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해(예: EU 협정) 위험지역(예: 소말리아 해상)에서 군병력 호위 받음

48)(내륙운송비 및 창고 보관비)
○ 도착항에서 창고까지의 운송, 분배를 위한 분배지로의 운송, 품질관리비, 창고보관 비용
- 수원국이 내륙국인 경우(예: 우간다, 라오스) 도착항에서 수원국 국경까지의 내륙 운송비용도 포함됨

49)(모니터링 및 국가 사무소 운영비)
○ 분배 및 분배 모니터링 등 사업수행비
- 식량원조 수원국 사무소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WFP국가사무소 운영 지원: 직원관련, 자동차/사무실 비품/건물(사무실)유지 등)

(행정비)
○ 본부, 지역본부 등에 지원되는 운영비로 모든 국가의 WFP 공여액의 6.5%*로 동일 적용
- '17년 11월 WFP 집행이사회에서 7.0%에서 6.5%로 하향조정 의결, UN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

□ 물류비 등 부대비용 소요의 증가는 '21년부터 식량원조 국가 수를 확대(4개국→6개국)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겠으나, '22년의 경우 식량원조 국가 수가 줄어들었음(6개국→5개국)에도 불구하고 부대비용 지출액이 크게 증가[50]한 점을 볼 때, 사업 초기보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51]

【물류비 등 부대비용 편성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18년	편성액	23,908	당초 편성액 대비 **13억 6,1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25,269	
2019년	편성액	23,972	-
	집행액	23,599	
2020년	편성액	22,170	당초 편성액 대비 **39억 9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26,079	
2021년	편성액	31,104	당초 편성액 대비 **11억 9,7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32,301	
2022년	편성액	32,064	당초 편성액 대비 **83억 5,4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40,418	
2023년	편성액	30,647	당초 편성액 대비 **12억 3,600만원** 초과지출
	집행액	31,88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2024. 10. 21.) 제출

50) 농림축산식품부 및 WFP는 물류비 등을 WFP 본부, 이사회 승인을 받으며, WFP 집행이사국인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전세계 모든 공여국에 동일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51)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해상물류비 급등, 인플레이션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22년의 경우 부대비용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함.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1,901억원 중 725억원만 쌀 매입대금으로 편성되었고,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 1,176억원은 개발도상국으로 운송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편성되어 식량원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비 등 부대비용이 전체 사업예산 중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식량원조사업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

구분		예산	산출근거
총 액		190,069	
원곡대		72,450(38.1%)	350$×150,000×1,380원
부대비용		117,619(61.9%)	568$×150,000×1,380원
	해상물류	25,753(13.5%)	124$×150,000×1,380원
	내륙운송 및 창고	56,735(29.8%)	274$×150,000×1,380원
	분배 및 모니터링 등	35,131(18.5%)	170$×150,000×1,380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2024. 10. 21.) 제출

□ 동 사업의 목적에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식량원조예산의 60%가 넘는 1,176억원을 국내산 쌀 구입이 아니라 단순한 운송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부터 지원국가 수를 기존 6개국에서 11개

국[52]으로 확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지원국가 수가 확대될수록 물류비 등 운송비용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국가 선정 시 운송비 요인을 고려하고 운송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동 사업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내산 쌀의 매입·원조가 최대한 많은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2) 방글라데시,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기니비시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케냐, 우간다, 예멘, 에티오피아

6)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안 편성 필요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기본경비”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운영경비(7018-278)에 “주요사업비”의 성격을 가지는 ① 축산차량 출입 정보관리시스템, ②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서버교체, ③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서버 교체에 대한 전산장비 임차료를 편성한 것은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 편성으로 보이는바, 사업 성격에 적합한 예산안 편성의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6231-300) 사업은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동축산물·식물검역, 가축방역, 축산물 안전, 동물보호, 동물용 의약품 관리,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이력 관리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유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6억 7,000만원(△4.1%)이 감액된 15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53)]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운영경비(7018-278) 사업은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산운영경비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와 동일한 1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54)]

53)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6231-300)

54)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7018-278)

【 2025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화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말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검역본부정보화 (정보화)	17,112	16,279	11,057	15,609	△670	△4.1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운영경비	1,452	1,389	773	1,389	-	-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빅데이터팀 (2024. 10. 21.) 제출

(나) 검토의견

□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예산을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하고, 기본경비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① 기본행정경비, ②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③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상기 지침에서는 소규모 전산운영경비의 경우 “전산소모품, 임차료, 회선사용료 등 전산장비의 유지운영”과 “PC 교체 등 소규모 전산경비”의 목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본 전산장비 유지·운영 및 소규모 전산 경비 예산의 경우 기본경비[55]에 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운영경비 사업에 편성하여야 하고,

55) 소속기관기본경비-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주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유지·운영예산은 주요사업비[56]에 해당하는 검역본부정보화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운영경비(7018-278)에 “주요사업비”의 성격을 가지는 ① 축산차량 출입 정보관리시스템, ②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서버교체, ③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서버 교체에 대한 전산장비 임차료가 편성되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 편성으로 보임.

【 농림축산검역본부전산운영경비 (7018-278) 2025년 예산안 편성 내역 】

○ **임차료(210-07) : 883,000천원**

가. **축산차량 출입 정보관리시스템** : 91,000천원 × 4회

나.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 149,500천원 × 2회

다.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 108,500천원 × 2회

라. 강의실 임차료 : 3,000천원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설명자료 발췌

56) 검역검사정보화-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 이와 관련하여 국립종자원의 정보화 사업[종자원정보화(정보화) (6433-522)]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검역본부가 기본경비인 전산운영경비에 편성한 서버 교체 등의 예산을 주요사업비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편성하고 있음.

【 종자원정보화(정보화) (6433-522) 2025년 예산안 편성 내역 】

○ **임차료(210-07) : 125,000천원**

가. '21년 항온항습기, L2 교체(16,000천원)

・74백만원×1.8%×12개월=16,000천원

나. **'23년 노후장비(보안장비) 교체(49,000천원)**

・229백만원×1.8%×12개월=49,000천원

다. **'24년 노후장비(백본, 서버) 교체(60,000천원)**

・277,766천원×1.8%×12개월=60,000천원

자료: 국립종자원 사업설명자료 발췌

□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스템 서버 교체 등 주요사업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검역본부정보화 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등, 각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3%(△4,752억원) 감소한 14조 496억원으로, 구조개선사업계정은 전년 대비 4.2%(2,621억원) 증가한 6조 5,613억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은 전년대비 9.0%(△7,373억원) 감소한 7조 4,883억원, 임업진흥계정은 전년대비 1.1%(△111억원) 감소한 9,756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각 계정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구조개선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3조 9,095억원과 농특세계정 전입금 2조 5,019억원 등 총 6조 4,114억원을 조달하여, 일반사업비로 5조 1,385억원(농림축산식품부 4조 2,196억원, 해양수산부 9,121억원, 농진청 68억원)을 지출하고, 내부거래로 1조 4,228억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조 2,773원, 축산발전기금 1,455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농특세계정은 농특세 7조 4,153억원, 기타수입 730억원 등 7조 4,883억원을 조달하여, 일반사업비로 1조 9,992억원(농림축산식품부 1조 1,578억원, 해양수산부 7,590억원, 환경부 824억원)을 지출하고, 내부거래로 5조

4,891억원(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전출금 2조 9,872억원, 구조개선계정전출금 2조 5,019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임업진흥계정은 자체수입 3,055억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6,688억원 등 총 9,756억원을 조달하여 일반사업비로 6,717억원을 지출하고, 내부거래로 3,039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억원, %)

세입					세출				
구분	'23년	'24년 (A)	'25년안 (B)	증감 (B-A)	구분	'23년	'24년 (A)	'25년안 (B)	증감 (B-A)
계(구조+특별세+임업)	146,225	155,115	150,252	△4,863	계(구조+특별세+임업)	146,225	155,115	150,252	△4,863
계(구조+특별세)	136,167	145,248	140,496	△4,752	계(구조+특별세)	136,167	145,248	140,496	△4,752
[구조개선계정]	59,587	62,992	65,613	2,621	[구조개선계정]	59,587	62,992	65,613	2,621
o 자체수입·경상이전수입	945	922	940	18	□ 일반지출	51,286	54,509	51,385	△3,124
- 농식품부	681	661	677	16	o 농식품부	42,502	44,320	42,196	△2,124
- 해양수산부	251	250	252	2	o 해양수산부	8,533	10,114	9,121	△993
- 농촌진흥청	13	11	11	-	o 식약처	23	-	-	-
- 식약처	0.2	-	-	-	o 농진청	228	75	68	△7
o 정부내부수입	57,799	61,230	64,114	2,884	□ 내부거래지출	8,301	8,483	14,228	5,745
- 일반회계전입금	27,304	26,451	39,095	12,644	o 농식품부	8,301	8,483	14,228	5,745
- 농특세계정전입금	30,495	34,779	25,019	△9,760	- FTA기금전출	-	-	-	-
o 융자원리금회수	843	840	559	△281	- 공자기금원금상환	-	-	-	-
					- 공자기금이자상환	-	-	-	-
					- 지특전출금(농림)	6,846	7,028	12,773	5,745
					- 축발기금지원	1,455	1,455	1,455	-
[농어촌특별세계정]	76,580	82,256	74,883	△7,373	[농어촌특별세계정]	76,580	82,256	74,883	△7,373
o 농어촌특별세	69,880	76,199	74,153	△2,046	□ 일반지출	17,866	17,605	19,992	2,387
o 경상이전수입등	553	713	730	17	o 농식품부	11,446	10,540	11,578	1,038
- 농식품부	477	631	631	-	o 해양수산부	6,019	6,685	7,590	905
- 해양수산부	69	68	70	2	o 환경부	401	380	824	444
- 환경부	6	6	21	15	o 복지부	-	-	-	-
- 복지부	8	8	8	-	□ 내부거래지출	58,714	64,651	54,891	△9,760
o 융자원금회수	77	-	-	-	o 농식품부	58,714	64,651	54,891	△9,760
o 기금전입금	1,718	1,718	-	순감	- 공익기금	28,219	29,872	29,872	-
o 전년도세계잉여금	4,345	3,626	-	순감	- 농어업재해기금	-	-	-	-
					- 계정간전출금	30,495	34,779	25,019	△9,760
[임업진흥계정]	10,058	9,867	9,756	△111	[임업진흥계정]	10,058	9,867	9,756	△111
o 자체수입	3,079	3,381	3,055	△326	□ 일반지출	7,599	7,004	6,717	△287
o 일반회계전입금	5,495	6,388	6,688	300	□ 내부거래지출	2,459	2,863	3,039	176
o 전년도세계잉여금	1,484	98	13	△8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세입: 농어촌특별세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 필요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특세 세입예산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교부로 세출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조세감면액, 증권거래액 및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세[57]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농어촌특별세 세입 규모를 7조 4,15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예산에 비하여 2,046억원(△2.7%) 감소한 수치임.

57)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2025년도 농어촌특별세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계획(9월기준)		'25 계획안 (B)	증 감	
		계획(A)	수납		(B-A)	%
농어촌특별세	6,562,807	7,619,900	4,626,093	7,415,300	△204,600	△2.7

(나) 검토의견

□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세목임.

당초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정(1994.3.24)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한시적 목적세로 도입되었으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을 10년씩 2차례 연장해 왔음.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유효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23.12.21)[58]함에

58) 「농어촌특별세법」 유효기간 연장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3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따라 203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음.

□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의 세액 및 감면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종합부동산세·취득세·레저세액, ②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③고급가구·모피·오락기 및 골프장 입장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④상장주식의 증권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이러한 과세체계는 농어촌특별세 도입 이후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2025년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조세감면액 - 내국세감면 - 관세, 지방세 감면	20%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부과 (농어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저축감면	10%	○세금우대종합저축만 과세
○개별소비세액	10% (골프장 입장 30%)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물품
○증권거래금액	0.15%	○상장주식만 과세
○취득세액	10%	○부동산 등의 취득자 (서민·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등 제외)
○레저세액	20%	
○종합부동산 세액	20%	

※ 자료 :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제출자료('24.10.4)

징수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등에서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후생·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농어촌특별세는 2025년도 예산안에 7조 4,15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세입이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 추계되는 경향을 보였음.

농어촌특별세는 2020년부터 증권거래금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례적인 과다 수납(2020년 134%, 2021년 139.3%)이 이루어진 후 2022년에도 초과 수납(105%)이 이루어졌으나, 2023년에는 6조 9,880만원의 예산액 중 6조 5,628억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3.9%로 나타났음.

【농어촌특별세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본예산	추경(A)					
2020	4,552,010	4,671,111	4,671,111	6,259,604	6,259,604	134.0	100.0
2021	5,470,700	6,390,300	6,390,300	8,899,997	8,899,997	139.3	100.0
2022	6,680,200	6,680,200	6,680,200	7,013,196	7,013,196	105.0	100.0
2023	6,988,000	6,988,000	6,988,000	6,562,807	6,562,807	93.9	100.0
2024.9월말	7,619,900	7,619,900	7,619,900	4,626,093	4,626,093	60.7	100.0
2025	7,415,300						

※ 자료 :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제출자료('24.10.4)

2024년의 경우 당초 약 7조 6,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기재부가 2024년 9월 기준으로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농어촌특별세는 당초 편성된 약 7조 6,000억원 대비 4,000억원(△5.3%) 이 감소한 약 7조 2,000억원이 수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는 2024년 세입예산안 편성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59]한 7조 3,000억원보다도 1,000억원을 하회하는 것임.

【2024년 농어촌특별세 재추계 결과】

(단위 : 조원, %)

구분	예산	기재부 재추계	예산 대비 증감	예산처 세수전망
2024년	7.6	7.2	△0.4	7.3

※ 자료 : 기재부 보도자료(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9.26) 및 국회 예정처 세수수입 전망 재구성

정부는 2025년 농어촌특별세를 전년보다 약 2,000억원 감소한 약 7조 4,000억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는데, 2024년에 4,000억원의 오차가 발생하였던 점,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농어촌특별세 세입 규모를 정부보다 약 1,000억 과소 전망[60]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농어촌특별세도 여전히 과다 추계 가능성이 있음.

□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결산상 세입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59)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Ⅰ」, 2023. 10. p.96

60)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Ⅰ」, 2024. 10. p.93

연도로 이월되는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실제 농어촌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례적으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61]이 발생하였음.

【세입재원 없는 세출 이월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농특회계 계정	세입 결산 (A)	세출 결산 (B)	차년도 이월액 (C)	세계 잉여금 (A-B-C)	구조개선계정 전출금이월액 (D)	세입재원 없는 이월액 (A-B-C+D)
2021	구조개선사업	56,282	55,926	631	△275		△275
	농어촌특별세	11.,954	88,781	135	25,038	0	0
2022	구조개선사업	52,714	52,358	4,575	△4,219		△319
	농어촌특별세	98,174	85,711	4,309	8,154	3,900	0
2023	구조개선사업	63,479	61,379	3,987	△1,887		△77
	농어촌특별세	80,376	77,211	1,998	1,167	1,810	0

※ 자료 :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 제출자료('24.10.4)

「국가재정법」 제3조[62]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전년도의 세출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회계연도 독립

61) 통상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액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의 음수값을 의미하는데, 농어촌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 계정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지출사업인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금’ 중 농어촌특별세 수납고지일과 수납일 시차로 인한 연말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이월된 금액은 다음 해에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출되어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이를 합하여 산출됨.

6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세입 재원 없는 세출이월은 당해 연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의 세입이 이월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특세 세입예산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교부로 세출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농촌고용인력지원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의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농식품부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규모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 대상을 조기 선정하고 대상지역 선정 시 주변지역 갈등요인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농업분야의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의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등의 6개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보다 53억 7,700만원(24.5%)이 증액된 272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63].

【2025년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촌고용인력지원	12,722	21,911	9,852	27,288	5,377	24.5

63)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나) 검토의견

□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은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을 통한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보다 41억 6,000만원(483.7%) 증액된 5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실집행		(B-A)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4,220	860	30	5,020	4,160	483.7

동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서 기숙사 건립을 위한 10개 부지를 선정하여 지자체가 농업 근로자 주거시설(기숙사)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소당 24억원을 지원하는 거점형 2개소와 개소당 15억원을 지원하는 마을형 8개소 건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개요】

구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을 통한 농촌 고용인력 확보
사업기간	’22년～’23년(2개년), ’24년～’26년, ’25년～계속(3개년)
사업주체	지자체
지원내용	농업 근로자 주거시주거시설의 신축비 또는 개·보수비 지원
지원수준	○거점형: 시군 단위(100명 내외 수용), 개소당 24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마을형: 마을 단위(50명 내외 수용) 개소당 1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1년: 10%, 2년: 45%, 3년: 45% ** 1년차: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 기획 등 행정절차 추진→ 2년차: 착공→ 3년차: 준공

동 사업은 2022년 도입 당시 2개년 사업으로 설계되었으나, 지역별 사업 지연으로 당초 사업 완료 시점인 2년차에도 실집행이 매우 부진[64]하게 나타남에 따라 2024년 신규 개소부터는 3개년으로 사업 기간을 늘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부비율(연부율)은 1년차 10%, 2년차와 3년차 각각 45%인데,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숙사 건립 절차와 사업 단계별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임.

즉, 1년차에는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기획·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비용 정도만 편성함.

64) 2022년 선정 10개소 중 7개소는 3년차인 2024년에 준공되었거나 준공 완료 예정이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나머지 3개소는 4년차인 2025년 초에 준공 예정임.

2년차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사업자 선정, 공사 착공 등으로 실시설계비, 공사 시공에 따른 기성금[65] 집행 예산을 편성하고, 3년차에는 잔여 공사비 집행 예산을 편성함.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2024년 선정 개소에 대해 2년차 사업 예산은 2년차 연부율 45%를 적용하여 38억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신규 선정 개소에 대한 1년차 사업 예산은 1년차 연부율 10%를 적용하여 12억 2,000만원을 편성[66]하였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자치단체자본보조: 5,020백만원** - (산출) [거점형 2개소×2,400백만원(2년차 45%)×자치단체자본보조 50%]+[마을형 8개소×1500백만원(2년차 45%)×자치단체자본보조 50%]+ 신규 10개소×2400백만원(1년차 10%)×자치단체자본보조 50%] ○ **민간경상보조: 40백만원** - (산출) 운영비 40백만원(2차 20, 3차 2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10.4)

□ 그런데 동 사업은 2022년 및 2023년 연달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는 등 집행 부진에 대하여 국회에서 두 차례 지적[67]이 있었

65) 기성금은 공사 도중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 도중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함.

66) 2025년부터는 마을형을 제외한 거점형 10개소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기숙사로부터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감안할 때 읍·면 단위로 운용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을 판단하여 유형을 통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67) ▸ 2022년 시정요구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실집행 가능성을 예측하여 과다 이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지자체별 수요 재파악 등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 동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 방안을 모색할 것(주의)

고, 2024년부터 사업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기숙사 건립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도 사업 대상 10개소[68]는 2024년 2월에 모두 선정 완료되었음.

그런데 2개소[69]의 경우 지역 민원으로 인하여 2024년 10월 현재 대상부지 변경을 검토 중에 있고, 1개소[70]의 경우 지자체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

농식품부에 따르면 추경 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1개소[71]는 12월 시 의회의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 후 공공건축 심의 및 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나머지 2개소 중 1개소는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반대로 인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현재 변경 후보지역 부지의 적절성 및 인근주민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어 빨라야

▸2023년 시정요구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님비현상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제도개선)

68) 거점형 2개소(봉화, 김천) 및 마을형 8개소(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69) 전북 완주군 및 경남 산청군

70) 충남 당진시

71) 전북 완주군

2024년 12월에 공공건축 기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건축설계 등을 거치면 2025년 10월이 되어서야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2025년에 연부율 45%를 적용하여 편성된 예산이 상당 부분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1개소 당초 사업 계획 및 현재 진행상황 】

기 간	24년 예산 편성 시 계획	현재(예정) 진행상황
24.3.	공유재산 심의	
24.9.	설계발주	
24.10.~ 24.12	세부설계	추경예산 반영 (1년차 사업비 450백만원, 24.10.)
25.6.	공사발주	공공건축 기획(24.12.)
25.8.	공사시행	설계사 선정(25.5.)
26.8.	공사완료	건축설계(25.8.)
26.10.	근로자 입주	시공사 선정(25.1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10.4)

한편, 나머지 1개소[72]는 당초 사업대상지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매입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 변경을 추진 중임.

이에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5년 연부율 45%를 적용하여 편성된 예산의 전액 집행 역시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73].

72) 경남 산청군

73)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변경 후보 지역은 군유지로 당초 외국인 농업근로자 건립을 위해 공유

【1개소 당초 사업 계획 및 현재기준 진행상황】

기 간	24년 예산 편성 시 계획	현재(예정) 진행상황
24.5.	지방재정투자심사	’24.11
24.7.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	’24.4. 완료
24.8.	공공건축 기획용역 발주	’24.5. 완료
24.10.	사업계획 사전검토	’25.2
24.11.	경상남도 공공건축 심의	’25.3
25.1.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25.4) 실시설계발주(’25.6)
26.4.	공사착공	
26.10.	집기 및 비품 구입	
26.11.	공사 준공 및 운영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제출자료(’24.10.4)

다만, 농식품부는 위 3개소 외의 7개소 중 일부는 2025년 완공이 가능한 것을 예상되는 사업지[74]도 있어, 3개소에서 사업 지연으로 2025년 편성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예산을 관할 도에서 사업이 빨리 진행 중인 타 시군에 배정하여 조기 완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설명[75]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부지

재산 관리계획안 수립 완료(’23.10.19), 기숙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24.8.21.) 등 사전 절차도 이행 완료하였기에 나머지 1개소(전북 완주군)보다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임

74)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북 남원, 경북 봉화는 ‘24.9월 현재 건축설계 중이며, 문경은 ’24.10월 착공 완료, 고령은 ‘24년 11월 설계 공모예정으로 ‘25년 완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75) 이 경우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는 2026년에 2개년도 예산을 모두 배정하여 집행할 예정임.

변경 및 추경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부지가 조기에 선정된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경우 2년차에도 완공이 가능하여 사업기간을 3개년으로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보임.

최근 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76]임을 고려할 때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농식품부는 건립사업이 지연된 대상지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규모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향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사업비 적기 확보를 위하여 동 사업 예산이 지자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5년부터는 사업 시작 전년도에 대상을 조기 선정하고, 부지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지역 선정 시 주변지역 갈등요인(학교·아파트 인접지역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조기 완공이 가능한 사업지의 경우 적기에 추가 예산을 집

76) 농업분야 외국인력 배정규모: ('22) 2.6만명 → ('23) 5.0만명 → ('24) 7.7만명(고용허가 1.6만명+계절근로 6.1만명)

행하거나 예산 집행 가능 시기에 맞추어 사업 추진 단계를 조정하는 등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농업재해보험 :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실제 가입 수요에 기반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에 대하여 실제 가입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업재해보험 사업은 농가가 재해를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재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장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작물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가축재해보험·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보다 1,448억 2,500만원(22%)이 증액된 8,019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77]

【2025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업재해보험	726,447	657,104	352,066	801,929	144,825	22.0

77)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재해보험(1031-300)

(나) 검토의견

(1)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2025년도 내역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수입안정보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997억 1,700만원(2,466%) 증가한 2,078억 1,700만원 편성되었음.

【2025년도 농업재해보험 내역사업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4예산(A)	'25예산안(B)	증 감	
			(B-A)	%
농업재해보험	657,104	801,929	144,825	22.0
·농작물재해보험	535,584	484,182	△51,402	△9.6
·가축재해보험	112,220	109,930	△2,290	△2.0
·수입안정보험	8,100	207,817	199,717	2,465.6
·가축질병치료보험	1,200	-	△1,200	순감

2025년도에 수입안정보험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2024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던 9개의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2025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6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른 것임[78].

78) 본사업: 콩, 고구마, 가을감자,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시범사업: 벼, 가을무, 가을배추,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데 반하여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임.

【농작물재해보험 및 수입안정보험 비교】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73개('24) → 76개('25)	시범사업 9개('24) → 시범사업 6개, 본사업 9개('25)
보상 기준	자연재해로 인해 당해연도 수량이 평년수량의 60~90% 미만으로 감소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품목별 수입이 평년수입의 60~85% 미만으로 감소
보장수준	60%, 70%, 80%, 85%, 90%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60%, 70%, 80%, 85%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지원내용	보험료의 50% 수준	보험료의 50% 수준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10.4)

□ 현재 농업재해보험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농업재해를 농작물 등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재해보험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규정하면서, 제19조에서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분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 사업 수행근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후 략>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식품부는 제27조의 시범사업 규정에 따라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79]해왔으나, 이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정의 규정을 개정[80]함으로써 정부가 수입안정보험에

79) 다만, 시범사업 규정도 농업재해보험의 범위에 속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시범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감소가 포함된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불충분해 보임.

80)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실제 보험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 2025년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보험료 지원예산은 예상보험료 3,514억 7,700만원의 50%를 반영한 것으로, 예상보험료는 2025년 운영 예정인 대상 품목 15개의 가입률 목표치(본사업 품목 가입률 25%, 시범사업 품목 가입률 15%)[81]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한편,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산출내역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 예산은 최근 3년간의 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소요예산을 추정한 후 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인한 수요감소분[82]을 제하여 편성하였음.

【2025년도 수입안정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산출내역】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 25년 보험료 지원 = 175,738백만원('25년 예상 순보험료* 351,477 × 국고지원비율 50%) * 예상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2,893,952백만원 × 보험료율 12.1% ** 보험가입금액 = {각 품목별(품종·작형별) 생산액 × 각 품목별 가입률(본사업 품목 25%, 시범사업 품목 15%)}의 합계	○ 25년 보험료 지원 = 469,686(백만원) - {'24년 예상보험료 1,025,250 × (1+주요품목 국고보험료 증가율 8.4%) - <u>수요감소분</u> 172,000} × 50%

81) 농식품부는 본사업 품목 가입률을 25%로 시범사업 품목 가입률은 15%로 목표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본사업의 경우 재해보험 및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률을 고려한 것이고, 시범사업의 경우 15%는 2022~2023년 시범사업 1~2년차인 품목들의 전국 기준 가입률이 15.3%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함.

82) 대상품목의 '23년 사업실적(1%당 국고지원액)에 가입률 감소분 추정치(시범사업 15%, 본사업 25%)를 반영하여 산출함.

두 사업의 예산이 연계되어 편성된 것은 농업인이 두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임.

가입자 입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수입안정보험의 보장범위가 넓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더 높은 보험료는 단점일 수 있어 가입자의 재배 품목·지역, 위험회피 성향 등에 따라 선호하는 보험은 다를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산출방식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 각각에 대한 실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액 산출 시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 증가분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는 수입안정보험 가입자가 모두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전환 가입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자가 신규로 수입안정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역에서 두 보험 중 어느 보험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적은 없으며, 매년 각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속 가입 유지 의사를 묻는 문항에 두 보험 모두 95%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83].

그러나 이러한 조사만으로는 보험 가입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에 대하여 전환 또는 신규 가입 여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거나 두 보험을 통합 사업으로 구성한 후 농작물보험 전체에 대한 선호도 조사 등에 기반하여 수요를 측정하는 등 실제 가입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3) 농작물재해보험 계속 가입 의사 문항 답변(보통~매우 그렇다): ('22) 95.1% → ('23) 95.8
수입안정보험 계속 가입 의사 문항 답변(보통~매우 그렇다): ('22) 97.7% → ('23) 97.6

4) 농식품바우처 :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 시 지원의 시급성과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적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233억원(157.4%)이 증액된 381억원이 편성되었음[84].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식품바우처	14,800	14,800	14,772	38,100	23,300	157.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24. 9. 9.

8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바우처(3041-385)

(나) 검토의견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5년간 시행해 왔으며, 2024년 1월에는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화 될 예정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개요】

□ (목적)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구분	시범지역	지원 기간	가구수 (가구)	예산 (국비)
'20년	4개 시·군·구 (세종시, 완주군, 김천시, 청양군)	4개월 (9~12월)	1.5만	35억원
'21년	10개 시·군·구 (거제시, 김제시, 괴산군, 당진시, 문경시, 밀양시, 예천군, 청양군, 평창군, 해남군)	12개월	3.3만	89억원
'22년	15개 시·군·구 (거제시, 김제시, 괴산군, 당진시, 밀양시, 양평군, 옹진군, 예천군, 장성군, 정읍시, 청도군, 청양군, 평창군, 해남군, 부산진구(2개동))	8개월 (3~10월)	4.7만	89억원
'23년	18개 시·군·구 (부산진구(2개동), 달성군, 옹진군, 평창군, 화천군, 괴산군, 충주시, 청양군, 당진시, 고창군, 김제시, 장성군, 해남군, 강진군, 청도군, 예천군, 거제시, 밀양시)	10개월 (3~12월)	6.6만	148억원
'24년	24개 시·군·구 (부산진구(1개동), 달성군, 옹진군, 영월군, 충주시, 괴산군, 당진시, 청양군, 예산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곡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 상주시, 청도군, 예천군, 밀양시, 거제시, 하동군, 서귀포시)	6개월 (3~8월)	9.7만	148억원

□ (시범지역) 본사업 설계 보완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 확대

□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기준)

(단위 : 가구, 천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지원금액	40	57	69	80	89	98	106	113	120	126

□ (지원품목)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입 불가)

* ('20)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계란 → ('21.추가)육류, 잡곡, 꿀 → ('22.추가)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 (사용처) 수혜자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용처 확대 지원

* ('22)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온라인) → ('23추가)GS25, GS더프레시, 남도장터(온라인) → ('24추가)CU, 아이마트(밀양 수산점), 인더마켓(온라인)

□ (지원형태) 선불식 충전카드 형태의 농식품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금액 지급

*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농협은행 현금카드 디자인 도입 및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 표시

< 농식품바우처카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9. 13.

□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영양 섭취 격차가 완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식품군별 권장 섭취 횟수 대비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따른 섭취 횟수 ('23)】

구분		고기,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유제품류
중위소득 50% 이하	지급 전	80.7%	94.6%	90.9%	46.1%
	지급 후	93.0%	99.6%	103.8%	50.8%
중위소득 50% 초과		100.3%	106.4%	97.7%	65.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4. 9. 13.

또한 농식품바우처 지원('23년 총사업비 278억원)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여 농업생산액이 476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으로 농업생산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촉진되고 국산 농산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농식품바우처 사업 추진 시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이용권 시범사업('24년 기준)과 본사업을 비교해 보면, 적용지역은 24개 시범지자체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가구 인원수별 지원액도 상향되었음.

그럼에도 적용대상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9.7만가구(p))'에

서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을 포함한 가구(8.7만가구)’로 오히려 실질적으로 축소된 측면이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과 본사업 비교】

구분	시범사업(‘24)	본사업(‘25~)
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 보충을 위한 농산물 구매 지원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과 국산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9.7만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8.7만 가구
예산 (국비)	○148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381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액	○4인 가구 기준, 월 8만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액 상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액 상이
지역	○24개 시범지자체	○전국 229개 지자체
사용처	○7개 유통사, 2천여 매장	○44개 유통사, 58천여 매장
품목	○10품목 ＊ 국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7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푸드플랜지원부, 2024.. 9. 13.

이는 재정여건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 노인가구 및 1인~2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3년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이용자 연령별(가구주 연령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이용자 비중이 67.3%에 달할 만큼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음. 반면에 본사업 중점 지원 대상은 영유아, 학생, 임산부 포함 가구로 변경됨.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이용자 연령별 현황】

구 분	19세 이하	20세~39세	40~59세	60세~	합계
비중	2.1%	5.1%	25.5%	67.3%	100.0%

※주 : 농식품바우처 지원 가구주 연령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푸드플랜지원부, 2024. 9. 27.

농식품바우처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 및 추진 예정이므로, 시범사업과 지원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취약계층인 노인과 관련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식품부는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 시 지원의 시급성과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적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18호)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임.

개정안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나, '농식품이용권'의 지급대상(농식품)에 관한 사항, 이용권 부정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85]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 시에도 논의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5)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18호) 검토보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9.) 참조

5) 농산물안전성조사 :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피해 분쟁조정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2025년도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산물안전성조사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1억 8,400만원(△0.7%)이 감액된 253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86].

【2025년도 농산물안전성조사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산물안전성조사	24,756	25,540	18,573	25,356	△184	△0.7%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항공방제업 관리	369	370	258	370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24. 9. 9.

86)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산물안전성조사(6032-301)

(나) 검토의견

□ 농산물안전성조사 사업의 내역사업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항공방제업 관리 사업은 ①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분쟁을 조정하고 ② 무인헬리콥터 등 항공방제업 신고·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이 중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임. 동 위원회(30명)는 2023년에 신설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8명과 민간위원 21명 총 29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87]됨.

동 위원회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4[88]에 따라 농약피해(①~④)

87) 「농약관리법」
제23조의 5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88) 「농약관리법」
제23조의 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농약피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1.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
3. 방제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 등을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함(①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②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해가 있는 경우, ③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약 등을 사용한 경우, ④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장관은 동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민간위원 1/3 이상, 비공개) 및 개최되며,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농약피해 분쟁조정 절차】

신청서 접수	⇒	조사반편성 (조사공무원증 발급)	⇒	사실관계 조사	⇒	합의권고	⇒	**조정위원회 개최**	⇒
조정안 작성	⇒	조정안 통지	⇒	당사자 수락여부 조정위원회 통지(15일이내)	⇒	(당사자 수락시) 조정조서 작성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2024. 10. 10.

□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2023년)된 이후의 실적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9월까지 농약피해 분쟁조정 신청·조정 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 편성된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은 분석시료 분석수수료와 교육·홍보비 등의 일부만이 집행되었음. 그럼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안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	산출내역	2023		2024 (9월)	
		예산	결산	예산	결산
분쟁조정위원 수당	* (심의회 수당) 7명×24회×200천원 (위원 현지조사 수당) 2명×200천원	34	-	34	-
분쟁시료 분석수수료 등	* (분석수수료 및 탁송료) 550건×326천원 (시료 수거봉투) 2,700매×1천원	182	35.4	182	-
교육·홍보비	* (교재) 200부×20천원	4	24	4	1
출장여비	* (분쟁조정) 110건×2명×40천원	8.8	1	8.8	0.4
합계		228.8	60.4	228.8	1.4
집행률		26.4		0.6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2024. 10. 10.

【2025년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산출내역	'24년 예산안
분쟁조정위원 수당	* (심의회 수당) 7명×24회×200천원 (위원 현지조사 수당) 2명×200천원	34
분쟁시료 분석수수료 등	* (분석수수료 및 탁송료) 550건×326천원 (시료 수거봉투) 2,700매×1천원	182
교육·홍보비	* (교재) 200부×20천원	4
출장여비	* (분쟁조정) 110건×2명×40천원	8.8
합계		228.8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2024. 10. 10.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분쟁조정 신청 전 적극적인 상담을 통한 화해 등으로 실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발생의 예방을 위해 방제 횟수가 증가하고 항공방제 확산으로 농약 비산 오염 등 피해 분쟁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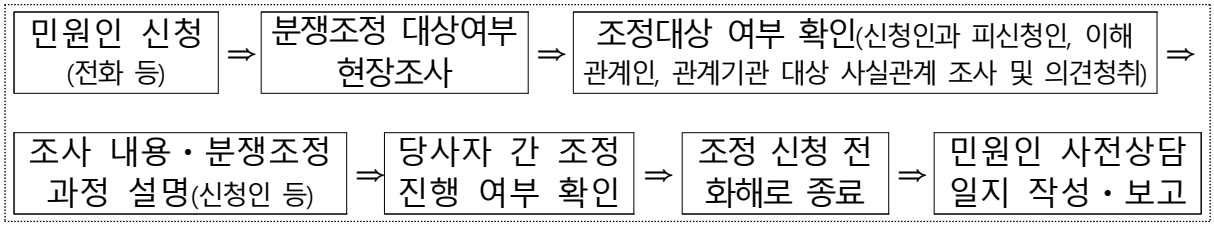
【농약피해 분쟁조정 신청 전 분쟁 해소 건】

구 분	2023년	2024년 상반기	합 계
상담	27건	6건	33건
조정 신청 전 화해로 종료	1건	3건	4건
소계	28건	9건	37건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2024. 10. 10.

□ 그러나 농약피해 분쟁조정 신청 전에 분쟁이 해소된 건을 모두 고려하여도 분쟁조정 수요가 충분하지 않음. 또한 현재 대부분의 농약피해 분쟁 건이 상담 및 화해 단계에서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기준 농약피해 분쟁조정 건수를 24회로 계상한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조정신청 사전 상담 과정】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2024. 10. 10.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피해 분쟁조정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2025년도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를 검토[89]할 필요가 있음.

89)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방제 증가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항공방제 증가로 인하여 피해분쟁 사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분쟁조정 사업의 시행 초기로서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분쟁조정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내역사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항공방제업 관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방제업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항공방제업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항공방제업체 신고현황: ('23년) 1,459개소 → ('24년) 1,803 → ('25년) 1,803 이상 예상
* 항공방제기술교육 이수현황: ('23년) 2,750명 → ('24년) 2,800 → ('25년) 2,800 이상 예상

6) 농촌용수관리 : 목표수질 미달성 지구의 수질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 시행 후 목표수질 미달성 지구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구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수처리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준공 지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정화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촌용수관리 사업은 농촌용수의 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설을 자동화하고 농업용수 수질에 대한 자동측정 및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67억 5,500만원(△9.6%)이 감액된 63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90].

【2025년도 농촌용수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촌용수관리	78,689	70,088	39,735	63,333	△6,755	△9.6%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37,837	38,654	19,899	38,334	△320	△0.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24. 9. 9.

90)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용수관리(4038-310)

(나) 검토의견

□ 농촌용수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은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저수지[91]·담수호[92] 수질을 조사하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한국농어촌공사 333억 7,2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49억 6,200만원으로 총 383억 3,400만원임.

【2025년도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주체	예산안	산출내역
한국농어촌공사	33,372	- 수질조사 8,180 - 저수지 수질개선 21,592 - 담수호 수질개선 3,600
지방자치단체	4,962	- 저수지 수질개선 2,562 - 담수호 수질개선 2,4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24. 9. 9.

91) 하천의 계곡에 댐을 축조하여 저수하는 시설로서, 주위에 흙을 이용하여 만든 규모가 작은 소류지도 이에 포함함. 물의 저류, 조정, 조절 등을 위한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못, 호소, 유지 등으로 관개용, 공업용, 도시용, 발전용, 홍수조절용 등이 있음

92) 해면이나 감조호에서 해수를 차단하고 내부의 염수를 담수로 전환해 만든 호수를 의미. 간척사업에 의한 방조제 조성 시 생성되는 호수임.

동 사업 대상은 저수지 수질개선 대상 120개 지구와 담수호 수질개선 10개 지구임. 2008년 5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24년 9월 기준 저수지 120개 지구 중 61개를 준공하였으며, 담수호 10개 지구는 아직 준공되지 아니하였음.

【수질개선사업 방식】

① 취입보 및 어도	② 인공습지	③ 침강지 및 부댐
		
-취입보·어도 건설을 통해 하천수를 인공습지로 유도	-인공습지 조성을 통해 하천수를 습지식물을 이용하여 정화(유기물, 질소, 인) 후 호내로 유출	-침강지·부댐 건설을 통해 강우시 취입보를 월류하여 호내로 유입되는 하천수를 일시 저류시켜 입자가 큰 오염물질 침전 제거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2024. 10. 23.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은 통상 1년의 기본조사와 3~4년 간의 수질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습지의 식생 활착 및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완료 후 5년차부터 수질개선 여부를 측정[93] 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2024년 9월 기준 61개 준공 지구 중

93) 수질조사는 1년에 총 7회 실시함. 2024년 9월 기준 6회차까지 실시하였음.

36개 지구가 그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음.

36개 지구 중 목표 수질인 4등급을 달성한 지구는 30개 지구로 수질달성률은 83.3%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지구는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목표수질 달성률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9
준공지구 (누적)	16	20	22	25	32	36	40	45	50	54	61
목표관리지구 (누적)	2	3	5	9	13	16	20	22	25	32	36
목표달성지구	2	2	3	7	10	12	15	17	19	25	30
목표수질 달성률	100.0	66.7	60.0	77.8	76.9	75.0	75.0	77.3	76.0	78.1	83.3

※ 주1: 목표관리지구란 준공 후 5년차부터 달성 산정대상(습지식생활착 및 안정화 기간)
주2: 목표달성지구란 목표관리지구 대비 목표수질(Ⅳ등급) 달성된 지구
주3: 목표수질달성률은 목표관리지구 중 목표달성지구의 비중임(각 연도별로 평가)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2024. 10. 23.

□ 이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우선 ① 외부요인으로는 당초 시설용량 산정 시 예측한 오염원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음. 상류 오염원(축산) 및 비점오염원[94]이 증가하는 경우임.

94)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다음으로 ② 내부요인으로는 비주기적인 식생[95]절취, 침강지[96]의 퇴적으로 인한 처리용량 감소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경우와 인공습지 등 자연정화방식의 정화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음.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목표수질 미달성 지구 현황('24. 9. 기준)】

시설명	위치	준공연도	목표수질 미달성 원인	
			외부요인	내부요인
개천	경북 의성	2009	- 상류 오염원(축산) 증가 - 경작지·임야면적 축소, 대지·도로면적 확대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 비주기적 식생절취, 유입량 부족으로 인한 인공습지 정화기능 저하
월천	전남 함평	2011	- 상류 오염원(축산, 양식) 증가 - 양만장(뱀장어) 고농도 폐수 직유입	- 고농도 배출수 유입으로 인한 식생 밀도 감소
설성	경기 이천	2012	- 상류 오염원(생활, 축산, 산업) 증가 - 저수지 인접 마을하수도 방류수 직유입	- 퇴적으로 인한 인공습지, 침강지 정화기능 저하
대승	경북 영천	2012	- 경작지·임야면적 축소, 대지·도로면적 확대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 저수지 인접 마을하수도 방류수 직유입	- 퇴적 및 유입량 부족으로 인공습지 정화기능 저하
만수	경기 안성	2015	- 경작지·임야면적 축소, 대지·도로면적 확대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 비주기적 식생절취, 유입량 부족으로 인한 인공습지 정화기능 저하
덕림	전북 고창	2017	- 강우시 상류 유역 토사의 대량 유입	- 토사유입으로 인한 인공습지, 침강지 정화기능 저하 - 인공습지내 식생 고사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2024. 10. 23.

95) 땅 위를 덮고 있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96) 침강지는 강우 시 유역에서 강우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토사 및 부유물질이 습지 내부로 유입되기 이전에 침전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함. 또한 부분적으로 습지로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목표수질 미달성 지구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구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수처리공법[97]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준공 지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98]를 통해 수질정화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97) 기존 자연정화방식 외에 설치기간 단축이 가능한 물리·화학적 처리방식의 공법을 의미

98) 주기적인 식생절취, 침강지 준설, 유지관리 상세계획 작성, 운영실태 불시점검 등

7) 국립농업박물관운영 : 국립농업박물관 운영 출연금의 비목 변경, 사업비 비중 상향, 기타 공공기관 지정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업박물관사업 출연금 비목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사업비 비중의 상향,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찾아가는 박물관 등의 사업을 통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립농업박물관운영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하고 교육·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농업박물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6억 3,300만원 감액(△3.5%)된 174억 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99].

【2025년도 국립농업박물관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국립농업박물관운영	16,714	18,039	14,431	17,406	△633	△3.5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16,714	18,039	14,431	17,406	△633	△3.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99)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국립농업박물관운영 (4130-427)

(나) 검토의견

(1) 기관운영출연금 중 사업비 항목의 사업출연금으로의 비목 변경 필요

□ 국립농업박물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출연금으로 인건비·기관운영비 및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2025년 예산안의 경우 인건비·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모두를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00]에 따르면 출연금 중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은 사업출연금(350-02)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예산의 목적과 사용처에 따라 재정구조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출연금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더 명확하게 추적 가능 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은 기관운영출연금은 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기관 세입에 계상할 수 있고, 사업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의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100)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60p

○ 비R&D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
-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 사업출연금(350-02목) :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점에서도 구분편성의 필요성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전시기획·운영사업, 유물수집·관리사업, 교육사업, 농업자원운영사업, 학술 및 교류협력사업, 어린이박물관 운영사업, 정보화사업 등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에 해당됨.

【2025년도 국립농업박물관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7,406 백만원	
가. 사업비 : 3,628백만원 · 전시기획·운영사업 1,510백만원 · 유물수집·관리사업 1,143백만원 · 교육사업 403백만원 · 농업자원운영사업 840백만원 · 학술 및 교류협력사업 608백만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사업 695백만원 · 정보화사업 180백만원 · 결산잉여금 반영 △1,751백만원	**나. 기관운영비 : 4,787백만원** · 운영비(공공요금, 피복비, 용역비 등),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유형자산취득 등 4,787백만원 **다. 인건비 : 8,991백만원** · 연봉 및 제수당(125명) 7,561백만원 · 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125명) 1,430백원

참고로 동 사업과 유사한 해양수산부의 '해양박물관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박물관 운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해양자료수집, 전시기획, 학술·문화, 정보화 및 교육·홍보의 경우 사업출연금으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해양수산부 해양박물관 운영 사업 예산안】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6,206백만원 - 인건비 4,201백만원 + 기관운영 2,005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2,743백만원 - 해양자료수집 1,331만원(자료수집 761+보존 227+수장관리 343) - 전시기획 642백만원(해외 360 + 국내 222 +테마 60) - 학술및문화 240백만원(학술조사 78 + 학술대회 60 +도서관 102) - 정보화 100백만원(유물DB유지보수 50 + 업무시스템 50) - 교육및홍보 430백만원(교육 215 + 홍보 21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국립농업박물관운영 사업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부분은 관련 지침 및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사업출연금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비 비중 상향 필요

□ 국립농업박물관의 2025년도 예산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출연금 174억 600만원 중 인건비[101]는 51.7%(89억 9,100만원), 기관운영비는 27.5%(47억 8,700만원), 사업비는 20.8%(36억 2,800만원) 수준임.

또한 22년도 결산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의 경우에도, 전체예산 194억 300만원 중 인건비는 46.3%(89억 9,100만원), 기관운영비는 24.7%(47억 8,700만원), 사업비는 27.7%(53억 7,9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함.

101)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임

유사 기관인 국립항공박물관의 경우 출연금 기준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33.6%, 자체수입 충당분을 포함하면 38.6% 수준인 것과,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 전체 출연금의 30.7%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국립농업박물관의 사업비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국립농업박물관은 유사 박물관들과 달리 다랑이논밭[102], 과수원, 농가월령 등 체험이 가능한 야외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므로 다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인건비·경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특수법인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유는 법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전체 예산의 20.8%(결산잉여금 포함시 27.7%)만을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유사박물관과 비교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 국립박물관 예산 현황】

(2025년도 예산안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설립연도	연면적	정원	예산				비고	공공기관 지정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합계		
국립농업박물관	'22	18,000㎡	125	8,991 (51.7%)	4,787 (27.5%)	3,628 **(20.8%)**	17,406 (100.0%)	출연금기준	-
				8,991 (46.3%)	4,787 (24.7%)	5,379 **(27.7%)**	19,403 (100.0%)	결산잉여금 포함	
국립항공박물관	'19	18,593㎡	83	6,256 (46.7%)	2,592 (19.4%)	4,469 **(33.6%)**	13,317 (100.0%)	출연금기준	'21
				6,418 (33.4%)	3,529 (21.9%)	6,243 **(38.6%)**	16,190 (100.0%)	자체수입 충당분 포함	
국립해양박물관	'15	25,870㎡	63	4,201 (46.9%)	2,005 (22.4%)	2,743 **(30.7%)**	8,949 (100.0%)	-	'1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102) 산지나 언덕에서 지형을 따라 층층이 계단처럼 형성된 논밭

(3)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노력 필요

□ 국립농업박물관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인건비,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받는 출연기관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103]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수법인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경영공시,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경영혁신 규정을 적용받게 됨.

또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되며, 주무부처로부터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음.

국립농업박물관과 유사한 기관인 국립항공박물관의 경우는 '21년,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는 '16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음.

국립농업박물관은 그 건립과정에서 6억 3,000 제곱미터의 수원시 부지와 1,508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103)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024년 확정예산 기준 180억 3,9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경영공시, 경영평가 및 국정감사 수감 등의 절차를 통해 보다 투명한 기관운영, 객관적인 성과평가, 관련 업무에 관한 공적감시를 받도록 할 필요 있음.

국립농업박물관은 '23년과 '24년 기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찾아가는 국립농업박물관' 등 박물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립농업박물관은 어린이에게 농업과 자연의 중요성을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알리기 위하여 어린이박물관을 설치·운영중에 있음.

【국립농업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전시사례】



※ 자료: 농업박물관 홈페이지

어린이들은 박물관을 재방문 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에 비하여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박물관은 전시 주제나 전시물 변경주기가 비교적 짧은 측면이 있음.

이러한 예산소요를 반영하여 2025년 국립농업박물관 예산 중 어린이 박물관 운영사업 예산은 2024년보다 3억 4,600만원(99.1%) 증가한 6억 9,5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있음.

국립농업박물관 제출자료에 따르면 25년 어린이박물관 시설개선과정에서 교체되는 기존 전시물은 폐기될 예정임.

【국립농업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운영사업 예산편성(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24년도(A)	'25년도(안)(B)	증감	
			B-A	%
어린이박물관 운영사업	349	695	346	99.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 국립농업박물관은 다른 박물관, 지방교육청, 어린이집·유치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찾아가는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농업박물관 교구 대여'의 형식으로 교체 전시물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농업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 농촌공간정비사업 일정관리 철저 및 농촌공간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사업은 농촌의 재구조화를 통하여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① 농촌공간정비, ②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③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④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330억 7,700만원(40.0%)이 증액된 1,156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104].

【2025년도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83,079	82,591	74,419	115,668	33,077	40.0
농촌공간정비	73,500	68,000	61,970	104,450	32,450	53.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4. 10. 25. 제출

10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4160-431)

(나) 검토의견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물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재생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324억 5,000만원(53.6%) 증액된 1,04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농촌 재구조화를 위해 축사·공장 등 농촌의 유해시설에 대한 정비 및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
사업 기간	5년
총사업비 연부율	(21년)7%,(1년차) 10%,(2년차) 33%,(3년차) 35%,(4년차) 15%(5년차) → (22년) 10%, 10%, 20%, 35%, 25% → (23년) 10%, 10%, 15%, 35%, 30% → (24년·25년) 5%, 10%, 15%, 35%, 35%
사업 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
지원 내용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재구조화를 위해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철거비 등 지원 - 난개발을 철거한 공간을 지역 주민 대상 생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 그 밖에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을 안길·하천 등 복원, 담장·주택 등 정비, 마을숲·완충녹지 조성 등을 지원
지원규모	'24년기준 30개소 내외 - 개소당 평균 100억원, 국비 50%(농특), 지방비 50% ※ 최종 사업비 규모는 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된 후 농식품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확정
법적근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8조 및 제39조,「농어촌정비법」제4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4. 10. 25. 제출

□ 동 사업은 지구 선정단계부터 완료시까지 5개간 수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총 89개의 지구가 선정되었으며, '25년도에는 최초로 완공지역이 나올 예정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 선정현황】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21년	영동,괴산	-	-	-	상주	김해	4개소
'22년	영동,괴산, 제천,음성	부여, 청양,서천	김제, 남원, 장수	화순,장흥 해남,나주 강진,무안	상주(2),포항, 경주,영양	김해, 고성,산청, 합천(2)진주(2), 의령(2)함안,, 창녕,거창	33개소
'23년	청주,증평, 괴산,음성	서산, 아산,예산, 당진,보령	익산(2)	함평,나주, 곡성,완도, 담양(2),해남	상주,청송, 예천,포항	함안(3), 창원,밀양, 함양,사천, 거제,하동	31개소
'24.9.	괴산(2),청주	홍성	고창(2), 군산,순창	나주, 장흥, 여수, 해남	경산, 경주,울진	밀양,고성, 사천,합천, 진주,하동	21개소
계	13개소	9개소	9개소	17개소	13개소	28개소	89개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4. 10. 25 제출

□ 그런데 '23년 및 '24년 7월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지역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3년도의 경우 전체 실집행률은 60%, 24년은 7월기준 34.3%에 불과함.

특히 지역별로도 전남, 경북의 경우 '23년 기준 실집행이 각각 39.1%, 27.0.%로 매우 부진하였고, '24년 7월 기준으로도 각각 16.9%, 7.2%로 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도							2024.7월 기준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실집 행률 (B/A, %)
합계	71,667	17,917	89,584	53,797	35,762	24	60.1	61,971	35,762	97,733	33,563	34.3
충북	12,202	600	12,802	11,353	1,448	-	88.7	12,028	1,448	13,476	10,284	76.3
충남	8,080	943	9,023	7,209	1,815	-	79.9	4,437	1,815	6,252	1,286	20.6
전북	4,655	1,020	5,675	4,419	1,255	1	77.9	4,825	1,255	6,080	2,181	35.9
전남	10,772	2,814	13,586	5,310	8,276	-	39.1	8,858	8,276	17,134	2,899	16.9
경북	13,576	5,098	18,674	5,207	13,467	-	27.9	10,394	13,467	23,861	1,725	7.2
경남	22,382	7,442	29,824	20,299	9,500	23	68.1	21,429	9,500	30,929	15,188	49.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4. 10. 25. 제출

□ 한편, 사업완료가 임박한 '21년도 지정지구 및 '22년도 지정지구의 사업추진단계를 살펴보면,

'21년 지정된 영동, 괴산, 상주, 김해의 경우 '25년도가 사업 마지막 년도 임에도 불구하고 '24년 10월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된 단계로 당초 계획과 비교시 약 2년간의 일정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22년에 지정된 33개소의 경우에도 '24년 10월말 현재 3개년차가 마무리되어 감에도 약 14개소만 기본설계를 마무리 하였고, 나머지 19개소는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음.

이에 기한 내 공사발주,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 이전, 및 정비지구 재생 준공까지 완료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추진절차】

(2024.10.기준)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1~2년차</th><th>2~3년차</th><th>3~5년차</th><th>5년차</th></tr>
<tr><td>추진
절차</td><td>○ 지방비 확보
○ 소유자 동의 확보
○ 인허가 검토</td><td>○ 기본계획 수립</td><td>○시행계획 수립</td><td>○공사발주 및
계약 체결
○정비대상 시설
철거 및 이전
○정비지구
재생사업 추진</td><td>○공사 완료,
○사업준공 및
정산 보고</td></tr>
<tr><td>'21년
지정
(5년차)</td><td></td><td>김해,상주
영동,괴산</td><td></td><td>(정상추진시
예상단계)</td><td></td></tr>
<tr><td>'22년
지정
(4년차)</td><td>영동, 제천
부여, 청양
김제, 장수
화순, 해남,
나주, 강진
무안, 상주(2)
경주, 포항,
김해, 고성
진주, 의령</td><td>괴산, 음성
서천, 남원
장흥, 영양,
산청, 거창,
합천(2), 진주
의령, 함안, 창녕</td><td></td><td>(정상추진시
예상 단계)</td><td></td></tr>
</table>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4. 10. 25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특성상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대체부지 마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나, 이후 토지보상, 정비시설 철거 및 이전, 정비지구 재생사업은 신속히 추진가능하며,

사실상 토지보상에 전체사업비의 45%정도가 소요되는바, 토지보상 이후에는 실집행률 증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집행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실집행 실적을 고려해 사업지구별로 연부율 및 사업기간 조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2024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현황을 살펴보면, 1차 및 2차 공모과정에서 총 21개소가 선정되었음.

이는 당초 2024년도 신규지구 지정 목표치인 30개소에 미달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말까지 제3차 공모를 실시하여 추가 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음.

【2024년도 농촌공간정비 공모 일정 】

구분	공모일정	대상	신청 지자체	선정 지자체
'24년 농촌협약연계 신청		고창, 경주, 진주	6개소	3개소
1차 공모	신청(12.15.~3.11.),서면평가(3.12.~3.15.) 대면평가(3.19.~3.21.),결과발표(4.12.)	전 시·군·구	16개소	10개소
2차 공모	신청(7.5.~8.14.),서면평가(8.16.~26.) 대면평가(8.22.~23.),결과발표(8.27.)		총9개소	총 8개소
3차 공모	신청(8.22~10.25.), 서면평가(10.28.) 대면평가(10.29.)결과발표(10.31.)		**진행중**	**진행중**
계 (24 .10. 기준)			31개소	21개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4. 10. 25

이와 같은 공모 지연은 2024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발생해 왔음.

공모 지연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후속 사업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운영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4. 3. 29)으로 시장·군수 등에게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시행의무(제6조)가 부여되고 ‘농촌공간시행계획’ 수립(제10조), ‘농촌특화지구’ 지정(제13조), ‘농촌협약’ 체결(제16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해당 제도들과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확정된 사업 수요에 기반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25년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최종 완료사업지구가 나오게 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향후 신규지구 및 계속지구의 유형별·단계별 사업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9)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 :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및 관련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및 일정관리 노력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며, 추진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은 농촌소멸 극복의 방안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빈집활용 제고(①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②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 및 농촌 체험 기회확대(③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19억 8,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05].

【2025년도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	-	-	1,989	1,989	순증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	-	-	1,350	1,350	순증
-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	-	-	-	189	189	순증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	-	-	450	450	순증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24. 9. 9.

105)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4160-448)

(나) 검토의견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등록된 거주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인구를 의미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① '등록인구' ② '체류인구' 및 ③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생활인구의 구분 및 요건】

구 분		근 거[106]		개 념
생활인구	등록인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2조, 규정 제2조)	가목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체류인구		나목	통근 통학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월 1회이상 체류하고,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사람
	등록외국인		다목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0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군·구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군·구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군·구

이 중 ‘체류인구’는 통근 통학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월 1회이상 체류하고,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함.

’24년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함께 조사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4년 1월~3월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490만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2,500만명이며, 이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명으로 ‘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는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음.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규모(’24년 1/4분기)】

(단위: 천명, 배)



구 분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생활인구		22,749	25,869	3,120	13.7%	24,975	△894	△3.5%
	등록인구[107] (A)	4,908	4,900	△8	△0.2%	4,898	△2	0.0%
	체류인구(B)	17,841	20,969	3,128	17.5%	20,077	△892	△4.3%
배수(B/A)		3.6배	4.3배			4.1배		

※ 자료 :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4년 1월~3월 생활인구 산정」 발췌(행정안전부, 통계청)

농촌소멸이 가속화되어 고정된 등록인구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의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류인구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생활인구를 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같은 취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에 '생활인구유입지원사업'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보임.

(1)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관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의 정보(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를 구체화하고 매물정보로 등록·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간이 농촌 빈집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으로 예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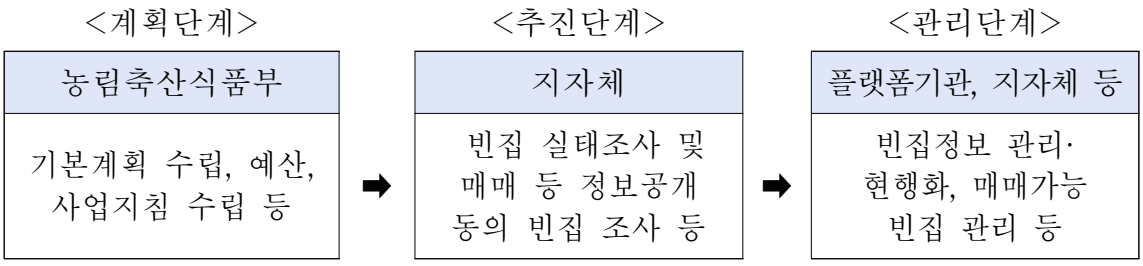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자치단체경상보조: 1,350백만원**
- (요구) 빈집 정보 조사를 지원 및 매물화 지원
- (산출) 실태조사 800백만원(20시·군x80백만원x국비50%)
매매가능 빈집 정보 제공 등 550백만원(2,200호x50만원x국비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4. 10. 10.

107) 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 + 외국인등록인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발굴된 약 2,200여호의 매매가능 빈집 정보를 공공홈페이지(예: 귀농귀촌그린대로, 부동산원홈페이지) 또는 민간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 등에 제공할 계획으로 설명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4. 10. 10.

□ 다만,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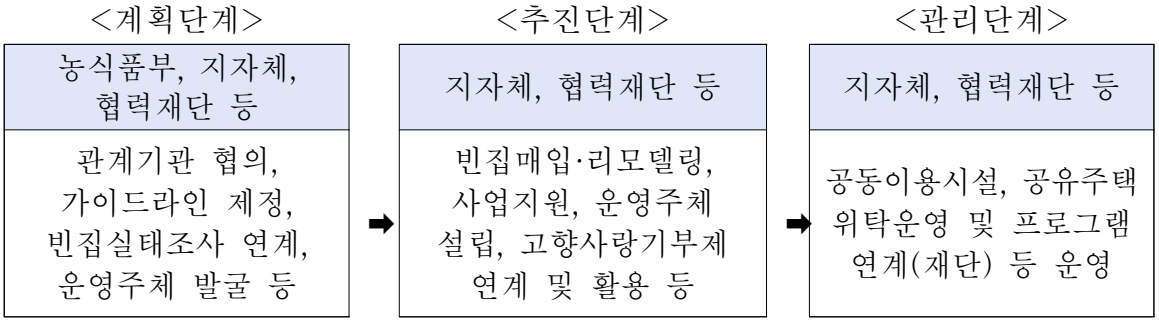
첫째, 동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빈집 매물 정보를 등록·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바, 빈집 소유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농촌 빈집 매물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

□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08] 등 민간이 협력하여 빈집우선정비구

역 등 빈집이 밀집된 농촌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빈집을 재생 또는 정비하고, 이를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4. 10. 10.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자치단체자본보조: 1,350백만원**

- (요구) 빈집 밀집지역을 구역단위로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 등에 제공(3개소)
- (산출) 3개소×21억(체류공간 조성 15억, 공동시설 조성 6억)×1년차10%×국비30%

※ 분담률: 국비 30%. 지방비 50%, 민간20%, ※ 연부율: (1년차) 10%, (2년차) 40%, (3년차) 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4. 10. 10.

이는 농촌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중인 빈집관련 사업을 고려할 때,

10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비영리재단으로 중소기업, 그리고 농어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및 ‘농촌 유휴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등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사업 대상지 선정시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기존 농식품부 수행 빈집정비사업과의 비교]

구분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대상지역	농촌지역	농촌지역	농촌지역	농촌지역
내용	농촌 빈집밀집지역 빈집 재생·정비로 생활인구를 위한 주거·창업·업무 공간 제공 ※ 빈집 재생 중심	농촌 재구조화에 필요한 난개발 요소 정비 등 ※ 일부 빈집 재생 포함	생활여건 열악한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공급 ※ 일부 빈집 재생 포함	농촌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으로 청년, 귀농·귀촌인의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 활용 ※ 유휴시설 재생 중심
2025년도 예산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8,900만원 (3개 시·군·구, 개소당 21억)	1,044억 5,000만원 (기존: 94개, 신규: 30개, 개소당 평균 100억)	1,050억 (기존: 246개, 신규: 105개, 개소당 평균 23억)	15억 5,500만원 (기존: 9개, 신규: 11개, 개소당 4.5억)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70, 지방비 30%	국비 50, 지방비 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4. 10. 10.

□ 한편, 동 사업과 유사한 취지와 내용의 사업(행정안전부의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등)이 타 부처에서도 이미 수행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련 조례[109]를 마련하고 활발하게 빈집활용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9) 「강진군 빈집 등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등 약 50여개의 조례가 제정 시행중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사업을 실시할 때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식창업지원사업,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내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동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타 부처 유사사업 비교】

구분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농식품부)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행정안전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국토교통부)
내용	농촌 빈집밀집지역의 빈집을 재생·정비하여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 지원	전국 빈집으로 야기되는 주거 경관, 치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및 지역 특화 연계사업 추진	인구감소 지역 내 존재하는 빈집, 폐시설,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 방문 유도 및 생활인구 유입 지원
범위	빈집우선정비구역 우선지원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인구감소지역
기간	2025~계속	2024~2026년(3개년)	2024~계속
대상	빈집	빈집	빈집, 폐시설, 지역자원 등
예시	· 빈집 리모델링하여 체류형 주택(생활인구 등 활용 임대주택) 공급 · 공동이용시설(공유주방 등) 개발	· 빈집철거(800호), 리모델링(20호) - 리모델링을 통한 연계사업*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지역특화사업 빈집 활용 청년 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	· 워케이션센터(공유오피스+숙소), 세컨드하우스, 양봉·양조 등 취미형 창업연계시설 등 · 농어촌체험·휴양활동 등 다양한 교류활동사업 발굴
2025년 예산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8,900만원 (3개 시·군·구, 개소당 21억)	100억원 (도시 500호*1,,000만원 농어촌1,000호*5백만원,)	155억원 (기존 9개, 신규 6개 개소당 100억)
	국비 30, 지방비 50, 민간 20%	국비70%, 지방비30%	국비 50%, 지방비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4. 10. 10.

(3)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류공간’, ’영농체험‘,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화한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도3촌’[110] 확산을 통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안)】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4. 10. 10.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3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별로 주거형 주택 20~25개동을 설치하고, 공동텃밭, 농기구 보관창고, 중앙정원, 운동시설 등 공용부대시설을 갖추며, 인근주민과의 체험·

110) 주중 4일은 도시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 3일은 농촌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을 병행하는 생활 방식

소통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자치단체자본보조: 450백만원**

- (요구) 농촌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거주공간+영농체험+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화한 시범단지 3개소 도입 예산 요구
- (산출) 3개소×30억(주거형 주택 20~25개동 설치)×1년차10%×국비50%

※ 분담률: 국비 50%. 지방비 50%, ※ 연부율: (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4. 10. 10.

□ 다만, 동 사업은 농촌지역에 일정기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인의 집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타 부처 유사사업 비교】

구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농식품부)	고향올래 (두 지역 살아보기) (행정안전부)	귀농인의 집 (농식품부)
목적	4도3촌 라이프 확산 및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체류·여가·체험·관광 등 패키지 지원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인 지역 체류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기간 임시 거처 지원
입주 요건 (대상자)	타 시·군 이외 지역 거주자	타 시·도지역 거주 도시민 (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체류형 복합 단지 시설 지원 (체류용 주택, 주거 일체형 텃밭, 공동텃밭, 중앙정원, 산책로, 쉼터 등)	거주공간, 체험프로그램 등 지원	유휴시설 리모델링 비용, 이동식 주택구입 비용,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운영 방식	임대기간 1년 이상	체험 참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임대기간 1년 범위 내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24. 10. 10.

□ 아울러, 동 사업의 수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주거공간과 공용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크게 '농촌청년보금자리사업'의 사업수행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농촌청년보금자리사업'의 경우 매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추경편성, 사업부지의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의 지연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빈번하게 지연이 발생하는 사업 중 하나임[111].

이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향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 공모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1) '농촌청년보금자리사업'은 23년 상임위 예산 예비검토, 23년 상임위 결산 예비검토, 24년 예결위 예산검토 등에서 실집행부진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23년 12월말 기준 실집행은 다음과 같음.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연차별 실집행현황】

(2023.12.기준)

구분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액 (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경남밀양	2022	800	800	800	800	800	-	800	22	778	-	2.75
	2023	1,600	1,600	1,600	1,600	1,600	778	2,378	93	2,285	-	5.81
강원삼척	2023	800	800	800	800	800	-	800	19	781	-	2.78
충남공주	2023	800	800	800	800	800	-	800	24	776	-	3.0
충북음성	2023	800	800	800	443	-	-	-	-	-	-	0
전북김제	2023	800	800	800	800	800	-	800	14	786	-	1.75

※ 자료 :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검토보고서 발췌

10) 푸드서비스 선진화 :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의 타부처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 편성금액 조정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 중 (E-9) 특화훈련 사업과 중복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외식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외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외식산업 활성화 및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2개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6억 7,200만원(25.7%)이 증액된 3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112].

【2025년도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푸드서비스 선진화	4,093	2,613	3,378	3,285	672	25.7
외식산업 활성화	1,043	763	763	1,360	597	78.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112)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푸드서비스 선진화 (2837-370)

(나) 검토의견

(1) 예산편성안 관련 검토

□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에 따른 특화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1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민간경상보조: 1,360백만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요구)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에 따른 특화훈련 지원 예산 요구
- (산출) 외식산업 교육 1,360백만원(17천명×160천원×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당초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대상은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에서 시작되었으나,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면서,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고용허가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되었음(2023.11.27.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시범사업 개요】

구분	23.11.	24.7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전국
업종	한식	한식 +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업력	5년(5인 이상), 7년(5인 미만) 이상	5년 이상
직종	주방보조	
사전 교육	없음	고용 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사전교육 제공 * 음식점업 고용허가 旣신청 사업주도 수강 가능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에 대응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조기 적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들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에게 음식점업 종사에 필요한 직무·한국문화·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화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됨.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조선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취지의 'E-9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한식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안에도 해당 사업 예산을 236억원 편성하였고, 2024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수행 외국인 근로자 특화훈련 개요】

□ **훈련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

□ **지원규모** : **2,800명**(일반제조업 1,800명, 이외 업종 1,000명)

□ **훈련업종** : 'E-9 고용허용 업종' 중 **제조업**(01~34), **호텔·콘도업**(55101, 55103, 55019), **한식 음식점업**(5611), **광업**(06,07)에 한함

□ **훈련기간** : 업종에 따라 1~8주 내 자율적으로 편성(최소 1주 단위 편성)

□ **훈련내용**: ①한국어 및 문화, ②산업안전, ③직무기초 교육 실시

□ **훈련시간** : 훈련기간(1~3주, 4주 이상)에 따라 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

구분	1~3주 훈련 (일반유급휴가훈련)	4주 이상 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기본요건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계속하여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최대·최소 훈련시간	(최소) 4시간/일 (최대) 8시간/일	(최소) 6시간/일 (최대) 8시간/일

※ 자료 : 산업인력공단, 24.10.10.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에 편성된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E-9 특화훈련 사업과 ① 목적 및 대상이 동일한 반면,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훈련비만을 지급하는데 반해 고용노동부는 훈련비, 숙식비,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지원하고 있어 그 지원범위가 넓다는 점, ③ 고용노동부 사업의 경우에도 음식점업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으로 보임.

【유사·중복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코드)		푸드서비스선진화 (2837-370)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1152-350)
2025년예산안		13.6억원	236억원
교육 대상		(E-9) 특화훈련 (음식점업)	(E-9) 특화훈련 (음식점업 포함 전체 업종)
지원내역		훈련비 지원	훈련비, 숙식비 임금지원
	교육비	17천명×160천원×50%	NCS[113] 기준단가의 200% * 외국인에 대한 통역, 교재, 보조인력 활용비 등을 감안, 훈련비 우대
	숙식비	-	식비(1일 5,000원), 숙식비(1일 14,000원) * 월 33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훈련기관이 부담
	임금지원	-	최저임금 150% 내 비용 지원 (단, 4주 훈련은 주휴수당 및 추가임금 지원)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 또한 외국인 근로자 특화교육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와 송출국가별 언어·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 법령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예산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특화훈련 지원계획 및 예산확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중복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산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3)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표준화 한 것

(2) 조정안 관련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중복 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희망 사업주 사전 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 사후 관리비용으로 7억 700만원을 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안 조정 요청 세부내역】

○ 민간경상보조: 707백만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개 외식협회)

-(요구) ① E-9 고용허가 희망 사업주 사전교육

ⅰ) 교육콘텐츠개발(한국농수산유통공사), ⅱ) 교육운영

②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음식점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산출) ①(교육콘텐츠 개발 1식 x 200백만원 x 100%) + (교육운영 3개 외식협회 x 50백만원 x 100%)=**350백만원**

② 현장점검 1,785개소 x 2명 x 0.1백만원 x 100%=**357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 첫째, 사업주 사전교육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현재 예산반영 없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교육동영상을 제작하고, 음식점협회[114]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강의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주 사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면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 3억 5,000만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114)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업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② '24년도 온라인동영상 사전교육의 경우도 이수한 사업자가 9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면 사전교육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 대면 사전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선행한 뒤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4년 고용허가 사업주 사전 현황】

('24년 9월말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수행주체	실적
사업주 사전교육	**교육콘텐츠 제작** ①고용허가제 이해, ②바람직한 고용관계(성폭력·성희롱 예방 등), ③노무관리(임금체불 예방 등), ④산재 예방, ⑤출입국관리(불법체류 방지 등)	농식품부	
	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게시,** 사업주의 신청받아 **무료시청** 조치	음식점협회	95명 이수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 둘째,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도에는 음식점협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4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장점검 현황】

('24년 9월말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수행주체	실적
현장점검	협회 **회원사** 대상 **현장점검** 실시 ①근무여건(숙소, 급여, 근로조건 등) 및 외국인 고용법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안내 ②고용허가제 관련 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 수렴	음식점협회	26개소 실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현장점검에 대한 예산으로 총 1,785개소 기준 3억 5,700만원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4년 10월 말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 수가 217개소, 입국한 사업장 기준 30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음식점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조정안에 따른 예산이 실소요 이상으로 과다편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정예산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 및 검토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집행관리 및 국비보조 취득재산 관리 철저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사업 예산을 집행가능 금액을 고려해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재산의 구분등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은 전 세계 한식 붐 조성, 한식의 미래 성장 동력 강화, 지역 음식 기반 한식 산업 육성 등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① 한식진흥 기반의 조성 ② K-미식 붐 활성화 ③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④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예산은 2024년 예산 대비 61억 3,800만원 증액(58.5%)된 166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11,373	10,493	9,943	16,631	6,138	58.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나) 검토의견

(1)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사업 집행관리 철저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사업은 향토음식 전수자 고령화, 지역 유대성 약화 등 향토음식 소멸 요인에 대응하고, 한식 원형 연구 및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한식 기반 강화를 위한 한식진흥원의 분원으로 '향토음식진흥센터'[115]를 전남 목포에 건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46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	550	0	4,600	4,050	736.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115)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사업(안)】**

○ (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 예정 부지 : 목포시 항동 2-4(舊 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 (건물조성(안)) 4층 건물, 전용면적 1,320㎡(각 층별 330㎡,)
 -(1층) 향토음식전시관 : 향토식품 홍보 및 전시
 -(2층) 사무 및 연구시설 : 사무실, 회의실, 향토음식 연구실, 부대 설비구축 공간 등
 -(3층) 향토음식체험관 : 향토음식 체험을 위한 쿠킹클래스 등 관련시설
 -(4층) 교육실 및 기록보관실 : 교육 공간시설, DB구축 및 보관을 위한 아카이브 자료실 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사업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민간자본보조(320-07) : 4,600백만원

: ('24) 550백만원 → ('25요구) 4,600백만원, 4,050백만원 증액

- (요구)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소요 시공비 등
- (산출) 부지매입비 2,000백만원 / 건축비 2,600백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사업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4년	'25년	'26년	비고
합 계			12,500	550	5,600	6,350	
국비	소 계		10,500	550	4,600	5,350	
	설계비		500	500	-	-	기획, 기본·실시설계 등
	감리비		50	50	-	-	설계 감리
	건축공사		6,175	-	2,600	3,575	건설시공
	공간조성	소계	1,775			1,775	
		체험공간	500			500	
		전시관	800			800	상설·기획 전시관 등
		장비 및 집기	340			340	
		전산시스템	135			135	
	부지 매입비		2,000		2,000		
지방비	소 계		2,000	-	1,000	1,000	
	건축공사		2,000	-	1,000	1,000	건설시공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동 사업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10월 기준 편성된 예산 5억 5,0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그 중 1,600만원만 실집행 된 상태임.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교부액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24. 10.	550	550	-	-	100	550	16	2.9%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4.10.28 제출

□ 이와 같은 사업 진척 지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사업으로 선정된 바, 사업계획 보완 이후 '24. 8. 20. 사업비 배정이 승인되었기 때문으로, '24. 10.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현재 기본설계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됨.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116]는 최적의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때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

116)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3조(설계기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이하 "설계"라 한다)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사의 규모와 특성과 발주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별표 1의 공종별 설계 기간을 참고할 수 있다.
[별표 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건축	4.5	7	9.5	7	7.5	8

비고 3.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

여하도록 규정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공종별 설계기간을 제시하고 있음.

해당 기준에 따라 100억원~500억원 수준의 건축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설계에 4.5개월, 실시설계에 7개월(기본 및 실시설계를 함께 할 경우에는 9개월~11개월)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유사 규모(순 건축비 82억원, 설계·감리·공간조성비 포함 105억원 수준)인 동 사업 역시 향후 해당 과정 진척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토음식진흥센터의 기본·실시설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설계 이후 건축공사 및 공간조성 절차에서도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집행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실집행 실적을 고려한 예산 규모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재산의 구분등기 등 관리 철저 필요

□ 동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 및 건축공사비를 모두 민간자본보조(320-07)로 편성하고 있음.

민간자본보조[117]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117) 「2025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393P

(민간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형성하게 되는 “향토음식진흥센터”는 국유재산이 아닌, 한식진흥원의 재산이 됨.

□ 이에, 국가가 지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한식진흥원 재산에 대하여 국가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완공 이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118]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따른 ‘부기등기[119]’를 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은 사실’과 ‘그로 인한 처분 제한 및 사용목적 제한이 있다는 내용’ 등을 등기부에 명시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농식품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119) 기존의 등기에 추가적인 번호를 붙여서 기존 주등기의 순위 및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등기 방식. 단순한 추가 정보 제공이 아니라 독립적인 효력을 갖는 등기로서, 새로운 사항이 기존 등기와 동일하거나 연장되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사용

12)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사업 성과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 현황을 보면, 2022년을 기점으로 신규 인증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인증 축종 7종 중에서 산란계와 육계가 전체 인증농가 473개소 중 85.8%인 40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타 축종의 경우 인증 건수가 미미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종별 인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동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활성화'사업은 ① 인증 농가 대상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지원, ② 소비자 대상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홍보, ③ 인증축산물 판로 지원, ④ 인증신청농가 대상 축종별 인증가이드라인 제작·지원 등을 통해 동물복지 축산인증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3억 6,100만원(△45%)이 감액된 4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120]

【 2025년도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활성화	999	802	473	441	△361	△45.0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2024. 10. 21.) 제출

120)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6240-32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을 통해 2023년 24개 농가가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았으며, 35개 농가가 신규로 인증(자진반납 7개소)을 받고, 총 1,019개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교육(대면교육 115명, 온라인교육 904명)을 실시하였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보호법」 제59조제1항[121]에 따라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122]

그런데, 최근 5년간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2

121) **「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22) (2012년) 산란계,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 (2016년) 오리

년을 기점으로 신규 인증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인증 축종 7종 중에서 산란계와 육계가 전체 인증농가 473개소 중 85.8%인 40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양돈, 젖소, 한우의 경우 전체 농가 대비 인증비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육우와 오리, 염소에 대한 인증농가는 전무한 상황임.

【 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 현황 】

(단위: 개소, %)

연도		2020 이전	2021	2022	2023	2024. 9월말
산란계	인증(신규)	24	22	33	18	6
	인증(누적)	168	190	223	241	247
	전체농가	936	946	937	944	965
	비율	17.94%	20.08%	23.80%	25.53%	25.60%
육계	인증(신규)	8	34	14	8	6
	인증(누적)	97	131	145	153	159
	전체농가	1,597	1,584	1,454	1,546	1,832
	비율	6.07%	8.27%	9.97%	9.89%	8.68
양돈	인증(신규)	1	(자진반납) -3	2	4	3
	인증(누적)	19	16	18	22	25
	전체농가	6,078	5,942	5,695	5,634	5,560
	비율	0.31%	0.27%	0.31%	0.39%	0.45%
젖소	인증(신규)	2	13	5	(자진반납) -2	1
	인증(누적)	13	26	31	29	30
	전체농가	6,106	6,105	5,888	5,553	5,483
	비율	0.21%	0.42%	0.52%	0.52%	0.54%
한우	인증(신규)	-	1	5	0	6
	인증(누적)	-	1	6	6	12
	전체농가	88,994	89,824	87,852	83,627	79,667
	비율	0%	0.001%	0.006%	0.007%	0.015
전체	인증(신규)	35	67	59	28	22
	인증(누적)	297	364	423	451	473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2024. 10. 21.) 제출

□ 이와 같이 신규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과 산란계와 육계를 제외한 다른 축종의 경우 인증 건수가 매우 미미하거나 전무하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 사업 목적이 원활히 달성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신규 인증 저조 사유 등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원인 및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검토함으로써 축종별 인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동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13) 종자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중복 편성 예산 감액 필요

○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 관련하여 국립종자원의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종자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은 국내 채소종자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채종비용을 지원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종자 유통조사, 종자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민간 연구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 생산·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4억 8,700만원(4.4%)이 증액된 11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123)]

【 2025년도 종자산업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종자산업활성화지원	11,725	11,045	1,651	11,532	487	4.4
종자유통조사	4,730	1,363	520	2,514	1,151	84.4

자료: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2024. 10. 14.) 제출

123)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종자산업활성화지원(6432-304)

(나) 검토의견

□ 종자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종자유통조사 사업은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용 LMO[124] 안전관리 및 과수화상병[125] 확산 방지를 위한 묘목 생산업체 예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보다 11억 5,100만원(84.4%)이 증액된 2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중 자산취득비 부분을 살펴보면, '종자 생산판매 이력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7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종자산업활성화지원 사업 2025년도 예산안(자산취득비) 산출내역 】

○ **자산취득비(430-01) : 904,000천원**

가. 특사경 조사실 장비 구입(11,000천원)

・특사경조사실 장비 구입 : 1,000,000원×11개부서=11,000천원

나.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용 PCR 기기 구입(30,000천원)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용 PCR 30,000천원×대=30,000천원

다. LMO 검정 기기 구입(132,000천원)

・LMO 검정 기기 구입: 12종x11,000천원=132,000천원

라.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731,000천원)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장비 1식*731,000천원=731,000천원

※자료: 국립종자원 사업설명자료 발췌

124) Living Modified Organisms(유전자 변형 생물체)

125) 사과, 배 및 장미과에 속한 일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성 병해로,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

□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 예산은 과수무병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과수 묘목 생산·판매 과정을 기록·보관하고 그 이력을 추적·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26]을 살펴보면,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127]에 이전된(될) 정보시스템 노후장비[128] 교체, ② 신규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의 증설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129]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안에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고[130],

신규 HW에 탑재되는 개발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 기타 SW[131] 구입 및 AP개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26)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p. 46)

127)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구축관리와 보호·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

128)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장비

129) DBMS, Web서버, WAS, 서버보안, DB 보안, DB 접근제어, DB 모니터링, 백업 SW, 관제 SW, WAS 모니터링, HA용 SW

130)「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p. 46)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정보화사업 또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관서가 HW구축과 AP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중앙관서의 장이 협의한 경우에만 중앙관서에서 요구 가능

131) 시스템 SW 이외의 모든 SW

그런데, 국립종자원에서 종자산업활성화지원의 내역사업인 종자유통조사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한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 예산'은 상기 예산안 편성 지침 상의 '신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HW 및 시스템 SW 구입 예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국립종자원의 확인 결과 「'25년 신규 전산장비 구축 예산편성 절차('24.1.2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라 신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국정자원 예산으로 통합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예산안에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 예산 또한 편성된 것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국립종자원의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 예산과 중복 편성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상기 자산취득비에는 ① DB 보안, ② 개인정보 보안, ③ 표현기능 툴(Tool)과 같이 상기 '종자 생

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타 SW’의 구입비 금액 1억 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SW’의 구입비는 상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당초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관련 자산 취득비 7억 3,100만원 중 ‘기타 SW’의 구입비 금액 1억 7,500만원을 제외한 5억 5,6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종사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예산 감액 관련 검토 】

(단위: 백만원)

구 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종자원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비	425	556(감액 필요)
기타 sw 구입비	미편성	175(유지)

자료: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2024. 10. 14.) 제출자료 재구성

【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 필요 기타 SW 산출내역 】

(단위: 천원)

분류	구분		기능	소요액	산출내역	비고
기타 S/W	DB 보안	DB 암호화 (외부망)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암호화	70,000	16코어 2대 × 35,00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DB 암호화 (내부망)		30,000	4코어 2대 × 15,000	
		소계		100,000		
	개인정보 보안	개인정보접속기록추적	개인정보 접근 이력 기록	40,000	4대 × 10,000	
	표현기능 툴(tool)	OS (오즈 리포트툴)	양식에 맞추어 출력하는 기능	35,000	4코어 2대 × 17,500	문서 출력 등 행정작업 불가
	총액			175,000	4종 10대	

자료: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2024. 10. 14.) 제출

14) 연구개발(R&D)사업 공통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R&D)사업 관련 미흡한 관리·감독 개선 필요

○ 연구개발(R&D)사업 관련 환수 처분액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환수된 실적은 총액 9억 6,000만원 중 3억 100만원만 환수되어 처분 총액의 약 70%에 이르는 6억 5,900만원의 미환수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미환수 금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그동안의 관리·감독에 미흡했던 측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미환수 금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R&D 예산안은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2024년도 보다 107억 4,700만원이 증가한 2,266억 6,900만원의 예산안[132]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9개 사업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할 예정임.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R&D 사업	277,858	215,922	196,081	226,669	10,747	5.0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예산실(2024. 10. 22.) 제출

132) 검역본부 인건비(9%) 등 81억 8,9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안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행 예정 2025년 R&D 세부사업명 등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유형	사업기간	예산액	
				2024	2025(안)
1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 기술개발(R&D)	출연	2021~2025	5,670	3,762
2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R&D)	출연	2010~2025 일몰혁신	37,611	40,880
3	기술사업화지원(R&D)	출연	2008~2025 일몰혁신	20,516	25,573
4	반려동물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R&D)	출연	2022~2026	7,462	4,501
5	친환경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R&D)	출연	2022~2026	8,809	6,750
6	스마트팜다부처 패키지혁신 기술개발(R&D)	출연	2021~2027	15,779	16,636
7	국제협력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R&D)	출연	2023~2027	5,288	6,938
8	밭농업기계화 촉진 기술개발(R&D)	출연	2023~2027	5,325	5,325
9	농식품과학기술 융합형연구인력양성(R&D)	출연	2024~2028	4,500	6,000
10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 기술개발(R&D)	출연	2024~2028	5,470	8,098
11	농생명마이크로 바이옴혁신기술 기반구축(R&D)	출연	2024~2028	1,500	3,050
12	(신규)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R&D)	출연	2025~2029	-	6,150
13	(신규)노지스마트농업 활용 모델개발(R&D)	출연	2025~2028	-	6,750
14	(신규)경제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국산화 기술개발(R&D)	출연	2025~2029	-	6,375
15	(신규)첨단 정밀육종 활용 고부가 산업화 기술개발(R&D)	출연	2025~2027	-	6,375
16	(신규)기후변화 대응 지능형 농업기반 관리 기술개발(R&D)	출연	2025~2029	-	4,312
17	(신규)자원순환형 그린바이오 기술개발(R&D)	출연	2025~2029	-	1,500
1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출연	2009~계속	11,411	11,531
1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R&D)	출연	2022~계속	6,028	6,187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예산실(2024. 10. 22.) 제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위탁받은 국가 R&D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024년보다 1억 2,000만원(1.1%)이 증액된 11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12,124	11,411	10,419	11,531	120	1.1
인건비	7,444	7,630	6,638	7,989	359	4.7
경상운영비	1,966	1,888	1,888	1,888	-	-
기관고유사업비	2,714	1,893	1,893	1,654	△239	△12.6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예산실(2024. 10. 22.) 제출

(나) 검토의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133] 제32조에서는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②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③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의 사유[134] 발생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135]하고 있음.

---

13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과학기술기본법」과 부처별 개별 규정을 근거로 추진되어 오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하에 부처별 규정을 통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음.

134) 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규율한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 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②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5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할 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과제의 제재처분은 연구수행 당시의 규정을 따라 처분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중인 현재에도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처분되는 경우가 존재함.

13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

□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8조에서는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①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② 그 기간 내에도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136]하고 있음.

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3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부에서 위탁받은 국가 R&D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상기 환수처분액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액의 징수 또한 담당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3년간 연구개발과제(R&D)에 대한 환수처분 등에 대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후 환수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환수처분 등의 총액 9억 6,000만원 중 3억 100만원만 환수되어 처분 총액의 약 70%에 이르는 6억 5,900만원의 미환수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중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액 1건(200백만원)은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이며, 그 외 미환수액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이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규율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137]에 따른 환수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혁신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그 밖에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 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를 따른다.

137) **「과학기술기본법」 (2020. 6. 9. 삭제)**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처분액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R&D) 환수처분 등 미환수율(B) 】

(단위: 백만원)

처분연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금액(A)	환수액	미환수액(B)	미환수율(B/A)
2021	390	245	145	37.2%
2022	360	38	322	89.4%
2023	210	18	192	91.4%
합계	**960**	**301**	**659**	**68.6%**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예산실(2024. 10. 22.) 제출

□ 상기 환수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 1. 1.) 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규율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②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 사후적으로라도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환수처분 등의 미환수율이 70%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를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13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연구개발 사업 대부분[139]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미환수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2021년도 환수 처분에 대한 미환수율은 37.2%를 나타내고 있는바, 2022년도 및 2023년도의 환수 처분 미환수 금액에 대하여도 적

13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미환수율 개선을 위해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선정시 재무안정성 검토('23~),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의무화('24~) 등을 추진하였으나, 기존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최근 3년간 환수처분 등의 미환수율이 68.6%에 이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39) 세부사업 기준 20개 중 19개

극적인 관리를 통해 조속히 환수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 징벌적 성격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여 연구개발 과제 수행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연구과제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취지임.

그런데, 최근 5년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단 1건밖에 없는 반면, 환수처분은 29건임.

【 최근 5년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건수 현황(A) 】

(단위: 건)

처분 연도	과제 수	구분	제재 사유
2023*	1	환수(1)	부정행위(1)
2022	15	환수(14), **제재부가금(1)**	협약 위반**(14) **연구결과 불량(1)**
2021	5	환수(5)	연구수행 포기(3), 연구결과 불량(2)
2020	6	환수(6)	연구결과 불량(5), 사용용도 위반(1)
2019	3	환수(3)	사용용도 위반(2), 부정행위(1)
합계	30	환수(29건), 제재부가금(1건)	협약위반(14), 연구결과 불량(8), 사용용도 위반(3), 부정행위(2), 연구수행 포기(3)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예산실(2024. 10. 22.) 제출

* 2023년도 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처분하였고, 나머지 29건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처분함

**협약 위반 : 회수금 미납(11), 연구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3) 등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상기 표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과제 중 2023년을 제외한 모든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 1. 1.) 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규율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이었고,

「과학기술기본법」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는 다르게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한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제재부가금 부과 건수가 적었다는 입장임[140].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유 종전법 및 현행법 비교 】

구분	(종전) 「과학기술법」상 사유	(현행) 「연구개발혁신법」상 사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과정·결과 불량, 현약불이행 및 변경·중단, 위조·변조·표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성과소유 위반, 보안대책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신청·수행, 조사방행행위,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생명윤리 위반, 연구실 안전 위반, 연구수행 포기,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

※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예산실(2024. 10. 22.) 제출

140)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삭제)**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상기 표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여러 부적절한 사유들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있어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① 향후 연구과제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서 미환수 금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불량한 경우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는 경우 등 동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부적절한 사유를 방지하는 한편,

③ 그동안 관리·감독에 미흡했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미환수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운영 개선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명확성 제고 필요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 참여농가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참여 농가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임의로 해당 예산을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환경관리원에 배정하는 행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과도한 집행 재량의 소지가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환경관리원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은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등을 통하여 저탄소 농업 확산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21억 8,300만원(△34.9%)이 감액된 40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141]

【2025년도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저탄소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5,821	6,251	6,251	4,068	△2,183	△34.9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1,581	2,632	2,632	3,549	917	34.8

141)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2240-312)

(나) 검토의견

(1)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운영 개선 필요

□ 내역사업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하여 저탄소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로 구분됨.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142]을 취득한 농가 중, 저탄소 농산물 인증 대상 품목(65개)[143]을 저탄소 농업 기술[144]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농가가 인증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증 심사 및 심의를 실시하여, 기준을 통과한 농가에게 유효기간 2년(취득일 기준, 갱신가능)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저탄소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기준 10,286호의 인증유효농가가 존재함.

---

142) 각 인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유기농: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GAP(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단계까지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110개 항목의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인증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43) 식량작물(벼, 옥수수, 감자 등 7개품목), 채소(배추, 당근, 호박 등 27개 품목), 과수(사과, 배, 포도 등 15개 품목), 특용약용작물(인삼, 녹차, 새송이버섯 등 9개 품목), 임산물(밤, 대추, 참나물 등 7개 품목)

144) 비료절감기술, 농기계에너지절감, 난방에너지절감, 논의 물관리(논물로 인한 유기물 분해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목적), 농자재 재활용 등 기술이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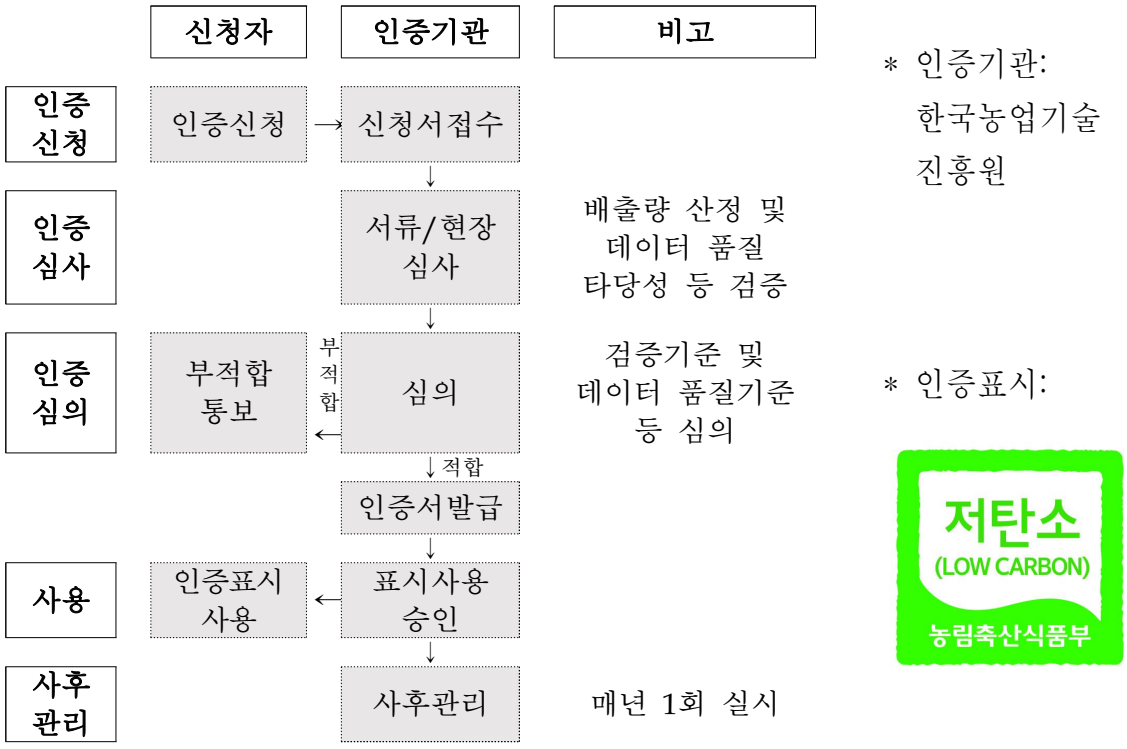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사업 참여 농가 수 】

(단위 : 호)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신규 인증농가	1,122	1,220	2,848	1,520	1,659
기존 인증유효농가	3,578	4,533	5,250	7,565	8,627
총계	4,700	5,753	8,098	9,085	10,28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사업 진행 절차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①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와의 연결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② 소비자는 해당 농산물을 그린카드[145]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 금

액의 15%를 에코머니포인트로 적립받게 됨에 따라 점차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음.

□ 다만, 동 제도의 취지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운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참여 농가 선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제도는 신규 참여농가 선정에 있어,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운영기관인 진흥원에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면, 진흥원이 이를 모집규모만큼 선착순으로 접수한 후, 참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품목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으면, 얼마나 적은지와는 무관하게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바,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농가가 더 늦게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인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145) 녹색소비,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하는 카드. 적립된 에코머니 포인트는 현금 전환, 이동통신 요금 결제, 대중교통 요금 결제, 친환경 기부, 상품권 교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선착순 방식의 신규 참여농가 선정에 따른 문제는 기존 인증유효농가에 대한 인증 갱신 시에도 발생하는데, 현행 제도는 인증 갱신을 신청한 기존 인증유효농가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진행하여, 그 인증기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인증을 갱신해주고 있는바,

일단 선착순 접수를 통해 신규 참여농가로 선정된 후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의 배출량을 유지하기만 하면,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농가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한정된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제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참여농가 선정 및 기존 인증 유효농가 갱신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사업의 참여 농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사업은 매년 신규로 참여농가를 선정하고 있으나, 참여 희망 농가에 비하여 신규 선정농가의 수가 많지 않아, 인증 조건을 만족함에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8월 기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유효농가 수는 10,286호로서, 사업의 참여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사전인증(유기농, 무농

약 및 GAP) 농가의 수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 확대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 유기농, 무농약 및 GAP 인증 농가 수('24. 8. 기준) 】

(단위 : 호)

구분	유기농	무농약	GAP
인증농가 수	23,584	24,219	123,53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개별 농가 수준에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가치 제고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는 농업 분야 탄소배출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동 사업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이기도 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인증 수요에 맞추어 신규 선정 농가를 확대함으로써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명확성 제고 필요

□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심사·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②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로 구분됨.

□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별로 예산안이 구분 및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 농가 건수 * 1건당 발생 비용[146] * 국비 100%의 내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5년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예산안 산출근거 】

(217개 농가 × 5.9백만원 × 국비 100%(1,279백만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신규 1명(인건비 34백만원, 6개월분) = 1,313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2024. 10. 25.) 제출

146) 배출량 산정 컨설팅·현장심사 등 인증 희망 농가 지원, 인증지침 검토 및 인증 적부 심의를 위한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농가·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예산안의 산출근거 또한 상기와 유사한 형태로 편성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축산물인증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의 2024년도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임의로 구분하여 배정하였다는 입장임.

【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예산안 산출근거 】

150개 농가 × 5.9백만원 × 국비 100% = 885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2024. 10. 25.) 제출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은 예산을 성립시키는 요소이고 국가기관에 대하여 시기·목적·금액 등을 한정하여 재정행위를 구속하는 준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임의로 해당 예산을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환경관리원에 각각 배정하는 행위는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과도한 집행재량의 소지가 있는바,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인증제 사업 예산 편성 시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환경관리원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상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 One-welfare Valley 조성 내역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9조 및 예산의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은 수출유망국 시장조사 및 전파,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48억 5,000만원(263.6%)이 증액된 6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147].

【2025년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	1,840	1,778	6,690	4,850	263.6
One-welfare Valley 조성	-	250	188	5,100	4,850	1940.0

147)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3741-347)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4년간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실증, R&D 등이 집적화된 종합인프라인 One-welfare Valley를 충청남도 홍성군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에 공모를 거쳐 충청남도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 R&D 등이 집적화된 종합인프라를 조성하여 기술 산업화 활성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지원
□ (사업시행주체/사업시행방법) 지자체(충청남도)/보조사업
□ (사업 내용) 반려동물 기호 등을 반영한 제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실증 종합인프라(One-welfare Valley) 조성
□ (조성 기간) 4년('24 ~ '27)
* (사업일정)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24.上) → 사업 기본계획 수립('24.下) →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25) → 완공 및 실증·연구 장비 구축('27)
□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재정법」 제39조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48]

□ 동 내역사업은 총사업비가 400억원인 건축사업으로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에 대하여 2024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25년 예산안에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50억원은 기본·실시설계비(6억원)와 공사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44억원)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한 회계연도에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48)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비목	2024년		2025년	
전체	250		5,100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250	기본계획수립: 250	5,000	기본・실시설계비: 600 공사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400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	-	100	전문가협의체 등 운영비: 1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2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며, 동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동년 11월부터 시공단계를 진행할 계획으로서, 계약 발주에 필요한 선금과 초기 공사비용을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 다만, 「국가재정법」 제39조는 명시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에 대하여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성 측면을 살펴보면, 연내에 기본・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한 이후 시공단계 예산인 공사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건축사업의 경우 기본설계에는 4.5개월, 실시설계에는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실시설계 기간의 1.3~1.5배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바,[149]

동 내역사업의 경우 기본·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그 발주 및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9~11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설령 연내에 시공단계를 진행하려 하더라도 동절기에 해당하여 공사가 진척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50]

위와 같이 연내에 시공단계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편성된 공사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약상대방에게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임.

149)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표 1]

15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One-welfare Valley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단계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7)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지원: 연내 폐업자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연내 미지급 가능성 고려 필요 등

○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지원 사업은 연내 폐업자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연내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개식용 종식의 실현을 위하여 개사육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지원 사업은 개식용 관련 업계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하여 이행촉진지원금·시설 철거비용·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연구용역·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544억 1,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151]

【2025년도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지원	-	-	-	54,413	54,413	순증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	-	-	48,597	48,597	순증

151)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개식용종식 폐업, 전업지원(3741-400)

□ 개식용 종식 폐업, 전업지원 사업은 국가가 2024년 2월 제정되어 8월 7일 부로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152]의 책무와 동법 제11조 및 제12조[153]의 폐업, 전업 지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법 제10조[154]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① 개사육 농장주와 ② 개식용 도축업자에게 폐업 또는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임.[155]

---

152)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53)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보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5)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 중 개식용 유통상인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함

(나) 검토의견

(1) 연내 폐업자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연내 미지급 가능성 고려 필요

□ 내역사업인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사업은 개식용 종식 이행과정에서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 철거비용,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사업임.

【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사업 산출 근거 】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28,097백만원

○ 산출식: 28,097백만원 = 1식 × 56,194백만원 × 국비 50%

□ 철거비, 시설물 잔존가액, 감정평가비: 19,000백만원

○ 철거비: 3,500백만원 = 35백만원 × 200농가 × 국비 50%

○ 시설물 잔존가액: 15,250백만원 = 61백만원 × 500농가 × 국비 50%

○ 감정평가비: 250백만원 = 100백만원 × 500농가 × 국비 50%

□ 잔여견 보호관리: 1,500백만원

○ 산출식: 1,500백만원 = 30만원 × 1만두 × 국비 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농장주의 자발적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 농장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9월 26일에 발표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에서 개식용 종식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로서 제시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개사육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업 시기를 여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마리당 22.5~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차등 인센티브 구조임.[156]

【 개사육 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구간별 지원단가 】

구분	1구간[157]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폐업시기	'24. 8. 7. ~'25. 2. 6. (6개월)	'25. 2. 7. ~'25. 8. 6. (6개월)	'25. 8. 7. ~'25. 12. 21. (4개월 15일)	'25. 12. 21. ~'26. 5. 6. (4개월 15일)	'26. 5. 7. ~'26. 9. 21. (4개월 15일)	'26. 9. 22. ~'27. 2. 6. (4개월 15일)
마리당 지원단가	60만원	52.5만원	45만원	37.5만원	30만원	22.5만원
지원단가 선정기준	2년분	1.75년분	1.5년분	1.25년분	1년분	0.75년분

주1) 다만, ① 「농지법」 위반(농지전용 미신고 등) 확인 시 50% 감액,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배출시설 미신고) 확인 시 지급 제외,
③ 「건축법」 위반(시설물 무허가·미신고) 확인 시 지급 제외
주2)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사육면적에 따라 환산한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설정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2025년도 예산으로 28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6개의 구간 중 1구간 및 2구간에 폐업하는 농장주들에 대한 지원금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히 전체 농가(1,537농가) 중 12%가 1구간, 18%가 2구간에 각각 폐업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산출되어 있음.

156)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2024. 9. 26.

157) 「개식용종식법」 시행일('24. 8. 7.)을 기준으로 구간이 설정되었으며, 「개식용종식법」 공포일('24. 2. 6.) 이후 시행일 이전까지 폐업한 농가도 1구간에 포함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임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산출 근거 】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28,097백만원 = 합법농가 대상 18,731백만원 +
농지법 위반농가 대상 9,366백만원

○ 합법농가 대상 18,731백만원 = 45만두 * 1년차 폐업비율 30% *
합법농가 비율 50% *
[60만원*0.4+52.5만원*0.6] * 국비 50%

○ 농지법 위반농가 대상 9,366백만원 = 45만두 * 1년차 폐업비율 30% *
농지법 위반농가 비율 50% *
[60만원*0.4+52.5만원*0.6] *
국비 50% * 조정률 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2025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6개 구간 중 1구간부터 4구간까지 총 4개 구간이 걸쳐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구간과 2구간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의 소요만 반영한바,

예상한 바와 같이 1구간에 12%, 2구간에 18% 농가만 폐업하더라도 2025년도 예산이 소진되어, 2025년 8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폐업한 농가는 폐업한 해에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농장주의 폐업이행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예상대로 농장주의 폐업이 이행되는 경우 2025년 8월 7일 이후 폐업자가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연내에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 개선 필요

□ 현행 「개식용종식법」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지원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158]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개식용 종식 이행과정에서 업계 반발, 잔여견 발생 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업계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개식용 종식이 원활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이 개사육농장주의 조기 폐업·전업임.

□ 개사육농장주는 개식용 업계의 기반이 되는 식용견을 기르는 자들로서 공급체계 중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① 개사육농장주가 조기에 폐업·전업하는 경우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의 개체 수 자체를 감소시킴으로써 도살·유통 등 개식용

158)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한 자
[시행일: 2027. 2. 7.]

공급체계의 뒷부분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어, 개식용 종식 이행을 촉진할 수 있고,

② 반대로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전업이 늦어지는 경우 계속해서 업계에 사육견이 공급됨에 따라 유통·판매 등 공급체계 뒷부분의 폐업·전업 역시 늦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원활한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하여 개사육농장주의 조기 폐업·전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조기 폐업·전업에 대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데, 폐업 시기 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제도가 이에 해당함.

【 개사육 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구간별 지원단가 】

구분	1구간[159]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폐업시기	'24. 8. 7. ~'25. 2. 6. (6개월)	'25. 2. 7. ~'25. 8. 6. (6개월)	'25. 8. 7. ~'25. 12. 21. (4개월 15일)	'25. 12. 21. ~'26. 5. 6. (4개월 15일)	'26. 5. 7. ~'26. 9. 21. (4개월 15일)	'26. 9. 22. ~'27. 2. 6. (4개월 15일)
마리당 지원단가	60만원	52.5만원	45만원	37.5만원	30만원	22.5만원
지원단가 선정기준	2년분	1.75년분	1.5년분	1.25년분	1년분	0.75년분

주1) 다만, ① 「농지법」 위반(농지전용 미신고 등) 확인 시 50% 감액,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배출시설 미신고) 확인 시 지급 제외,
③ 「건축법」 위반(시설물 무허가·미신고) 확인 시 지급 제외

주2)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사육면적에 따라 환산한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설정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59) 「개식용종식법」 시행일('24. 8. 7.)을 기준으로 구간이 설정되었으며, 「개식용종식법」 공포일('24. 2. 6.) 이후 시행일 이전까지 폐업한 농가도 1구간에 포함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사육농장 신고 규정」"이라 한다) [별지 1]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에서는 사육마릿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별지 5]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에서는 폐업 예정일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식용종식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기한[160]('24. 8. 5.)을 기준으로 폐업시기 구간별 폐업 예정자와 폐업 예정자의 개사육 마릿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폐업 구간별 폐업 예정 개사육농장주 및 개 사육 마릿수 】

(단위: 호, 마리, %)

구분	총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폐업 예정 개사육 농장주	1,537	134	57	25	128	73	1,120
폐업 예정 개사육 농장 내 사육견	485,700 (100.0)	14,542 (3.0)	9,024 (1.9)	7,507 (1.5)	38,301 (7.9)	16,096 (3.3)	400,230 (82.4)

주) 기준시점: 2024년 8월 6일(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기한 경과 시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폐업 예정 구간 중 4~6구간에 농장주와 사육견이 각각 1,321호(85.9%)와 454,627마리(93.6%)로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6구간에는 농장주와 사육견이 각각 1,120호(72.9%)와 400,230마리(82.4%)로 집중되어 있어, 정부의 개사육 농장주 조기 폐업 유도 계획과는 배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16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정부지원 대책이 개사육농장주의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기한인 2024년 8월 5일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결과, 종식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는 개사육농가들의 단체행동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서상의 폐업시기가 마지막 구간에 집중된 측면이 있으며,

9월 26일에 정부지원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1구간 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개사육농장 신고 규정」 제3조제2항[161]은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공포된 8월 6일 이후 6개월 동안 이행계획서의 수정 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구간별 폐업 예정자 수는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임.

□ 다만, 정부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지원금액 및 전·폐업 기간 등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162] 추가적인 인센티브 구조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즉,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의 사육견 마리당 지원단가는 개사육농장주의 사육견 마리당 순수익(약 31만원)을 기준으로 이와 유사한 연간 30만원으로 설정된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개사육농장주가 영업

161)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162) MBC,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 개 식용 종식 계획에 업계 반발", 2024. 10. 8.
한국일보, "'마리당 60만원'으로 개 농장 접어라?... '개고기 없는 나라' 그리 쉽지 않다", 2024. 10. 2.

을 계속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소득과 큰 차이가 없어 폐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의 금액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사육 농장주는 ① 대부분이 영세한 고령농(평균연령 64.3세, 65세 이상 53.5%)·소농(사육규모 300두 이하 56.1%)이고, ② 타 축종 병행사육 비율이 21.0%에 불과하며, ③ 평균 종사기간이 17.6년에 달하여 전·폐업 이행에 애로점이 있다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사육농장주 실태조사[163] 현황 】

(단위: 호, %)

<table>
<tr><td rowspan="8">총계

1,537
(100.0)</td><td colspan="6">1. 연령분포 현황 (평균: 64.3세)</td></tr>
<tr><td>50세 미만</td><td>50세～59세</td><td>60세～64세</td><td>65세～69세</td><td>70세 이상</td></tr>
<tr><td>89
(5.8)</td><td>259
(16.9)</td><td>366
(23.8)</td><td>441
(28.7)</td><td>382
(24.9)</td></tr>
<tr><td colspan="6">2. 연평균 사육두수 현황 (농가당 평균: 398.3마리)</td></tr>
<tr><td colspan="2">300두 이하</td><td colspan="2">301두～700두</td><td>701두～999두</td><td>1000두 이상</td></tr>
<tr><td colspan="2">863
(56.1)</td><td colspan="2">438
(28.5)</td><td>104
(6.8)</td><td>132
(8.6)</td></tr>
<tr><td colspan="6">3. 종사기간 현황 (평균: 17.6년)</td></tr>
<tr><td>미응답</td><td>5년 미만</td><td>5년 이상
15년 미만</td><td>15년 이상
20년 미만</td><td>20년 이상
25년 미만</td><td>25년 이상</td></tr>
<tr><td>10
(0.7)</td><td>89
(5.8)</td><td>498
(32.4)</td><td>344
(22.4)</td><td>294
(19.1)</td><td>302
(19.6)</td></tr>
</table>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63)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 구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1구간의 경우, 정부지원대책의 발표가 법률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보다 늦은 9월 26일에 이루어져, 이미 1구간의 6개월의 기간 중 2개월 가량이 경과했던바,

1구간이 종료되는 시기인 2025년 2월 6일까지 남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기한 내 폐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164]이 있고, 이를 도과할 경우 농장주가 더 낮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어 폐업 유인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 한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장주가 개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는 겨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장주에게 개의 보호비용을 청구한 후 보호·관리할 계획인바, 이러한 비용청구 조치는 개식용 도축업자에게 판매를 완료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려는 농장주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하므로 폐업촉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 개선을 통하여 개사육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2027년 2월 7일 시점에 개식용 체계 전반에서 그 종식의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64) 특히,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지원 신청일 기준 사육견의 전량 출하가 이루어져야하므로, 기존 1구간 미희망자가 단기간 내에 폐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보임

18) 살처분 보상금: 방역관련 의무 준수 유인체계의 보완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필요

○ 살처분 보상금 사업은 보상금 감액 제도가 농가들의 방역관련 의무 준수를 원활하게 유인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살처분 보상금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의 살처분과 오염 물건의 폐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과 동일한 81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165]

【2025년도 살처분보상금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살처분 보상금	120,064	81,315	60,299	81,315	0	0.0
살처분 보상금	120,064	80,215	58,481	80,215	0	0,0

165)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살처분보상금(3940-337)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살처분 보상금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은 ①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② 소각 등을 한 오염물건의 소유자, ③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으로 인하여 죽은 가축의 소유자 등이고,[166]

보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동법에 따른 방역관련 의무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167]

---

1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16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 살처분 보상금 내역사업 예산 산출내역 】

□ 살처분보상금 내내역사업(77,840백만원)

○ 조류인플루엔자: 19,200백만원 = 5,000천수×0.6만원×64%

○ 아프리카돼지열병: 13,440백만원 = 70천두×0.3백만원×64%

○ 브루셀라병: 20,160백만원 = 7천두×4.5백만원×64%

○ 결핵병: 11,520백만원 = 4천두×4.5백만원×64%

○ 기타: 13,520백만원 = 13천두×1.3백만원×80%

□ 기립불능우 폐기보상금 내내역사업(1,300백만원)

○ 한우: 720백만원 = 300두×2.4백만원

○ 육우: 180백만원 = 100두×1.8백만원

○ 젖소: 400백만원 = 400두×1백만원

□ 폐업지원금 내내역사업(1,075백만원)

○ 돼지: 1,075백만원 = 15,357두×0.1백만원×7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령 동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의 경우 ① 살처분 가축의 평가액(살처분한 날 기준)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② 주요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는 40%(사슴 결핵병) 또는 20%(그 외)를 감액하고,[168] ③ 그 외 방역관련 의무 등을 준

16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마.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감액을 규정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최근 4년간 보상금 지급 현황과 관련하여, 전체 지급건수와 감염가축 발견 외의 사유로 감액된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살처분 보상금 내역사업 최근 4년간 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건, %)

구분		총계	고병원성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럼피 스킨병	구제역	기타
2020년	지급건수	1,958	17	177	195	453	-	-	1,116
	감염 외 감액건수	30 (1.5)	2 (11.8)	13 (7.3)	5 (2.6)	9 (2.0)	-	-	1 (0.1)
2021년	지급건수	2,925	897	21	306	374	-	-	1,327
	감염 외 감액건수	103 (3.5)	93 (10.4)	5 (23.8)	2 (0.7)	3 (0.8)	-	-	-
2022년	지급건수	2,121	199	29	263	306	-	-	1,324
	감염 외 감액건수	65 (3.1)	45 (22.6)	5 (17.2)	6 (2.3)	9 (2.9)	-	-	-
2023년	지급건수	2,595	273	75	139	238	32	11	1,827
	감염 외 감액건수	102 (3.9)	82 (30.0)	4 (5.3)	4 (2.9)	1 (0.4)	-	11 (100.0)	-

주1) 감염 외 감액건수는 보상금 감액사유 중 감염가축 발견 외의 방역관련 의무 미준수 등에 따른 건수임
주2) 기타는 주로 예방접종(구제역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 등이 해당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바목부터 버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일 것
2) 검출된 구제역 항원이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일 것
3)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되기 전에 실시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일 것

다.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2020-2021년[169] 이후 매년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동절기에도 10월 29일 첫 발생이 보고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다른 가축전염병과 달리,

감염 외의 감액사유에 따른 감액건수 비율이 높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20년 11.8% → '21년 10.4% → '22년 22.6% → '23년 30.0%)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반복적인 발생에 따라 가금농장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 및 시설기준 등이 타 축종에 비하여 강화되어왔고,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이를 통한 방역수칙 위반 확인이 용이하며, 오리농장의 경우 타 축종에 비하여 사육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다만, 보상금에 대한 감액제도는 방역관련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농가들로 하여금 방역관련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체계로서의 성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감염 외의 사유에 따른 보상금 감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 감액을 통하여 방역관련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

16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철새의 이동에 따라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계절성 가축전염병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특히,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별표 2]는 감액 사유 중 방역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감액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 단서[170]에 따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내 감염되지 않은 가축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가축전염병임을 고려하면, 타 가축전염병과 감액률의 차등을 두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의 보상금 감액 제도가 농가들의 성실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의무 준수를 원활하게 유인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7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19) 가축백신지원: 아프리카마역 예방백신 비축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가축백신지원 사업은 아프리카마역 예방백신의 비축규모를 전 두수 접종을 기준으로 결정한바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럼피스킨병과 관련하여 철저한 백신 접종을 통하여 그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과 가축방역 인력의 업무과중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가축백신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소·돼지 등 우제류), 말 전염병(말), 럼피스킨(소)의 예방약(백신)과 그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17억 1,900만원(2.6%)이 증액된 669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171]

【2025년도 가축백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가축백신지원	78,821	65,264	58,151	66,983	1,719	2.6
말 예방백신 등 지원	1,719	1,337	1,069	1,827	490	36.6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21,116	15,729	8,537	15,367	△362	△2.3

171)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축백신지원(3940-342)

(나) 검토의견

(1) 아프리카마역 예방백신 비축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내역사업인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사업은 말 전염병 예방을 통한 국내 말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말 전염병 예방약(백신), 수의사 백신접종, 전염병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4억 9,000만원(36.6%)이 증액된 18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분 전액은 아프리카마역(馬疫) 예방백신 비축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 말 예방백신 등 지원 내역사업 예산 산출 근거 】

□ 말 예방백신 등 지원 내내역사업

○ 말 예방백신 지원 1,282백만원, 말 전염병 모니터링 55백만원

○ 산출식: 1,337백만원 = 46.8천두×408백원×70%

□ 아프리카마역 예방백신 등 지원 내내역사업 (신규)

○ 산출식: 490백만원 = 28천두×17,492원×1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마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172]으로, 모기에 의하여 말, 당나귀, 노새 등에 전파되어 잠복기

17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

7~9일을 지나 고열, 각막 충혈, 폐렴 증상 등이 나타나고, 폐사율은 감염 바이러스의 독성에 따라 25~90%인 가축전염병인데,[173]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마역이 2020년 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이후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아프리카마역 예방백신을 비축할 계획으로,

아프리카마역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조속한 방역이 요구되는바 그 비축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어 보임.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규모로서 전국 말 사육두수를 고려하여, 2023년 기준 전국 말 사육두수인 27,289두를 소폭 상회하는 28,000두를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인바, 비축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2023년 기준 전국 말 사육두수 및 사업체 수 】

(단위: 두, 개소)

말 사육두수	말 사업체 수		
	합계	말 보유	말 미보유
27,289	2,682	2,339	34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173)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백과, https://www.qia.go.kr/animal/prevent/viewJbbkWebAction.do?id=100194, 2024. 10. 24. 확인

□ ① 아프리카마역이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축물량은 발생시 초동대응을 위한 예비적 물량인 점, ② 백신의 보관기간인 약 2년간 아프리카마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축물량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축규모를 전국의 말 사육 전체 두수 접종을 위한 규모로 설정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마역 백신 비축과 관련하여 지난 2022년 럼피스킨병 백신 비축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8월에 21억 3,800백만원의 예산을 자체이용하여 당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입가능성이 높았던 럼피스킨병 백신을 구매·비축하였고,

2023년 10월에 국내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자, 해당 비축물량을 통하여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긴급접종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접종은 예비비 211억 1,700만원을 배정하여 백신을 구매하여 실시함으로써, 발생기간을 1개월로 제한한 바 있음.

□ 아프리카마역 역시 럼피스킨병의 사례처럼 병이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 비축물량을 통하여 초동대응에 나서고, 이후 예비비 또는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하여 필요한 백신을 구매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말의 전 두수에 대한 접종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아프리카마역 백신 비축 규모를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철저한 백신 접종을 통한 럼피스킨병 발생 억제 필요

□ 내역사업인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사업은 럼피스킨병 백신과 수의사 접종을 지원하여 럼피스킨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생시 예비비를 활용한 이후 2024년 본예산 편성부터 별도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었고, 2025년도에는 전년과 접종두수는 동일하나 예방약 낙찰가격 하락 등에 따라 △3억 6,200만원(△2.4%) 감액된 153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 내용: 럼피스킨병 예방약(백신) 및 수의사 동원 백신 접종 시술 지원

○ 예방약 지원: 백신접종 대상인 소 사육 농가에 지원

○ 접종 시술 지원: 고령이거나 영세하여 스스로 접종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통해 백신 접종을 지원

□ 사업 성과: 해외사례와 유사한 항체양성률 수준 유지

○ 면역수준 평가를 위하여 백신접종 소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

○ '23년 접종농가 항체양성률: 10개 시도 평균 32%

□ 예산안 산출내역: 총 15,367백만원

○ 럼피스킨 예방약 지원: 10,500백만원(=3,500천두 × 3,000원 × 100%)

○ 소 접종 시술비: 4,810백만원(=1,924천두 × 5,000원 × 50%)

○ 조달 수수료: 57백만원(=10,500백만원 × 0.54%)

주) 항체양성률 = 충분한 양의 백신 항체를 보유한 가축 수 / 항체 검사를 실시한 가축 수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럼피스킨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침파리·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되어 감염된 소에게 잠복기(4~14일) 이후 피부·점막의 수많은 작은 결절, 우유생산량 급감, 유산 및 수소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나, 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임.

□ 럼피스킨병은 지난 2023년 10월에 국내 최초로 발생하여, 2024년 10월 25일 기준 총 41개 시·군에서 124건이 발생하였는데,

2023년에는 총 107건, 6,455두 규모의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에는 10월 29일 기준 총 17건, 165두 규모의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여, 발생 횟수 및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 국내 럼피스킨병 발생 현황('24. 10. 29. 기준) 】

(단위: 건, 두)

구분	발생 건수	양성 두수	최초 발생일	최종 발생일	발생 시·군
2023년	107	6,455	10월19일	11월20일	강화, 고성(강원), 고창, 김천, 김포, 논산, 당진, 무안, 부안, 부여, 서산, 수원, 시흥, 신안, 아산, 양구, 여주, 연천, 예산, 예천, 음성, 임실, 창원, 철원, 청양, 청주, 충주, 태안, 파주, 평택, 포천, 홍성, 화성, 횡성
2024년	17	165	8월12일	10월29일 (진행중)	고성(강원), 당진, 문경, 상주, 안성, 양구, 양양, 여주, 이천, 인제, 원주, 충주, 평택

주) 럼피스킨병 발생 시·군의 밑줄 표시는 '24년 신규 발생('23년 미발생) 시·군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발생 횟수·규모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백신 접종으로 보이는데,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받은 소는 접종 이후 10일경부터 항체 형성이 시작되어, 3주 이후부터는 럼피스킨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게 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3년 럼피스킨병 첫 발생 당시 사전 비축분을 활용하여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긴급접종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해 왔고,

2024년의 경우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긴급 접종과 확대 접종을 포함하여 총 4차례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바, 이는 2023년에 비하여 발생 횟수 및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음.

【 2024년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

구분	1차 접종	2차 접종(긴급)	3차 접종	4차 접종(확대)
접종 시기	4월, 7월	8월 ~ 9월	9월 ~ 10월	9월 ~ 10월
접종 시·군	42개 시·군	9개 시·군	74개 시·군	25개 시·군
접종 규모	124만두	26만두	85만두	69만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당분간 지속적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바,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철저한 백신 접종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첫째, 2024년 발생 초기(1차~9차) 사례[174] 중에는 백신 미접종 사례가 다수 존재함.

【 2024년 럼피스킨병 1차~9차 발생 사례 및 양성두수 중 백신접종 여부 】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발생일	8.12.	8.31.	9.11.	9.18.	9.19.	10.2.	10.3.	10.4.	10.10.
양성두수	28두	6두	3두	9두	2두	3두	10두	3두	10두
'24년 백신접종 여부	미접종	미접종	일부 미접종	일부 미접종	미접종	미접종	접종	접종	일부 미접종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럼피스킨병 1차~9차 발생 사례 중 백신 미접종 사례가 4건, 일부 미접종 사례가 3건 존재하고,

이들 사례 중에는 ① 인근지역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긴급 백신접종 지역에 포함되어 농장주가 백신을 수령하였으나 접종하지 않은 동안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사례(2차), ②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접종 후 5일만에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사례(9차) 등이 존재함.

□ 백신 미접종이 럼피스킨병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에는 10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됨.

174) 럼피스킨병은 2024년 10월 10일 9차 발생 이후 10월 19일(10차), 10월 25일(11~14차), 10월 28일(15차), 10월 29일(16차)에 각각 발생하였음

□ 둘째, 백신접종이 생후 4개월까지 유예되는 송아지에 관한 관리가 요구됨.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받은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모체이행항체 간섭효과[175]가 발생할 수 있어, 출생 후 약 4개월 이후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후 3개월령 송아지가 의심축으로 신고되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2024년 3차 발생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접종이 유예되는 생후 4개월 이전 송아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럼피스킨병의 지속적인 발생은 ① 백신 구매·접종비용 등을 통하여 국가 예산[176]에 지속적인 부담을 미친다는 점, ② 가축방역 인력의 업무 과중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방역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럼피스킨병 청정국 지위[177]의 조건으로서 “최종발생일 또는 백신접종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동안 예찰결과가 음성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

175) 어미소에서 유도된 항체(모체이행항체)가 생후 초기 송아지에게 남아있는바, 모체이행항체가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 형성을 방해하는 효과

176) 럼피스킨병 백신접종을 위한 예산은 2023년에 211억 1,600만원(예비비)이 집행되고, 2024년에 157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 예산안으로는 153억 6,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177) 참고로 국제적으로 럼피스킨병 청정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소고기 수출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교역상대국이 수입 등의 조건으로 럼피스킨병 청정국 지위를 요구할 수는 있음

럼피스킨병은 매개곤충의 활동이 약화되는 겨울철에 현저히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 한 번의 봄철부터 가을철까지의 기간만 이겨낸다면 충분히 14개월의 미발생 기간을 충족할 수 있어, 럼피스킨병 발생 위험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럼피스킨병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조속히 럼피스킨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부담과 가축방역 인력의 업무과중 문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430억 임.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430**	**430**	**-**	**-**
투자계정 소계	**210**	**210**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	1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9	209	-	-
융자계정 소계	**220**	**220**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	5	-	-
○ 융자원금회수	215	215	-	-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2%(△9억) 감소하였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보조)가 전년 대비 5.2%(△9억) 감소한 165억원임.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74	165	△9	△5.2
투자계정 소계	174	165	△9	△5.2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보조)	174	165	△9	△5.2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3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되었는데, 국유재산(건물)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수입 발생에 따른 것임

【2025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 건물대여료	-	34	34	순증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25억원) 감소하였음.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3예산 (A)	'24예산안 (B)	증 감 (B-A)	증 감 %
총 계	**143**	**118**	**△25**	**△17.5**
지역자율계정 소계	**135**	**113**	**△22**	**△16.3**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	4	2	62.2
○ 기타경상이전수입	132	109	△23	△17.7
지역지원계정 소계	**8**	**5**	**△3**	**△37.0**
○ 기타경상이전수입	8	5	△3	△37.0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1.3% (5,672억원) 증가한 1조 3,624억이 편성되었음.

계정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자율계정은 전년보다 0.5%(37억원) 증가한 7,108억원, 지역지원 계정은 전년보다 783.6%(5,623억원) 증가한 6,341억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전년보다 28.7%(35억)이 증가한 158억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전년보다 56.8%(△24억원) 감소한 18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24년 예산(A)	'25년 예산안(B)	증감	
			(B-A)	%
총 계	7,953	13,624	5,671	71.3
<지역자율계정>	7,070	7,108	38	0.5
○ 농촌형교통모델(자율)	249	266	17	6.7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42	45	3	5.9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28	16	△12	△43.9
○ 친환경농자재지원(자율)	-	555	555	순증
○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56	56	-	0.4
○ 일반농산어촌개발	5,654	5,125	△529	△9.3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041	1,045	4	0.4
<지역지원계정>	718	6,341	5,623	783.6
○ 농기계임대	-	271	271	순증
○ 배수개선	-	4,852	4,852	순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1,137	1,137	순증
○ 친환경농자재지원	699	65	△634	△90.7
○ 귀농귀촌활성화지원(정보화)	19	16	△3	△12.9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23	158	35	28.7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제주)	0.5	2	1.5	300.0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제주)	-	6	6	순증
○ 토양개량제사업(제주)	18	11	△7	△40.9
○ 반려동물인프라구축(제주)	4	-	△4	순감
○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00	139	39	39.2
<세종특별자치시계정>	42	18	△24	△56.8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세종)	1	4	3	300.0
○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31	8	△23	△74.5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세종)	2	-	△2	순감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세종)	9	5	△4	△43.2
○ 친환경농자재지원(세종)	-	2	2	순증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21억) 감소하였는데, 내역사업 중 하나인 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사업의 종료에 따른 것임

【2025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78	157	2	11.9
○ 영농아카데미	178	157	2	11.9

7. 양곡관리특별회계

가. 개 요

□ 2025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7,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65억원)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증가에 따른 것임.

【2025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 감 (B-A)	증 감 %
총 계	**27,460**	**27,925**	**465**	**1.7**
○ 양곡사업수입	5,379	4,789	△590	△11.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0	11	11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66	66	-	-
○ 잡수입	98	28	△70	△71.4
○ 전입금	21,643	22,715	1,072	5.0
○ 세계잉여금이입액	274	317	43	15.7

□ 2025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7,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65억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로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이 전년 대비 1.2%(198억원) 증액 및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이 전년 대비 11.5%(470억원)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임.

【2025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27,460	27,925	465	1.7
○ 정부양곡매입비	17,124	17,322	198	1.2
○ 수입양곡대	6,163	5,922	△241	△3.9
○ 정부양곡관리비	4,091	4,561	470	11.5
○ 쌀소비기반구축	83	120	37	44.6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가. 개 요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2,030억원(8.5%) 증가한 2조 5,978억원임.

□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자체수입으로 2조 3,608억원, 여유자금 회수로 2,370억원 등을 통해 총 2조 5,978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종자산업 진흥 등을 위한 각종 기금사업으로 2조 1,897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159억원 예수이자 상환하고, 여유자금 3,923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24계획		'25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22,744	22,744	23,608	864	3.8
	○ 재산수입	112	112	131	19	16.8
	○ 경상이전수입	1,257	1,257	1,311	54	4.3
	- 법정부담금	575	575	575	-	-
	-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682	682	735	53	7.8
	○ 관유물매각대(농산물판매 등)	7,735	7,735	7,410	△325	△4.2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3,640	13,640	14,756	1,116	8.2
	2. 정부내부수입	-	115	-	-	-
	○ 농특회계전입금	-	115	-	-	-
	○ 공자기금예수금	-	-	-	-	-
	3. 여유자금회수	1,204	1,204	2,370	1,166	96.9
수입 계		23,948	24,063	25,978	2,030	8.5
지출	1. 일반지출	21,418	21,533	21,897	479	2.2
	○ 사업비	20,838	20,953	21,303	465	2.2
	- 농식품수출촉진	4,582	4,582	4,582	-	-
	- 식품산업육성	1,446	1,446	1,634	188	13.0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7,978	8,093	8,509	531	6.7
	- 농산물유통개선	5,449	5,449	5,228	△221	△4.1
	- 소비지유통활성화	695	695	663	△32	△4.6
	- 종자수급조절	687	687	687	-	-
	○ 기금운영비	580	580	593	13	2.2
	2. 정부내부지출	159	159	159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59	159	159	-	-
	3. 여유자금운용	2,370	2,370	3,923	1,553	65.5
지출 계		23,948	24,063	25,978	2,030	8.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가입물량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가입물량 확대를 위하여 지역농협 등의 사업비 조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도 목표 가입물량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사업은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주산지 중심의 사전·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유통협약 명령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344억 7,400만원(△62.0%)이 감액된 21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178].

【2025년도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계획(7월기준)		'25 계획안 (B)	증 감	
		계획(A)	집행		(B-A)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22,061	55,590	843	21,116	△34,474	△62.0%
채소가격 안정지원	22,061	55,190	843	20,716	△34,474	△62.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24. 9. 9.

178)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3031-326)

(나) 검토의견

□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주요 노지(露地) 밭작물[179]의 수급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면적조절, 출하정지, 조기출하 등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액 보전,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지원 품목에 따라 ① 농협경제지주 또는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① 농협경제지주는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겨울 대파, 감자를,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고랭지·겨울 배추와 고랭지 무를 지원하고 있음.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 자격	(농협)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역농협·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aT)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지원 품목	(농협)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겨울대파, 감자(시범)
	(aT) 여름(고랭지)·겨울 배추, 여름(고랭지) 무
지원 기준	(농협) 국고 30%, 지자체 30%, 농협 20%, 자부담 20%
	(aT) 국고 50%, 자부담 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4. 10. 10.

179)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 7개 품목

① 농협경제지주 시행 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이 도별·품목별 주산지협의체[180]를 구성하고,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로 사업비를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음.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행 사업은 국가, 산지유통인[181]이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고 50%, 산지유통인 50%로 사업비를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세 가지 유형(①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 시 가격차 보전, ② 가격 급락시 출하기 출하정지 및 생육기 면적조절, ③ 가격 상승시 출하장려)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①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 시 가격차 보전은 대상품목의 당해연도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평년 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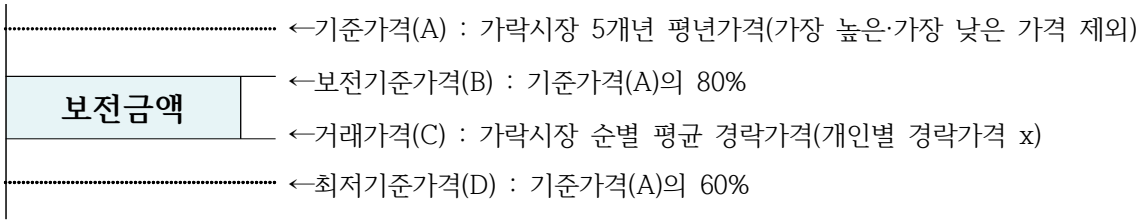
180) 주산지협의체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수급조절·정책 등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기구를 의미

181)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의미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유형 1: 가격 하락시 가격차 보전】

○ (보전방법) 당해 연도 (가락)도매시장 (순별)거래가격이 평년 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 시 차액을 보전

- 보전금액 : [보전기준가격(B) - 거래가격(C)] X 개인별 출하물량



○ (보전사례) 제주 조생양파('22. 3월 하순~5월 상순, 8,541톤/420백만원)

(단위 : 원/kg)

순기별	시장가격					보전기준 가격(80%)	최저기준 가격(60%)	차액 (보전단가)
	특	상	중	하	평균			
3월 하	618	393	256	160	303	794	595	199
4월 상	841	492	289	146	359	781	586	195
5월 상	666	551	478	335	484	577	433	93

※ 시장평균 거래가격이 최저기준가격보다 낮더라도 보전기준가격과 최저기준가격 차액만 보전(3하, 4상)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4. 10. 10.

② 가격 급락시 출하기 출하정지 및 생육기 면적조절은 대상품목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사를 통하여 출하대기 포전(圃田)[182]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전정리 및 손실보전을 수행하는 방식임.

18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포전매매'를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즉,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 밭에 식재된 상태에서 일괄하여 매도하는 거래의 유형으로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 매도인(농업인)이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약정된 기일에 매수인(수집상)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함.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유형 2: 가격 급락시 출하정지 및 면적조절】

○ (보전방법) 출하대기 포전을 확정(지자체 실사) 후 포전정리 및 손실보전

- 보전금액 : 보전기준액[(기준가격 × 농업인수취율) - 출하비용)] × 출하정지 면적

  * 면적 조절은 생육률(65%, 70%, 75%, 80%)도 곱하여 산출

○ (보전사례) 전남 겨울배추('23. 1월 중순~2월 하순) 출하정지

- 대상면적(물량) : 80ha(7,273톤), 지원단가 : 7,065원/3.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4. 10. 10.

③ 가격 상승시 출하장려는 대상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출하장려금(운송비, 출하작업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임.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유형 3: 가격 상승시 출하장려】

○ (보전방법)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상승단계에 따라 차등지급

- 보전금액 : (주의) 운송비, (경계) 운송비 + 출하작업비, (심각) 운송비, 출하작업비, 상장수수료

○ (보전사례) 강원 고랭지 배추('22. 9월 상순, 위기단계: '심각')

- 대상물량 : 1,485톤(165대)/248백만원

< 출하장려금 지급내역(900망/대) >

운송비	작업비	상장수수료(50%)	합 계
450천원	450천원	606천원	1,506천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4. 10. 10.

□ 동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이 부진한데, 최근 3년간('21～'23) 집행률은 40.4%～90.9%로, 실집행률은 8.4%～23.2%로 나타남.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						
	수정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교부현액	실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21년	34,063	34,063	14,469	42.5	14,469	14,897	29,366	7,896	11,482	9,988	23.2
'22년	40,443	60,037	54,598	90.9	54,598	11,482	66,080	5,032	40,666	20,382	8.4
'23년	55,190	55,190	22,061	40.4	22,061	40,666	62,727	5,341	32,389	24,997	9.7
'24년 (9월)	55,190	55,190	1,703	3.1	1,703	32,389	34,092	1,703	-	-	3.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4. 10. 22.

□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가입률이 정체하기 때문임.

2022년 7월 농식품부[183]는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가입물량 비율(평년 생산량 대비)을 2022년 20%로, 2027년까지 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실제 가입물량 비율은 2020년도 이후 15%～18%로 정체하고 있음. 또한, 2023년 가입물량 비율은 18%[184]에 불과하여, 2027년까지 가입물량 비중을 약 2배 수준(35%)으로 증대할 수 있을지 의문임.

183) 농식품부 보도자료,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로 주요 밭작물 물가안정 강화」, 2022. 7. 21.

184) 2024년도 잠정 가입물량도 2023년과 유사하므로, 가입실적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가입 현황】

(단위 : 천톤)

구분	'16 (시범)	'17	'18	'19	'20	'21	'22	'23	'24 (9월)	'25 (안)
가입실적(B/A)	5%	8%	10%	12%	15%	16%	17%	18%	-	-
생산량(A)	663	4,566	4,768	4,491	3,755	3,873	3,763	3,378	-	-
가입물량(B)	35	363	459	542	569	598	622	597	592 (잠정)	-
가입물량 목표(C) (본예산편성 기준)	80	310	511	460	730	863	974	1,227	1,227	792
목표달성률(B/C)	44%	117%	90%	118%	78%	69%	64%	49%	48% (잠정)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4. 10. 22.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동 사업 참여 농가수도 2021년 15,972호에서 2023년 14,484호로 오히려 감소한바 있음.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 참여 농가(조합원) 현황】

(단위 : 호, 천톤)

구 분	2021		2022		2023		2024.9.	
	참여 농가수 (조합원)	물량	참여 농가수 (조합원)	물량	참여 농가수 (조합원)	물량	참여 농가수 (조합원)	물량
배추	932	96,539	1,021	135,511	993	145,393	406	142,310
무	524	230,142	555	236,987	549	233,101	474	202,420
마늘	8,349	102,104	7,533	52,375	7,656	44,417	7,453	42,996
양파	3,738	137,037	3,369	177,920	3,504	154,230	4,022	184,920
건고추	1,501	165	1,376	158	1,216	158	1,101	152
겨울대파	712	32,487	430	18,739	356	19,383	150	11,441
고랭지감자	216	8,939	190	8,372	210	8,824	231	10,724
합 계	15,972	607,413	14,474	630,062	14,484	605,506	13,837	594,96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4. 10. 15.

□ 동 사업 가입물량 비중이 정체하고 있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짐. 첫째, 사업량이 증가할수록 농협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 사업물량 확대 유인이 부족함. 실제로 최근 농협 사업비 납부·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농협이 사업비 조성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향후 가입물량이 확대되는 경우 지역농협의 부담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참여 농협 사업비 납부·집행 현황[185]】

(단위 : 천원)

구 분	품목	조성액			실집행액		
		농협 경제지주	지역농협	농협 합계	농협 경제지주	지역농협	농협 합계
'21년	소계	7,548,353	14,247,769	21,796,122	1,762,607	2,941,487	4,704,094
	배추	893,310	1,526,848	2,420,158	430,627	602,061	1,032,688
	무	1,503,240	1,549,333	3,052,573	557,662	603,755	1,161,417
	양파	1,267,530	3,465,610	4,733,140	554,696	1,551,994	2,106,690
	마늘	3,200,678	6,932,287	10,132,965	-	-	-
	대파	540,900	452,372	993,272	219,622	183,677	403,299
	고추	33,735	101,200	134,935	-	-	-
	감자	108,960	220,119	329,079	-	-	-
'22년	소계	7,867,294	10,396,605	18,263,899	653,157	452,090	1,105,247
	배추	1,439,896	697,024	2,136,920	407,549	290,375	697,924
	무	1,938,548	6,586	1,945,134	83,893	-	83,893
	양파	1,356,352	3,506,764	4,863,116	161,715	161,715	323,430
	마늘	2,592,435	5,848,928	8,441,363	-	-	-
	대파	397,169	-	397,169	-	-	-
	고추	35,741	107,211	142,952	-	-	-
	감자	107,153	230,092	337,245	-	-	-

185) 수탁사업의 경우 국고 30%, 지자체 30%, 농협 20%(경제지주 10, 사업농협10), 자부담 20%로 분담하나, 매취사업의 경우 국고 30%, 지자체 30%, 농협 40%(경제지주 10, 사업농협30)을 분담하여 농협경제지주와 사업농협의 조성액이 상이함

구 분	품목	조성액			실집행액		
		농협 경제지주	지역농협	농협 합계	농협 경제지주	지역농협	농협 합계
'23년	소계	7,317,189	13,992,415	21,309,604	1,363,057	2,009,594	3,372,652
	배추	976,865	1,622,124	2,598,989	260,127	318,744	578,871
	무	1,597,406	1,597,387	3,194,793	592,572	592,446	1,185,018
	양파	1,383,790	3,631,412	5,015,202	32	32	65
	마늘	2,901,994	6,534,663	9,436,657	510,326	1,098,372	1,608,698
	대파	294,527	245,163	539,690	-	-	-
	고추	36,253	108,715	144,968	-	-	-
	감자	126,354	252,951	379,305	-	-	-
'24년	소계	6,281,413	13,412,470	19,693,883	286,564	859,693	1,146,257
	배추	566,399	754,906	1,321,305	-	-	-
	무	440,500	440,475	880,975	-	-	-
	양파	2,190,199	5,600,456	7,790,655	-	-	-
	마늘	2,908,734	6,283,111	9,191,845	286,564	859,693	1,146,257
	대파	-	-	-	-	-	-
	고추	-	-	-	-	-	-
	감자	175,581	333,522	509,103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4. 10. 15.

둘째, 농업인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부담하였으나 수급대책 발동[186] 사례가 적어서 참여 유인이 부족함. 농협경제지주 시행 사업의 경우 2021년 14차례, 2022년 9차례, 2023년 11차례, 2024년 1차례 발동하였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행 사업의 경우 2021년 2차례, 2022년 2차례, 2023년 3차례, 2024년 1차례 발동하였음.

186) 앞서 설명한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의 세가지 유형(①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 시 가격차 보전, ② 가격 급락시 출하기 출하정지 및 생육기 면적조절, ③ 가격 상승시 출하장려)의 발동을 의미함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수급대책 및 가격안정 추진 현황(농협)】

연번	시행일자	연산	품목	추진사항	총액(원)	정부분(원)
1	21.1~2	20년산	겨울배추	면적조절	2,009,515,000	602,854,000
2	21.2	20년산	중만생양파	출하장려	81,554,767	24,465,897
3	21.2~3	20년산	겨울대파	출하장려	330,293,000	99,087,900
4	21.3~4	20년산	겨울무	출하정지	6,995,867,810	2,098,760,350
5	21.4~6	20년산	여름감자	가격차보전	30,605,540	9,181,660
6	21.5	21년산	봄무	가격차보전	36,034,000	10,809,700
7	21.6~7	21년산	봄배추	가격차보전	3,445,433	1,033,000
8	21.7~10	21년산	여름배추	가격차보전	4,204,678,039	1,261,403,000
9	21.7~10	21년산	여름무	가격차보전	3,642,672,978	1,092,796,000
10	21.10~12	21년산	가을배추	가격차보전	80,728,455	24,218,000
11	21.11~12	21년산	가을무	가격차보전	127,067,000	38,119,300
12	21.11~12	21년산	가을배추	출하장려	17,380,000	5,214,000
13	21.12~22.2	21년산	겨울대파	가격차보전	328,122,000	98,436,600
14	21.12~22.5	21년산	겨울무	가격차보전	1,770,593,564	531,178,076
15	22.1~3	21년산	중만생양파	가격차보전	5,546,906,416	1,664,069,717
16	22.3~4	21년산	겨울대파	출하정지	1,868,099,000	560,429,700
17	22.3~4	22년산	조생양파	출하정지	1,197,185,880	359,156,160
18	22.3~5	22년산	조생양파	가격차보전	419,936,120	125,977,840
19	22.9	22년산	고랭지무	출하장려	439,444,950	153,803,000
20	22.9	22년산	고랭지배추	출하장려	247,981,640	86,793,000
21	22.12	22년산	가을무	가격차보전	119,809,000	41,932,550
22	22.11~12	22년산	가을배추	가격차보전	141,554,144	49,542,846
23	22.12~23.1	22년산	가을배추	출하정지	451,997,000	158,198,873
24	23.1~2	22년산	겨울배추	가격차보전	163,413,000	57,194,502
25	23.1~2	22년산	겨울배추	출하정지	1,712,000,000	599,199,498
26	23.3	23년산	조생양파	출하장려	324,000	97,200
27	23.6~7	23년산	봄배추	가격차보전	15,553,705	4,666,000
28	23.7~8	23년산	마늘(등외품)	출하정지	5,103,292,600	1,530,983,280
29	23.7~10	23년산	고랭지배추	가격차보전	2,336,329,240	700,892,000
30	23.7~10	23년산	고랭지무	가격차보전	2,334,125,020	700,183,000
31	23.8	23년산	고랭지배추	출하장려	245,389,660	73,608,000
32	23.8	23년산	고랭지무	출하장려	154,059,080	46,210,000
33	23.10~12	23년산	가을배추	가격차보전	3,628,268	1,086,000
34	23.12~24.2	23년산	겨울무	가격차보전	3,436,289,960	1,030,886,988
35	24.5~7	24년산	2차생장마늘	출하정지	2,865,643,200	859,692,96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4. 10. 22.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수급대책 및 가격안정 추진 현황(aT)】

연번	시행일자	연산	품목	추진사항	총액(원)	정부분(원)
1	21.8~10	21년산	여름배추	가격차보전	1,604,576,000	802,288,000
2	21.8~10	21년산	여름무	가격차보전	701,237,200	350,618,600
3	22.9~10	22년산	여름무	출하장려	434,621,074	217,310,537
4	22.11~23.4	22년산	겨울배추	가격차보전	552,869,324	276,434,662
5	23.8~10	23년산	여름배추	가격차보전	1,318,000,000	659,000,000
6	23.8~10	23년산	여름무	가격차보전	964,000,000	482,000,000
7	23.11~24.2	23년산	겨울배추	가격차보전	76,558,580	38,279,290
8	24.3~24.4	23년산	겨울배추	출하장려	1,609,656,620	804,828,31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4. 10. 22

□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2025년 동 사업 예산을 62.5% 감액하였으며, 사업참여 실적이 우수한 지역농협에는 인센티브를 부여(사업비 최대 3% 감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① 농식품부에서 편성한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에 따른 동 사업 가입물량은 79.2만톤[187]으로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고, ② 실집행률 수준도 2023년 기준 9.7% 수준으로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사업목표(79.2만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87) 이는 생산량 337.8만톤(2023년도 기준) 중 가입물량 비중을 23.4%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도전적인 목표로 보임. 참고로 2023년 기준 가입물량 비중은 18% 수준임.

【2025년도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예산	산출내역
21,116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1,116백만원 가. **채소가격안정지원** (20,716백만원) · 농협 사업비 (**652천톤**×940.6천원/톤×조성률 9%×국비 30%) + 산지유통인 사업비 {(**140천톤**×657.8천원/톤×조성률 9%×국비 50%) + 행정비용 13백만원} 나. 유통협약·명령지원 (400백만원) · 1,600톤×250천원/톤×국비 1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24. 9. 9.

□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가입물량 확대를 위하여 지역농협 등의 사업비 조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도 목표 가입물량의 적정 수준[188]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8) 다만, 농식품부는 농협 계약재배 사업 가입물량의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의무 가입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대비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를 현실화시킨 바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될 필요가 있음.

2) 비축지원: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적으로 고려 필요 등

○ 비축사업관리비 사업은 국가의 사무(비축사업)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민간경상보조(320-01목)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추진되는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고려하여, 동 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비축지원 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876억 5,700만원(12.1%)이 증액된 8,12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189].

【2025년도 비축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계획(7월기준)		'25 계획안 (B)	증 감	
		계획(A)	집행		(B-A)	%
비축지원	686,305	724,875	463,035	812,532	87,657	12.1%
비축사업관리비	25,091	25,591	25,591	26,871	1,280	5.0%
과실지정출하지원	-	-	-	25,840	25,840	순증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24. 9. 9.

189)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비축지원(3031-323)

(나) 검토의견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수수료 편성 비목 변경 필요

□ 비축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비축사업관리비 사업은 비축지원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임. 공사는 비축사업 매출액의 3개년 평균금액[190]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을 곱한 수수료를 농식품부로부터 지급받아 공사 인건비 및 경상비에 충당하고 있음.

2025년도 비축사업관리비 사업 예산안은 268억 7,1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목) 비목으로 편성됨.

【2025년도 비축사업관리비 사업 예산안 산출 내역】

구 분	방 식
2025년 예산안	○ 규모 : 268억 7,100만원 ○ 비목 : 민간경상보조(320-01목)
기준변수	○ 매출액의 3개년 평균금액 - 매출액: 정부비축사업 매출액 + 수입권공매 30% - 평균금액: 해당연도를 포함한 직전 3년간의 단순 평균
위탁요율	○ 0.043084(2024년 위탁요율 개정 연구용역에 따른 신규 요율)
위탁수수료 산출	○ 기준변수 × 위탁요율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90) 2022년~2024년 평균 금액은 6,236억 9,387만원임

□ 민간경상보조(320-01목)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자본적 경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민간 사무'에 대한 지원임.

반면,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는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을 의미함.

【민간보조사업비와 민간위탁사업비 비교】

구분	민간보조사업비(320-01목, 07목)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① 적용범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
②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법령에 따라 각 소관 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업무위탁 가능
③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집행 상황 점검 등	-
④ 정산	보조사업 완료,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위탁사업 종료 및 폐지 시 이자 포함 잔액은 국고로 환수

※ 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비축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91]에 따른 국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무로서 법령[192]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국가가 민간의 사무를 보조하는 형태가 아님.

따라서 비축사업관리비 사업은 국가 사무(비축사업)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민간경상보조(320-01목)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를 통해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19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19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비축용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양식·선매 계약의 체결
3. 농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先給金)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정산

(2) 신규 사업인 과실지정 출하지원 사업의 관리 철저 필요

□ 비축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과실지정 출하지원 사업은 민간 APC[193]를 통해 수확기에 사과를 매입·저장한 후 시장상황에 따라 출하처 및 출하시기를 지정하여 방출하기 위하여, 저장·출하·할인공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5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협경제지주가 민간경상보조(320-01목) 예산을 통해 수행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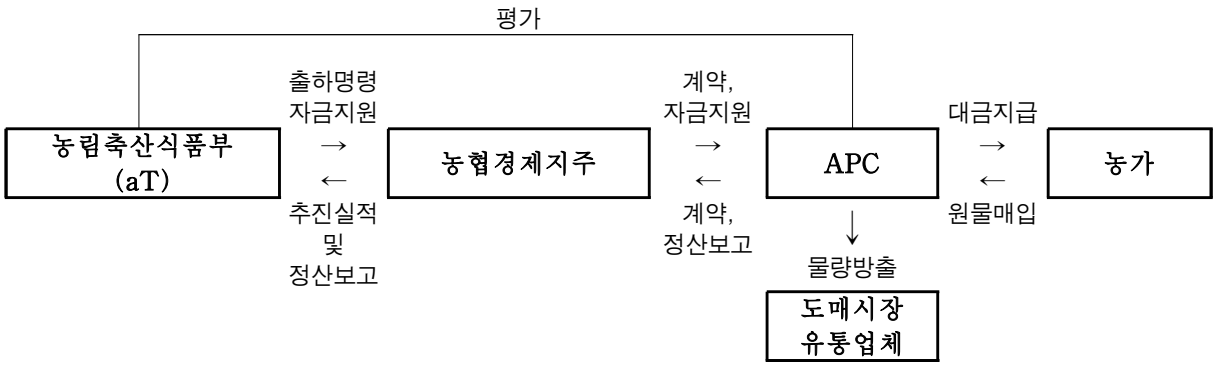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목적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중심으로 민간 APC를 통해 매입·보관 후 가격 급등락 시기에 시장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과일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
대상	대상	민간 APC
	품목	사과
	지원	보관료, 선별·출하비, 가격차 보전
	시기	명절(설, 추석), 가격 급등락 시기
사업 방식		민간 APC가 농가로부터 매취 후 저장창고 보관, 정부 요청 시 출하하고 정부는 소요 재원 지원(정부↔APC 계약)
사업 물량		2만톤(홍로 5천톤, 후지 15)
운영 기간		매년 8월~익년 6월 * (매입) 8월~12월, (방출) 연말, 설, 추석 및 가격차 20% 발생 시
사업 성격		민간경상보조
운영 주체		농협경제지주
'25년 예산안		25,840백만원 * (가격차보전) 2만톤 x 평년도매가격 33,000원/10kg의 30% + (출하운송비) 2만톤 x 1백만원/5톤 + (저장운영비) 2,040백만원(배추보관료 준용)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4. 9. 24.

193)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는 농산물 선별, 포장 등 상품화와 수집, 저장, 출하 등 물류를 담당하는 복합시설을 의미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 절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4. 9. 24.

□ 과수는 채소 등 다른 밭작물과 달리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194]으로 인해 면적조절, 산지폐기 등 수급조절이 어려운 품목임. 또한 기후변화[195], 자연재해 등으로 과수의 생산 안전성이 낮아져 수급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23년의 경우 사과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196]하여, 사과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급등('24. 2. 기준 122.2%)하여 높은 수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초래하였음.

이에 정부가 일정 물량을 직접 관리하는 보다 강화된 수급관리제도

194) 보통 묘목 식재 후 5년 이후 생산을 시작하여 30년 내외 지속적으로 생산함. 적과(摘果, 나무를 보호하고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 등 의도적으로 생산을 조절하는 경우 수세(樹勢, 나무의 자람새로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는 정도를 의미) 약화로 생산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함

195) 우리나라의 2023년 연평균기온은 13.7℃로 역대 최고를 기록('76년 이후)하였고, 기온 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의 3배 수준. '16~'20년 이상기상은 '06~'15년 대비 1.5배 증가

196) 2023년 사과 생산량은 39만 4,000톤으로 전년대비 30.3% 감소하였음
* 사과 생산량 : ('19) 535천톤 → ('20) 422 → ('21) 516 → ('22) 566 → ('23) 394

의 도입이 필요한바,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비축사업'과 목적, 사업내용 등이 유사하면서도, 운영 방식 및 운영 주체는 상이한 것으로 보임.

두 사업 모두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종 산물인 농산물을 매입·보관하여 가격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

그러나 '비축사업'의 경우 수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식품부 예산(저장품매입비)으로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매입·보관·방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반면, 동 사업의 경우 민간 APC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매입·보관하고, 보관·방출에 소요되는 비용(매입 및 방출 가격 간의 차이, 보관비, 운송비 등)을 농식품부 예산(민간경상보조)으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비축사업과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 비교】

구 분	비축사업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
목적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수급안정을 위해 최종 산물인 농산물을 매입·보관하여 가격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	

구 분	비축사업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
운영주체	(위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조) 농협경제지주
운영방식	농식품부 예산(저장품매입비)으로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매입·보관·방출하는 방식	민간 APC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매입·보관하고, 보관·방출에 소요되는 비용(가격차, 보관비, 운송비 등)을 농식품부 예산으로 보조하는 방식
예산내역	① 농산물 매입비용(저장품매입비) ② aT 위탁수수료(민간경상보조) ③ 시설 및 설비 관련 비용(기타)	① 농산물 매입·방출 가격차(민간경상보조) ② 보관료, 운송비 등(민간경상보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4. 10. 19.

이와 같이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을 기존 비축사업과 운영 방식 및 운영 주체 등을 상이하게 설계한 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임.

즉,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농산물 매입 비용[197]은 민간(민간 APC)의 재원을 활용하고, 저장·운송·할인공급 등에 필요한 재원만 농식품부가 부담하는 것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의 사업 수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비축사업과 별도로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 운영의 유연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97) '비축사업'은 원물 매입 비용 전액이 '저장품매입비'로 편성되어 있음.

비축사업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따라 비축·방출하는 품목 간, 방식(수매 또는 수입) 간 조정이 가능한 구조임. 따라서 사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축사업의 품목에 사과를 추가하는 경우, 사과의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따라 매입·비축·방출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비축사업과 별도로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품목(사과)과 방식(수매)을 특정함으로써, 사과의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대한 농식품부 대응의 유연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농식품부는 신규 추진되는 과실지정출하지원 사업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고려하여, 동 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농지관리기금

가. 개 요

□ 농지관리기금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1조 6,774억원(△41.9%) 감소한 2조 3,289억원임.

□ 2025년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보전부담금(7,483억원), 융자원금 회수(4,604억원) 등 자체수입으로 1조 3,924억원, 정부내부수입 7,111억원, 여유자금회수 2,254억원 등을 통해 총 2조 3,289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농가 경영회생 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대단위농업개발, 농지연금, 민간의 해외농업 등을 위한 각종 기금사업으로 1조 8,265억원을 지출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에 2,000억원을 예탁하고 남는 여유자금 3,024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2025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24계획		'25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16,976	16,976	13,924	△3,052	△18.0
	○ 농지보전부담금	10,577	10,577	7,483	△3,094	△29.3
	○ 융자원금회수	4,604	4,604	4,604	-	-
	○ 조성토지매각대	235	235	235	-	-
	○ 토지임대료 등	123	123	124	1	0.8
	○ 기타이자수입 등	1,437	1,437	1,478	41	2.9
	2. 정부내부수입	18,909	18,909	7,111	△11,798	△62.4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18,226	18,226	7,000	△11,226	△61.6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683	683	111	△572	△83.7
	3. 여유자금회수	4,178	4,178	2,254	△1,924	△46.1
수입 계		40,063	40,063	23,289	△16,774	△41.9
지출	1. 일반지출	20,237	20,237	18,265	△1,972	△9.7
	○ 사업비	19,594	19,594	17,621	△1,973	△10.1
	- 경영회생지원	2,337	2,337	1,824	△513	△22.0
	- 맞춤형농지지원	12,803	12,803	11,516	△1,287	△10.1
	- 농가소득안정	2,574	2,574	2,604	30	1.2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1,754	1,754	1,560	△194	△11.1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97	97	88	△9	△9.3
	- 농지관리정보화	29	29	29	-	-
	○ 기금운영비	643	643	644	1	0.2
	2. 정부내부지출	11,718	11,718	2,000	△9,718	△82.9
	○ 회계기금간거래	1,718	1,718	-	△1,718	순감
	○ 공자기금예탁금	10,000	10,000	2,000	△8,000	△80.0
	3. 여유자금운용	8,108	8,108	3,024	△5,084	△62.7
지출 계		40,063	40,063	23,289	△16,774	△41.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맞춤형농지지원(융자):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업계획 변경 지양 등 필요

○ 농식품부가 2024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 수행 도중 지원대상을 청년농에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 변경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농식품부가 2025년 내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 완료라는 목표 달성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계별 소요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맞춤형 농지지원(융자) 사업은 고령은퇴·이농·직업전환 및 비농업인(상속 등) 소유농지 등 기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임차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의 이용효율화, 영농규모화, 농업구조 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보다 1,278억 2,000만원(△10.3%) 감액된 1조, 1,13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198].

【2025년도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맞춤형농지지원(융자)	844,915	1,241,260	911,063	1,113,440	△127,820	△10.3

198)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융자) (1160-350)

(나) 검토의견

□ 맞춤형 농지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생산기반을 정비[199]함으로써 농업법인이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에 신규 추진된 동 사업은 당초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그런데 2024년 6월 5일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농업법인이 매입한 후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고 일정 면적의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청년농 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변경은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사항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200]를 활용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필요성에 따라 농업법인이 해당 펀드의 투자를 받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임.[201]

---

199) 스마트팜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배수로 및 진입로, 전기·통신시설 등 구축

2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가 모펀드를 정부재정(1천억원)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천억원) 등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2024년 1월에 출범하였음.

201)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재부 주관으로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법인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펀드 활용 SPC(특수목적법인)의 농지 매입 불가 및 사업 참여에 한계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계획 변경 전후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내용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생산기반 정비 후 청년농에게 장기임대·매도 등 창업 지원	농어촌공사가 기반조성한 사업 부지를 농업법인이 민간투자 등을 활용하여 매입한 후 대규모 스마트농업단지 조성(복합개발)
사업규모	5,448백만원, 총 6ha (3ha/개소)	48,000백만원, 총 40ha (20ha/개소)
청년농 지원	농어촌공사가 입주 청년농을 모집하여 임대 및 매매계약 체결하여 지원	농업법인이 매입한 부지 중 일정면적의 부지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지자체는 해당 부지에 스마트팜 시설 보조 등의 방법으로 시설을 건축하여 청년농 지원
사업 추진절차	대상지 선정 및 매입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입주 청년농 공모 및 선정 → 대상지 기반조성(소규모) → 공사와 청년농 간 계약 체결 → 스마트온실 건축	대상지 선정 및 매입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입주 농업법인 공모 및 선정 → 대상지 기반조성(대규모) → 공사와 농업법인간 계약 체결 → 농업법인 부지 일부 지자체 기부채납 → 스마트온실 등 건축

※ 자료 :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제출자료('24.10.4)

(1)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사업계획 변경 지양 등 필요

□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주체가 되어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민이 소유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청년농 등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도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이라는 내역사업명으로 2023년 예산에 신규 편성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 동 사업 수행 도중 지원대상을 청년농에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목적과 달라진 문

가 있어 농업법인이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경함.

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재부의 의견에 따라 사업 규모 확대('23. 6ha → '24. 40ha)로 청년농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스마트팜 시설 투자가 가능한 농업법인을 추가하였음.

그러나 부지의 일정 면적('23: 6ha → '24: 6ha로 동일)은 지자체 기부채납[202]을 통해 청년농에게 지원할 계획이므로, 당초 사업 취지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당초 사업 규모의 확대는 더 많은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대규모 스마트팜 시설 투자가 가능한 농업법인의 사업 참여 필요성은 2024년 사업 예산 확대 편성 시 검토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가 사업 예산을 편성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농업법인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부지에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여 청년농 창업을 지원할 계획임.

농식품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후 농업법인에 부지를 매각한 후에

202) 농식품부에 따르면 부지 매각 농업법인 선정 단계에서 일정 부지(약 3ha)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함을 명시하여 공모하고, 농업법인과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이행 준수를 강화할 계획임.

는 스마트팜 시설 설치(단지 조성 후 약 6개월~1년 가량 소요 예상)와 청년농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 일임할 예정임.

다만, 동 사업의 당초 목적이 청년농 스마트팜 영농 지원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농식품부도 지자체의 스마트팜 시설 설치와 청년농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철저한 관리 등 필요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20억 감액된 180억원이 편성됨.

내역별로 보면 2024년도에 편성되었던 부지매입비는 제외되었고 기반조성비는 전년보다 160억 증액된 18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4예산(9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실집행		(B-A)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30,000	-	18,000	△12,000	△40.0
- 부지매입	28,000	-	-	-	-
- 기반조성	2,000	-	18,000	16,000	80

□ 2024년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4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음.

그런데 2024년 6월 5일에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4년 7월이 되어서야 전북 남원과 전남 고흥 2개소를 대규모 스마트팜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

【 당초 기반조성 사업 계획 및 진행상황 】

기 간	24년 예산 편성 시 계획	소요예산	현재(예정) 진행상황
24.1	사업대상지 선정	-	-
24.4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5억원	-
'245	부지매입	280억원	-
'24.7~9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1.5억원	사업대상지 선정 ('24.7.18): 남원, 고흥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48~12)
'24.10~12	공사발주 및 착공	17억원	부지매입,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25.1~2)
'25.1	기반조성 추진	180억원	공사발주 및 착공, 기반조성 ('25.3~12)
'25.12	준공		준공('25.12)

※ 자료 :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제출자료('24.10.4)

당초 2024년 예산에는 공사발주 및 착공 단계까지 소요되는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안에는 착공 후 준공을 목표로 1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지 선정이 6개월이나 지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4년 10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 중에 있음.

이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기까지는 최소 5개월 이상 지연되어 2025년 3월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5년 예산안의 전액 집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203]임.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부지매입 절차는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여 추진하며, 공사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등 당초 사업기간 내인 202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 다만, 2025년 내 사업 완료라는 목표 달성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계별 소요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감안하여 동 사업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203) 전북 남원의 경우 당초 16ha 규모의 현재의 사업대상지로 공모에 응하여 선정되었으나, 現 사업부지(16.1ha) 조사 결과 문화재 시굴·표본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10월 현재)되어 10월 중 대체부지(20.3ha)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예정임.

10. 축산발전기금

가. 개 요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633억원(6.6%) 증가한 1조 254억원임.

□ 2025년 축산발전기금은 융자원금 회수(4,931억원), 개량사업소 수입(313억원) 등 자체수입으로 6,349억원, 정부내부수입 1,455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2,400억원 등을 통해 총 1조 254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축산물 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 축산업 경쟁력 제고, 친환경 축산지원, 축산물위생안전, 가축방역 등을 위한 각종 기금사업으로 9,089억원, 공자기금 이자상환으로 408억원 등 총 9,497억원을 지출하고, 남는 여유자금 757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2025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24계획		'25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4,756	4,756	6,349	1,593	33.5
	○ 마사회 납입금	950	950	750	△200	△21.1
	○ 대여금 이자 수입	97	97	69	△28	△28.9
	○ 융자원금 회수	2,873	2,873	4,931	2,058	71.6
	○ 기타재산수입 등	836	836	599	△237	△28.3
	2. 정부내부수입(농특회계전입)	1,455	1,455	1,455	0	0.0
	3. 여유자금회수	910	910	50	△860	△94.5
	4. 예수금	2,500	2,500	2,400	△100	△4.0
수입 계		9,621	9,621	10,254	633	6.6
지출	1. 일반지출	9,105	9,167	9,089	△16	△0.2
	○ 사업비	9,088	9,150	9,070	△18	△0.2
	- 축산물수급관리	1,404	1,466	1,320	△84	△6.0
	- 축산기술보급	528	528	491	△37	△7.0
	- 축산업경쟁력제고	4,075	4,075	4,173	98	2.4
	- 친환경축산	1,549	1,549	1,579	30	1.9
	- 축산물품질관리	655	655	615	△40	△6.1
	- 축산물위생안전성	229	229	234	5	2.2
	- 가축방역	648	648	658	10	1.5
	○ 기금운영비	17	17	19	2	11.8
	2. 정부내부지출	302	302	408	106	35.1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302	302	408	106	35.1
	3. 여유자금운용	214	152	757	543	253.7
지출 계		9,621	9,621	10,254	633	6.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선정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기업을 2024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측면 등 그동안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미흡했던 점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은 사료제조업체에 원료구매 또는 제조시설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수입사료 신고단체의 노후 검정장비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보다 116억원(12.9%)이 증액된 101,200백만원이 편성되었음.[204].

【 2025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사료산업종합지원	64,709	89,600	89,494	101,200	11,600	12.9
사료원료구매자금	62,729	89,000	89,000	100,000	11,000	1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2024. 10. 22) 제출

204) 회계(기금)-세부사업 : 축산발전기금-사료산업종합지원(3733-312)

(나) 검토의견

□ 사료산업 종합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료원료구매자금 사업은 사료원료구매자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116억원(12.9%)이 증액된 1,012억원이 편성되었음.[205]

사료원료구매자금 사업은 사료 원료 구매자금의 80%까지 3%의 금리(농업법인 소속기업 2.5%)로 2년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한 「2024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①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원 이하) 우선 지원 및 중견기업-대기업 순 지원, ②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업(「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사료가격 안정기여도가 낮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액 감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205) 회계(기금)-세부사업 : 축산발전기금-사료산업종합지원(3733-312)

규모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 건수가 2019년 9건(28.1%)에서 2024년 23건(45.1%)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였고,

매출액 규모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도 2019년 215억(41.4%)에서 687억(77.2%)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최근 수혜기업 현황(A) 】

(단위: 백만원)

매출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50억 미만	6 (18.8%)	897 (1.7%)	4 (13.3%)	633 (1.3%)	1 (5.0%)	275 (0.7%)	3 (8.1%)	800 (1.3%)	3 (6.8%)	1,240 (2.0%)	5 (9.8%)	2,250 (2.5%)
50억 ~ 100억원 미만	2 (6.3%)	2,125 (4.1%)	4 (13.3%)	3,244 (6.4%)	1 (5.0%)	300 (0.7%)	4 (10.8%)	1,530 (2.4%)	4 (9.1%)	1,814 (2.9%)	4 (7.8%)	1,330 (1.5%)
100억 ~ 1000억원 미만	15 (46.9%)	27,373 (52.8%)	11 (36.7%)	23,087 (45.6%)	13 (65.0%)	21,795 (53.8%)	16 (43.2%)	15,450 (24.6%)	17 (38.6%)	15,745 (25.1%)	19 (37.3%)	16,720 (18.8%)
1000억원 이상	**9 (28.1%)**	**21,494 (41.4%)**	**11 (36.7%)**	**23,658 (46.7%)**	**5 (25.0%)**	**18,162 (44.8%)**	**14 (37.8%)**	**44,969 (71.7%)**	**20 (45.5%)**	**43,950 (70.0%)**	**23 (45.1%)**	**68,700 (77.2%)**
합 계	**32 (100%)**	**51,889 (100%)**	**30 (100%)**	**50,622 (100%)**	**20 (100%)**	**40,532 (100%)**	**37 (100%)**	**62,749 (100%)**	**44 (100%)**	**62,749 (100%)**	**51 (100%)**	**89,000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2024. 10. 22) 제출

□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에 실시한 동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중 1,000억원 이상의 매출액 규모를 가진 기업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2024년도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수혜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상) 현황(B) 】

업체명	매출액(억원)	지원액(백만원)	용도
○○○○	21,667	13,000	사료원료 구매
(주)○○○	18,545	4,300	사료원료 구매
(주)○○	14,108	3,200	사료원료 구매
(주)○○○○	9,006	4,300	사료원료 구매
(주)○○○○○	6,785	2,300	사료원료 구매
(주)○○○○	6,348	3,700	사료원료 구매
(주)○○○	6,154	2,000	사료원료 구매
(주)○○○○	5,644	3,700	사료원료 구매
(주)○○○○○○○	5,518	2,500	사료원료 구매
(주)○○	5,282	1,400	사료원료 구매
(주)○○○○	3,969	2,000	사료원료 구매
(주)○○○○	3,191	3,500	사료원료 구매
(주)○○○○	2,555	1,500	사료원료 구매
(주)○○○○○	2,439	2,300	사료원료 구매
(주)○○○○○	1,908	2,800	사료원료 구매
○○○○○○○○○○	1,755	2,800	사료원료 구매
○○○○○○○○○○	1734	2,800	사료원료 구매
(주)○○○○○	1,654	1,000	사료원료 구매
(주)○○○○	1,612	1,900	사료원료 구매
(주)○○	1,158	1,400	사료원료 구매
○○○○○	1,061	2,800	사료원료 구매
(주)○○○○	1,050	1,300	사료원료 구매
(주)○○○○	1,005	2,200	사료원료 구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2024. 10. 22)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동 사업의 지원 기업 선정 시 사료가격 안정기여도[206]를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체 기업의 평균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사료가격 상승률은 3.9%로 나타났음.

□ 그런데, 2024년도에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일부 기업의 경우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의 사료가격 상승률이 10.1%, 11.7%(대기업), 12.3%(중견기업)로, 상기 평균 사료가격 상승률 보다 3배 안팎으로 상향하여 사료값을 책정하였던 것이 확인되었음.

동 사업의 목적이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사료값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평균 사료가격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동 사업의 목적인 사료가격 안정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일부 기업이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미흡한 관리·감독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기업을 2024년도 지원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측면 등 그동안 동 사업의 추진에 미흡했던 점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6)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사료가격 인상률

2)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건비 별도 편성 및 통합 운영 필요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을 시작으로 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유통정보사업 등 소관 업무가 확대되었으며, 최근 축산물 유통정책의 다각화에 따라 정책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인건비를 별도 편성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관련 품질평가·이력관리 및 유통정보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부사업 중 ① 축산물품질관리, ②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③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구축, ④ 축사시설현대화, ⑤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⑥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음.

【 2025년도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업 예산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합계	59,047	65,194	35,343	61,663	△3,531	△5.4
축산물품질관리	47,294	50,378	27,309	48,560	△1,818	△3.6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5,882	6,054	3,803	6,558	504	8.3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	1,310	1,310	786	1,100	△210	△16.2
축사시설현대화	3,512	6,241	2,500	4,900	△1,341	△21.5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	545	279	545	-	-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189	666	666	미정	미정	미정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860	-	-	-	-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략기획처(2024. 10. 23.) 제출

(나) 검토의견

□ 상기 사업 수행과 관련한 2025년 예산안 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인건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로 인건비가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건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구분 (회계, 기금)
합 계	34,732	36,028	-
축산물품질관리(축산물등급판정)	22,917	23,658	축발기금
축산물품질관리(축산물이력제)	9,700	9,991	축발기금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축산물유통정보조사)	2,115	2,178	축발기금
축사시설현대화(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	-	167	FTA기금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저탄소농축산물인증)	-	34	농특회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략기획처(2024. 10. 23.) 제출

□ 이와 관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초 '89. 4월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수임을 시작으로, '04.12월 축산물이력제 사업을 수임하고, '12.3월 축산물유통조사사업을 수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 운영 관련 사업을 신설하지 못하였고, 신규사업 수임에 따른 인력 반영 시 해당 사업 내에 인건비를 별도 편성함에 따라, 현재는 각 사업별로 인건비를 별도 운영 중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 특성[207]상 현장 업무가 많고, 각 내역사업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인사이동 등 내역사업 간 인력 재편성 시 인건비 관리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아래 3개 사업의 업무영역은 사업수행의 공간과 시간이 중첩되어, 사업별 인원을 구분하여 인력 및 예산 운용 시 운영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의견임.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업별·유통단계별(생산-유통-도매) 추진 업무 현황 】

구분(장소)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유통조사
생산	농장	·가축개량을 위한 등급 결과 환류(현장컨설팅 등)	·신고접수 및 이행 실태 점검(귀표부착 사육현황 등 사실관계 확인)	·산지가격·경로·비용 조사
	도축장 GP[208]	·축산물 등급판정(소·돼지·닭·오리·계란·말·꿀 등)	·DNA검사용 보관시료 채취 ·신고접수 및 이행 실태 점검(도축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등 사실관계 확인)	·유통가격·경로·비용 조사 (가축거래상인·도축업자 등)
유통	도매업 (포장처리)	·등급 축산물 유통단계 모니터링(둔갑판매 방지 등)	·DNA검사용 검사시료 채취 ·신고접수 및 이행 실태 점검(포장처리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등 사실관계 확인)	·유통가격·경로·비용 조사 (포장처리업·식용란선별업 등)
소비	소매업 (판매)	·등급 축산물 판매단계 모니터링(둔갑판매 방지 등)	·신고접수 및 이행 실태 점검(판매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등 사실관계 확인)	·유통가격·경로·비용 조사 (백화점·일반정육점·마트 등) ·소비실태(판매동향 등) 조사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략기획처(2024. 10. 23.) 제출

207) 등급판정·이력관리 등 대부분 직접추진 사업이며, 전국에 산재하여 업무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한 직원이 등급·이력·유통 업무를 병행

208) Grading & Packing(계란유통센터)

□ 따라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위탁 또는 보조형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과 같이 ‘기관 운영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신설하여 인건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타기관 인건비 편성 현황 】

기관명	인건비 편성 방식	기타(관련 세부사업명 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별도 세부사업 편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별도 세부사업 편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별도 세부사업 편성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략기획처(2024. 10. 23.) 제출

3) 가축분뇨처리지원 :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및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에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보조금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관련 미흡한 관리·감독에 따라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경과 및 사유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2025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실집행률 부진이 반복될 시 동 사업 계획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여 자연순환 농업의 활성화 및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보다 33억 4,900만원(4.9%) 증액된 72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209].

【 2025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계획(7월 기준)		'25 계획안 (B)	증 감	
		당초(A)	집행		(B-A)	%
가축분뇨처리지원	76,848	68,946	43,210	72,295	3,349	4.9
축산악취개선	39,336	26,460	17,613	26,460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2024. 10. 25.) 제출

209) 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3735-329, 330)

나) 검토의견

□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축산악취개선 사업은 축산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 단위 축산악취 개선계획에 따른 축산농가의 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및 융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2024년도와 동일한 26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의 최근 3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이 감소하고 있고, 지속적인 실집행 부진에 따라 3년 평균 125억 1,900만원의 이월액 및 14억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2021~2024. 9. 축산악취 개선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수정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보조	13,780	16,679	16,679	16,679	8,476	25,155	18,928	5,654	573	75.2
	융자	34,449	37,620	37,620	37,620	9,105	46,725	38,859	7,454	412	83.2
	소계	**48,229**	54,299	54,299	54,299	17,581	71,880	57,787	**13,108**	**985**	**80.4**
2022	보조	14,525	-	14,714	14,714	5,654	20,368	16,965	2,938	465	83.3
	융자	32,713	-	32,472	32,472	7,454	39,926	30,733	8,801	392	77.0
	소계	**47,238**	-	47,186	47,186	13,108	60,294	47,698	**11,739**	**857**	**79.1**
2023	보조	10,800	11,239	11,239	11,239	2,938	14,177	9,842	3,926	409	69.4
	융자	27,000	28,097	28,097	28,097	8,801	36,898	26,103	8,785	2,010	70.7
	소계	**37,800**	39,336	39,336	39,336	11,739	51,075	35,945	**12,711**	**2,419**	**70.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2024. 10. 25.) 제출

□ 동 사업의 2023년도 지자체별 보조금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 10월말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보조금을 3차로 교부하면서 상대적으로 실집행률이 양호했던 경기, 충남, 경남 외에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5개 지자체에도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2023년도 지자체별 축산악취 개선사업 보조금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교부차수 및 일자, 금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1차	2차	3차						
경기	567 (2.24)	441 (6.22)	252 (10.26)	387	1,648	1,549	81	18	94.%
강원	395 (2.24)	308 (6.19)	**176 (10.26)**	221	1,100	694	406	-	**63.1%**
충북	224 (2.24)	274 (6.22)		4	502	272	230	-	**54.2%**
충남	584 (2.24)	454 (6.22)	260 (10.26)	354	1,652	1,369	282	1	82.9%
전북	642 (2.24)	751 (6.22)	**473 (10.26)**	245	2,111	931	1,177	3	**44.1%**
전남	778 (2.24)	727 (6.22)	**376 (10.26)**	348	2,229	1,410	682	137	**63.3%**
경북	455 (2.24)	758 (6.22)	**303 (10.26)**	1,031	2,547	1,756	749	42	**68.9%**
경남	610 (2.24)	475 (6.22)	271 (10.26)	126	1,482	1,293	176	13	87.2%
제주	308 (2.24)	239 (6.22)	**137 (10.26)**	222	906	568	143	195	**62.7%**
			합 계	2,938	14,177	9,842	3,926	409	**69.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2024. 10. 25.) 제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금의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기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10]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엄격한 사전검토를 규정하고 있음.[211]

---

2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교부하여 상당한 불용액 및 이월액[212]이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보조금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4. 9월말 현재 동 사업의 실집행률은 53.7%[213]로, 예년과 같이 저조할 우려가 있음.

【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2024. 9월말 실집행 현황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수정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4.9	보조	7,560	-	7,560	4,983	3,926	8,909	6,357	-	-	71.4%
	융자	18,900	-	18,900	12,630	8,785	21,415	9,930	-	-	46.4%
	합계	26,460	-	26,460	17,613	12,711	30,324	16,287	-	-	53.7%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2024. 10. 25.) 제출

211)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 97)
(6) 보조금 교부 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12) 이월액: 39억 2,600만원 / 불용액: 4억 900만원

213) 2023. 9월말 기준 실집행률: 24.1%

□ 이와 같은 실집행의 부진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연례적·반복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이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동 사업 관련 미흡한 관리·감독에 따라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경과 및 사유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2025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실집행률 부진 시 동 사업의 계획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가축위생방역지원: 안전예산 확충 등의 방안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방역직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안전예산 확충 등의 방안을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은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9억 5,500만원(1.5%)이 증액된 65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214]

【2025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가축위생방역지원	68,782	64,837	45,023	65,792	955	1.5
방역본부 운영지원	34,602	34,774	22,790	35,188	414	1.2

214) 회계(기금)-세부사업 : 축산발전기금-가축위생방역지원(3941-342)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 중 방역본부 운영지원 사업은 가축방역정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4억 1,400만원(1.2%)이 증액된 35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방역본부 운영지원 내역사업 산출내역 】

□ 방역본부 운영지원 내역사업(35,188백만원)

○ 인건비 10,728백만원= 184명×4.86백만원×12월×100%

○ 운영비 7,208백만원= 56개소×10.73백만원×12월×100%

○ 전화예찰사업 8,851백만원= 203명×3.63백만원×12월×100%

○ 가축질병근절 8,401백만원

- 방역재료 3,553백만원
- 긴급방역지원 450백만원
- 철새AI검사 1,100백만원
- 가축질병홍보 1,240백만원
- 지자체평가 400백만원
- 신고포상금 50백만원
- 방역전문가평가 60백만원
- 드론운영전담팀 1,548백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215]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①「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사업 및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업무와 ②「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위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216]

그 조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본부와 전국에 산재한 9개 도 본부[217]로 구성되어 있고, 총 1,286명의 정원으로 운영됨. 이중 임원(1명) 및 행정직(54명)은 일반 정규직, 이들을 제외한 방역직·위생직·예찰직 등(1,231명)은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신분임.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정원 】

(단위: 명)

총계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공무직)								
	소계	임원	행정직	소계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정보직	안전직	사무운영직	예찰직	청사관리직
1,286	55	1	54	1,231	496	403	73	4	11	37	203	4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2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1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①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아니고, ②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상황의 기간은 2022년 7일, 2023년 48일 및 2024년(10월초 기준) 59일로, 가축전염병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가축방역체계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가축전염병 예찰과 발생시 초동 대응 등의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본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처우 문제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발생 등 방역본부가 가축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내외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 사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본부의 인력 역시 방역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데,

가령 방역직은 대동물 및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보정끈에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 위생직은 검사도구(칼 등)에 베이거나 도축체에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 검역직은 지게차 부딪힘 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방역본부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안전사고 수	34	16	28	22	20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이에 방역본부는 동 사업의 방역본부 운영지원 내역사업 중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예산을 마련하여, 사업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방역본부 안전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예산액	4,129	4,129	4,129	4,488	4,493
집행액	4,129	4,126	4,129	4,488	3,163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025년 예산안 내 방역본부 안전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안전예산 활용 용도	예산(안)
방역본부 운영지원	인건비	안전업무 수행직원 인건비	576
	운영비	안전관련 교육·훈련, 안전진단 점검 등	364
	가축질병근절	안전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3,553
합계			4,493

※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다만, 방역본부의 안전예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안전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닌, 개별 내내역사업비에서 마련하고 있음.

□ 방역본부의 안전예산은 동 내역사업의 예산 중 ① 인건비에서 안전업무 수행직원의 인건비를 마련하고, ② 운영비에서 안전 관련 교육·훈련, 안전진단 점검 등의 관리비를 마련하며, ③ 가축질병근절 내내역사업의 방역재료구입비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구(가슴보호대, 안전화 등) 구입비를 마련하여 구성되고 있는데,

방역본부가 자체적으로 안전예산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목적하에 별도로 편성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방역본부의 안전예산 편성액 수준이 최근 5년간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방역본부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본부 방역직 등 인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예산은 최근 5년 동안 41억 2,900만원('20년)에서 44억 9,300만원('24년)으로 변화한바, 그 수준이 증가는 하였으나 크게 진전되지는 못하여 안전예산의 수준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안전예산의 마련 및 운영에도 불구하고 방역직 등 인력이 안전사고 발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방역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방역본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측면 역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은 방역본부의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방역직 등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방역본부의 안전예산 확충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가. 개 요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기능증진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851억원(2.8%) 증가한 3조 1,045억원임.

□ 2025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정부내부수입 농특회계전입금 2조 9,872억원, 자체수입 71억원, 여유자금 회수 1,102억원을 통해 총 3조 1,045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공익기능증진직불(2조 9,536억원), 직불제이행점검(300억원), 사업관리비(113억원) 등 각종 기금사업으로 2조 9,951억원, 남는 여유자금 1,094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2025년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24계획		'25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48	48	71	23	47.9
	○ 기타재산수입	8	8	31	23	287.5
	○ 과태료	20	20	20	-	-
	○ 법정부담금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	20	20	-	-
	2. 정부내부수입	29,872	29,872	29,872	-	-
	○ 농특회계전입금	29,872	29,872	29,872	-	-
	3. 여유자금회수	274	274	1,102	828	302.2
수입 계		30,194	30,194	31,045	851	2.8
지출	1. 일반지출	29,092	29,092	29,951	859	3.0
	○ 사업비	29,090	29,090	29,949	859	3.0
	- 직불제이행점검	284	284	300	16	5.6
	- 공익기능증진직불	28,702	28,702	29,536	834	2.9
	- 사업관리비	104	104	113	9	8.7
	○ 기금운영비	2	2	2	-	-
	2. 정부내부지출	-	-	-	-	-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	-	-	-	-
	○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	-	-	-	-
	3. 여유자금운용	1,102	1,102	1,094	△8	△0.7
지출 계		30,194	30,194	31,045	851	2.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공익기능증진직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 및 공익직불사업 예산의 변동성 최소화 필요

○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온실감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탄소농업 직불금을 확대해나갈 예정인바, 2025년 사업 예산의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탄소 농업활동에 대한 충분한 수요 확보와 이행 및 증빙방법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는 향후 공익직불사업의 농특회계로의 이관을 위하여 선택형 직불제를 체계화함으로써 공익직불사업 예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공익기능증진 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도와 경관보전·친환경·전략작물 재배 등 향상된 공익기능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보다 834억 3,800만원(2.9%)이 증액된 2조 9,536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218].

【2025년도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공익기능증진직불	2,508,129	2,870,184	12,274	2,953,622	83,438	2.9

218) 회계(기금)-세부사업 :공익직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나) 검토의견

(1)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2025년 공익기능증진 직불사업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선택형 공익직불제 예산은 2024년보다 834억 3,800만원이 증액된 3,20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공익기능증진 직불 내역사업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예산(A)	'25 예산안 (B)	증 감	
				(B-A)	%
공익기능증진직불	2,508,129	2,870,184	2,953,622	83,438	2.9
-기본형공익직불제	2,369,601	2,633,487	2,633,487	-	-
-선택형공익직불제	138,528	236,697	320,135	83,438	35.3
1) 경관보전직불	8,474	16,830	16,830	-	-
2) 친환경농업직불	21,020	22,832	31,913	9,081	39.8
3) 친환경축산직불	1,035	1,585	4,085	2,500	157.7
4) 전략작물직불	107,999	186,450	244,000	57,550	30.9
5) 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	-	9,000	23,307	14,307	159.0

선택형 공익직불제 중에는 경관보전직불을 제외한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전략작물직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특히 2024년에 신규로 도입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3억 700만원(159%) 증액된 233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19]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원(국비100%)
지원대상	○ (경종)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축산)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
지원기준 (’25년 예산안 기준)	○ (경종) 중간물떼기 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가을갈이 46만원/ha ○ (축산) 저메탄사료 2.5~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0.05~1만원/두/년, 분뇨처리방식개선 0.18만원/톤/년
예산	○ (경종) ‘24년 4,057백만원, ’25년(안) 13,247백만원 ○ (축산) ‘24년 4,943백만원 ’25년(안) 10,060백만원

※ 자료 :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및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제출자료(’24.10.4)

동 사업은 경종[220] 분야와 축산 분야 지원으로 구분되며, 경종 분야에서는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를, 축산 분야에서는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처리방식개선을 저탄소 영농활동으로 보아 지원함.

219) 이는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따른 것으로, 2030 NDC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발표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임.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2030년까지 ’18년 22.2백만톤 대비 22.2% 감축한 17.2백만톤 배출이 목표임.

220) 경종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작물을 가꾸는 일이라는 뜻으로 축산과 대비됨.

【저탄소 영농활동별 탄소 감축효과】

구분	활동명	탄소 감축효과
경종	논물관리	○모내기 이후 2주 이상 용수 공급중단(중간물떼기), 8~9월 논물 얕게 걸러대기(2~3cm)를 통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여 담수기 혐기성 상태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하여 탄소를 토양에 고정시킴으로써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 * 바이오차(Biochar = Biomass + charcoal) : 바이오매스(목질계, 초본계 등)를 고온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 또는 가스화하여 탄화시킨 고체물질
	가을갈이	○가을에 벼 수확 후 잔사 등을 갈아엎어 넣어줌으로써 분해를 촉진하여 다음 해 담수기에 논에서 볏짚의 혐기성 분해로 인한 메탄 배출량 감축
축산	저메탄사료 급여	○관행 사료 대비 소의 반추위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최소 10% 이상 저감
	질소저감사료 급여	○관행사료 대비 적정단백질을 공급하여 잉여 질소 배출 저감 * 현행기준 대비 조단백질 함량을 1%p 저감 시, 분뇨 내 질소량 7.7%p 저감('21, 서울대)
	분뇨처리방식 개선	○강제송풍·기계교반 도입 시 현행 단순 퇴비 방식 대비 한육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9.3% 저감

※ 자료 :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및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제출자료('24.10.4)

2025년에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논물관리·질소저감사료 급여 등 기존 활동의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경종 및 축산에서 각각 가을갈이와 분뇨처리방식 개선을 신규활동으로 추가하였기 때문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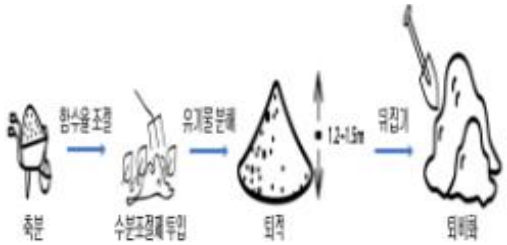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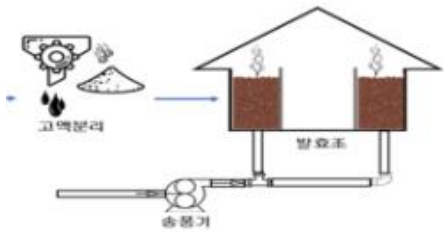
	'24	'25
합계	**9,000**	**23,307**
경종	4,057	13,247
	▪(논물관리) **5,265ha** × 31만원/ha × 국비 100% = 1,632 ▪(바이오차) 5,265ha × 36.4만원/ha × 국비 100% = 1,917 ▪ (운영관리비) 경종 508백만원	▪(논물관리) **25,710ha** × 31만원/ha × 국비 100% = 7,970 ▪(바이오차) 5,265ha × 36.4만원/ha × 국비 100% = 1,917 ▪ **(가을갈이) 5,000ha** × 46만원/ha × 국비 100% = 2,300 ▪ (운영관리비) 경종 1,060
축산	4,943	10,060
	▪(저메탄사료) (한육우 9만 두 × 2.5만원/두 × 국비 100%) + (젖소 0.9만 두 × 5만원/두 × 국비 100%) = 2,700 ▪(질소저감사료) 돼지 38.5만 두 × 0.5만원/두 × 국비 100% = 1,925 ▪ (운영관리비) 축산 318	▪(저메탄사료) (한육우 9만 두 × 2.5만원/두 × 국비 100%) + (젖소 0.9만 두 × 5만원/두 × 국비 100%) = 2,700 ▪(질소저감사료) (**한육우 10만 두** × 1만원/두 × 국비 100%) + (돼지 38.5만 두 × 0.5만원/두 × 국비 100%) + (**신란계 100만 수** × 0.05만원/수 × 국비 100%) = 3,425 ▪ **(분뇨처리방식개선) 퇴비 189만 톤** × 1,800원/톤 × 국비 100% = 3,402 ▪ (운영관리비) 축산 533

※ 자료 :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및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제출자료('24.10.4)

이 중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처리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순 퇴적 방식 대비 49.3% 저감[221]되는 것으로 예측됨.

221) 국립축산과학원, 2023년

【분뇨처리방식 비교】

	재래식 퇴비화	교반·송풍시설
공정도		
원리	퇴적된 분뇨더미에 물리적 뒤집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여 호기성 미생물 작용 유도, 산소공급 불충분으로 메탄 발생	재래식 퇴비화에서 강제 송풍 및 기계 교반을 추가함으로써, 퇴비 내부 산소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혐기성 발효(메탄 발생) 방지

※ 자료 :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제출자료('24.10.4)

□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222]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저탄소 농업 전환 촉진이 필요함에 따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신규활동을 추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회 역시 저탄소 영농활동에 대한 공익직불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최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0.22)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선택직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223]하기도 하였음.

222) 이는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따른 것으로, 2030 NDC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발표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임.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2030년까지 '18년 22.2백만톤 대비 22.2% 감축한 17.2백만톤 배출이 목표임.

□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 규모를 보다 확대할 계획인바, 2025년 사업 예산의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경종 분야의 논물관리** 지원 면적은 2024년 5,265ha에서 2025년 2만 5,710ha로 약 5배 증가하였음.

농식품부는 2024년 신청 현황 및 농업 현장을 고려했을 때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신청 면적이 1만 4,052ha임을 고려[224]할 때 2025년 목표 면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동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축산 분야에 새로 도입된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의 경우 2025년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이하 '교반·송풍시설'이라 함)를 추가하여 처리한 189만 톤의 퇴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

223) 탄소중립 선택직불제도 관련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을----------.

224) 농식품부는 2025년 사업 참여 대상 단체의 면적 기준을 50ha에서 20ha로 완화하므로 2025년보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획되었음.

농식품부에 따르면 목표 물량 189만톤을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등으로 나눈 약 4,000호[225]의 축산농가가 동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만, 동 사업은 이미 교반·송풍시설을 설치하여 퇴비를 처리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021년에 조사[226]한 교반·송풍시설 설치 농가는 퇴비사 운영 농가의 5.9%인 4,000호였던 점을 고려[227]할 때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식품부는 동 신규활동 지원 추진 시 교반·송풍시설 설치로 인한 축산 악취 저감 및 탄소 감축 효과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직불금 지급을 위해 영농활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다른 직불제 사업과 달리 그 방식은 자가증빙[228]에 기반하고 있음.

즉, 농업인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후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웹사이트로 제출하면 관리기관이 서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일부 현장을 선정·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식임.

---

225) 4천호=189만톤 ÷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12.85kg/일/두 × 365일/1년 × 농가 평균 사육두수 100두/호)
226) 축산환경조사, 2022년
227)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 기준으로는 정확한 농가수는 파악되지 않음.
228) 개별 농업인별로 활동 이행 시기가 다르므로 활동 이행 후 농업인 본인의 자가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임.

사업 대상자 중 고령농이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대상 확대 시 활동 이행 및 증빙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규활동 이행 및 자가증빙 방법과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농특회계로의 이관을 위한 공익직불사업 예산 변동성 최소화 필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공익직불기금'이라 함)의 수입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예산은 전년보다 850억 6,200만원(2.8%) 증액된 3조 1,044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농업농촌공익직불기금 수입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결산	2024계획액		2025년도 계획안	증 감	
		당초(A)	수정		B-A	%
총 계	2,781,691	3,019,399	3,019,399	3,104,461	85,062	2.8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7,143	800	800	3,076	2,276	284.5
56 벌금,몰수금 및과태료	-	2,000	2,000	2,000	-	-
59 기타 경상 이전수입	34,427	1,990	1,990	1,990	-	-
85 정부예금 회수	68,249	27,396	27,396	110,182	82,786	302.2
91 전입금	2,671,872	2,987,213	2,987,213	2,987,213	-	-

2025년 기준 공익직불기금 전체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전입금과 정부예금 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9.8%에 달하고 있고, 최근 5년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자체수입은 1% 미만임.

【2025년도 농업농촌공익직불기금 수입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년 계획
총 계	2,418,568 (100)	2,406,242 (100)	2,781,691 (100)	3,019,399 (100)	3,104,461 (100)
자체수입	2,783 (0.1)	18,171 (0.8)	41,570 (1.5)	4,790 (0.2)	7,066 (0.2)
54. 기타이자 수입및재산수입	818	1,268	7,143	800	3,076
56 벌금,몰수금 및과태료	-	-	-	2,000	2,000
59 기타 경상 이전수입	1,965	16,903	34,427	1,990	1,990
자체 외 수입	2,415,785 (99.9)	2,388,071 (99.2)	2,740,121 (98.5)	3,014,609 (99.8)	3,097,395 (99.8)
85 정부예금 회수	23,576	46,223	68,249	27,396	110,182
91 전입금	2,391,906	2,341,848	2,671,872	2,987,213	2,987,213

* 2021~2023년도는 수납액 기준, 2024~2025년은 계획액 기준

※ 자료 :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제출자료('24.10.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229]에 따라 2020년 설치된 공익직불기금은 수입의 대부분을 특별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

즉,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는 공익직불기금에 대하여 조건부존치를 결정하면서 시판용쌀 양곡수입이익금 등 자체수입액 증가 혹은 신규수입원 발굴이 요구되며, 계속해서 자체수입액이 부족할 경우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런데 시판용쌀 양곡수입이익금은 2017년도 및 2019년도 TRQ 밥쌀용

2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쌀 판매완료에 따른 정산 이익 201억 2,800만원이 2023년도 공익직불기금 수입으로 납입된 것 외에는 최근 7년 동안 수입이 발생한 적이 없음.

정산 이익은 TRQ 쌀 판매 완료이후 검역비, 보관료, 보험료 등 관리비용을 제한 금액이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높은 관리비용으로 수익 발생이 저조[230]하여 2024년 및 2025년에도 수익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또한, 약 3조원인 공익직불기금을 충당할 만한 신규수입원 발굴도 사실상 어려워 향후 공익직불기금을 폐지하고 공익직불사업을 농특회계로 이관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임.

□ 당초 공익직불사업은 자금의 신축적 운용 필요성[231]에서 기금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사업의 농특회계로의 이관을 위하여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를 적극 발굴하여 선택형 직불제를 체계화함으로써 공익직불사업 예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230) 최근 국내 쌀 값 하락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물량이 감소하여 장기 보관에 따른 보관비용 증가 및 오래된 쌀의 주정용 저가 처분으로 인해 판매수입이 감소함.

231)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변경이 가능한 점에서 특별회계와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후 략>

1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가. 개 요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1,060억원(△18.0%) 감소한 4,826억원임.

□ 2025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농산물 공매납입금(1,472억원)과 융자원리금 회수(1,944억원) 등 자체수입으로 3,416억원, 여유자금회수 1,410억원을 통해 총 4,826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직접피해지원, 경쟁력 제고지원 등 각종 기금사업으로 2,889억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1,937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자원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24계획		'25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4,310	4,310	3,416	△894	△20.7
	○ 법정부담금	925	925	917	△8	△0.9
	○ 기타경상이전수입	444	444	444	-	-
	○ 융자원금회수 등	2,650	2,650	1,944	△706	△26.6
	○ 이자수입 등	291	291	111	△180	△61.9
	2. 정부내부수입 (농특회계전입금)	-	-	-	-	-
	3. 여유자금회수	1,576	1,576	1,410	△166	△10.5
수입 계		5,886	5,886	4,826	△1,060	△18.0
지출	1. 일반지출	3,371	3,371	2,889	△482	△14.3
	○ 사업비	3,353	3,353	2,872	△481	△14.3
	- 직접피해지원	89	89	249	160	179.8
	- 농식품창업지원	550	550	-	순감	순감
	- 농기자재산업육성	103	103	98	△5	△4.9
	- 원예산업경쟁력강화	1,145	1,145	1,190	45	3.9
	- 축산업경쟁력제고	70	70	-	순감	순감
	- 축사시설현대화	1,396	1,396	1,335	△61	△4.4
	○ 기금운영비	18	18	17	△1	△5.6
	2. 여유자금운용	2,515	2,515	1,937	△578	△23.0
지출 계		5,886	5,886	4,826	△1,060	△18.0

1) 축사시설 현대화 :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및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에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보조금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관련한 미흡한 관리·감독에 따라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경과 및 사유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2025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향후 실집행률 부진이 반복될 시 동 사업 계획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시설을 개선, ICT 융복합 시설·장비,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ICT기반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제시설을 지원하여 축산의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미래지향적 축산모델을 제시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대비 61억 2,600만원(△4.4%)이 감액된 1,335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232].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계획(7월 기준)		'25 계획안(B)	증 감	
		당초(A)	집행		(B-A)	%
축사시설현대화	148,525	139,643	87,338	133,517	△6,126	△4.4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85,725	63,193	60,398	49,721	△13,472	△21.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2024. 10. 27.) 제출

232) 회계(기금)-세부사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사시설현대화(융자)(3760-332), 축사시설현대화(3760-346)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방역 강화, 탄소 배출 저감 등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밀사육[233]과 과학영농에 필요한 스마트 축산 장비(하드웨어) 및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임.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 경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 관련 장비의 보급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도에 최초 도입된 이 사업은 보조 및 융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대비 134억 7,200만원(△21.3%)이 감액된 497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최근 3년(2021~2023)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평균 38.5%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임에 따라, 3년 평균 327억 7,600만원의 이월액 및 13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4년 9월말 현재 실집행률 또한 12.2%로 현저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연례적으로 이월과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2019~2023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보조	32,046	32,046	32,046	17,078	49,124	14,713	18,416	2,468	30.0
	융자	42,000	42,000	42,000	27,407	69,407	24,522	24,589	-	35.3
	합계	74,046	74,046	74,046	44,485	118,531	39,235	43,005	2,468	33.1
2022	보조	29,400	29,400	29,400	5,857	35,257	21,486	757	-	60.9
	융자	40,875	40,875	40,875	24,589	65,464	23,859	25,456	-	36.4
	합계	70,275	70,275	70,275	30,446	100,721	45,345	26,213	-	45.0
2023	보조	36,198	33,613	33,613	15,256	48,869	29,906	15,268	1,683	61.2
	융자	49,527	47,385	47,385	25,456	72,841	15,506	13,842	-	21.3
	합계	85,725	80,998	80,998	40,712	121,710	45,412	29,110	1,683	37.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2024. 10. 27.) 제출

233) 축사 내 설치된 각종 장비(IoT)가 ① 사육·환경·질병 등의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②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③ 현장을 진단·제어, 개선하는 농장

□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각 지역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8개 지자체[234]에서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전남·경북·대전·울산의 경우 실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집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실정임.

【 2023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자체별 보조금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지자체	교부총액	교부차수 및 일자, 금액			전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1차	2차	3차						
경기	6,860	'23.4.19. (1,200)	'23.8.9. (5,010)	**'23.11.28. (650)**	5,076	11,936	6,860	**2,960**	**108**	**57.5%**
강원	1,766	'23.4.19. (210)	'23.8.9. (1,006)	'23.11.28. (550)	705	2,471	2,111	**1,717**	-	85.4%
충북	2,600	'23.4.19. (420)	'23.8.9. (1,680)	**'23.11.28. (500)**	1,320	3,920	2,600	**1,923**	**249**	**66.3%**
충남	2,890	'23.4.19. (510)	'23.8.9. (2,130)	'23.11.28. (250)	1,206	4,096	3,827	**1,081**	**331**	93.4%
전북	2,650	'23.4.19. (510)	'23.8.9. (2,040)	**'23.11.28. (100)**	2,307	4,957	2,409	**2,196**	**213**	**48.6%**
전남	3,780	'23.4.19. (720)	'23.8.9. (2,910)	**'23.11.28. (150)**	1,664	5,444	2,018	**1,633**	**535**	**37.1%**
경북	3,750	'23.4.19. (600)	'23.8.9. (2,400)	**'23.11.28. (750)**	1,927	5,677	1,130	**1,335**	**91**	**19.9%**
경남	2,460	'23.4.19. (450)	'23.8.9. (1,860)	**'23.11.28. (150)**	870	3,330	2,310	**1,906**	**3**	**69.4%**
제주	1,510	'23.4.19. (300)	'23.8.9. (1,110)	'23.11.28. (100)	44	1,554	1,510	**295**	**26**	97.2%
대전	39	'23.8.9. (38)	'23.8.9. (1)	-	-	39	0.4	**38**	**0.6**	**1.0%**
세종	60	'23.8.9. (59)	'23.8.9. (1)	-	119	179	174	-	-	97.2%
울산	210	'23.8.9. (209)	'23.8.9. (1)	-	-	210	84	-	**126**	**40%**
총 계	28,575				15,238	43,813	25,033.4	**15,084**	**1,682.6**	**57.1%**

※ 음영: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2024. 10. 24) 제출

234)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전, 울산

□ 또한, 앞의 표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3. 11월말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실집행률이 양호했던 강원·충남·제주 외의 6개 지자체에도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교부하였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금의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기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 결정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35]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엄격

---

23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한 사전검토를 규정하고 있음.[236]

□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교부하여 상당한 불용액 및 이월액[237]이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보조금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등 동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4년 9월말 현재 동 사업의 지자체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구조 특성상 연말에 보조금 정산 완료에 따른 실집행 실적이 집중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동 사업의 2024년 실집행률 또한 예년과 같이 저조할 우려가 있음.[238]

---

236)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 97)
(6) 보조금 교부 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37) 이월액: 150억 8,400만원 / 불용액: 16억 8,200만원

238)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도 보조금 교부를 받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4년도 실집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약 73.8% 수준의 실집행률이 전망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2024년도(9월말) 기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지자체별 보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교부총액	교부차수 및 일자, 금액		전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1차	2차						
경기	4,997	'24.1.17. (2,920)	'24.8.19. (1,588)	2,960	7,957	1,045	미정	미정	13.1%
강원	993	'24.1.17. (766)	'24.8.19. (227)	1,717	2,710	-	미정	미정	-
충북	1,617	'24.1.17. (1,026)	'24.8.19. (441)	1,923	3,540	111	미정	미정	3.1%
충남	2,955	'24.1.17. (1,828)	'24.8.19. (1,127)	1,081	4,036	-	미정	미정	-
전북	1,927	'24.1.17. (830)	'24.8.19. (1,097)	2,196	4,123	81	미정	미정	2.0%
전남	2,970	'24.1.17. (2,280)	'24.8.19. (357)	1,633	4,603	138	미정	미정	-
경북	1,293	'24.1.17. (980)	'24.8.19. (287)	1,335	2,628	284	미정	미정	10.8%
경남	2,833	'24.1.17. (2,322)	'24.8.19. (511)	1,906	4,739	239	미정	미정	5.0%
총 계	19,585			14,751	34,336	1,898			5.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2024. 10. 24) 제출

□ 이와 같은 실집행의 부진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연례적·반복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이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동 사업 관련 미흡한 관리·감독에 따

라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경과 및 사유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2025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실집행률 부진 시 동 사업의 계획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가. 개 요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협, 수협 등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자가 거대재해의 발생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재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355억원(9.6%) 증가한 4,059억원임.

□ 2025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료 수입 1,463억원, 이자수입 98억원, 여유자금회수 2,498억원을 통해 총 4,059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농어업재해재보험금 및 사업비 등으로 506억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3,553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2025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24계획		'25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재보험료수입	1,485	1,485	1,463	△22	△1.5
	○ 면허료 및 수수료	1,485	1,485	1,463	△22	△1.5
	2. 정부내부수입 (농특회계전입금)	-	-	-	-	-
	3. 이자수입	100	100	98	△2	△2.0
	4. 여유자금회수	2,119	2,119	2,498	△379	△17.9
수입 계		3,704	3,704	4,059	355	9.6
지출	1. 일반지출	1,206	1,206	506	△700	△58.0
	○ 사업비	1,200	1,200	500	△700	△58.3
	- 재보험금	1,200	1,200	500	△700	△58.3
	○ 기금운영비	6	6	6	-	-
	2. 여유자금운용	2,498	2,498	3,553	1,055	42.2
지출 계		3,704	3,704	4,059	355	9.6

14. 양곡증권정리기금

가. 개 요

□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양곡증권 및 차관양곡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산계정의 기금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9,802억원(△64.0%) 감소한 5,509억원임.

□ 2025년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자기금예수금 3,700억원, 여유자금회수 197억원 등을 통해 총 5,509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 5,249억원을 공자기금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지출하고, 여유자금 260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할 계획임.

【2025년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구 분		'24계획		'25계획안 (B)	전년대비 증감	
		당초(A)	수정		(B-A)	%
수입	1. 자체수입	3	3	3	-	-
	2. 정부내부수입	15,111	15,111	5,309	△9,802	△64.9
	○ 일반회계전입금	1,609	1,609	1,609	-	-
	○ 공자기금예수	13,502	13,502	3,700	△9,802	△72.6
	3. 여유자금회수	197	197	197	-	-
수입 계		15,311	15,311	5,509	△9,802	△64.0
지출	1. 정부내부지출	1,041	1,041	5,249	4,208	△65.7
	○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14,270	14,270	3,700	△10,570	△74.1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1,041	1,041	1,549	508	48.8
	2. 여유자금운용	-	-	260	-	순증
지출 계		15,311	15,311	5,509	△9,802	△64.0

농촌진흥청 소관

[농촌진흥청 소관]

Ⅰ. 예산안 개요

1. 총 괄

가. 총수입·총지출

□ 농촌진흥청 소관 '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 농촌진흥청 소관 '25년도 예산안 총수입은[239] 147억원으로 '24년 예산(153억원) 대비 6억원(3.9%)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억원임.

이를 성질별로 보면, 재산수입 11억원, 경상이전수입 99억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5억원, 수입대체경비수입 1억원, 관유물매각대 1억원으로 구성됨.

---

239) 총수입은 총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회계의 총계,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를 모두 더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함. 여기서 내부거래수입이란, 어느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차입이나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됨. 보전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 입장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함.

【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총수입 】

(단위 : 백만원, %)

	2023 결산	2024		2025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391	11,722	11,722	12,023	301	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48	1,118	1,118	1,118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84	2,446	2,446	1,516	△930	△38.0
합 계	**10,523**	**15,286**	**15,286**	**14,657**	**△629**	**△4.1**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은[240] 1조 616억원으로 '24년 예산(1조 974억원) 대비 358억원(△3.3%)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40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9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8억원임.

【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총지출 】

(단위 : 백만원, %)

	2023 결산	2024		2025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29,948	1,004,622	1,004,622	940,894	△63,728	△6.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692	7,518	7,518	6,849	△669	△8.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0,451	85,234	85,234	113,812	28,578	33.5
합 계	**1,233,091**	**1,097,374**	**1,097,374**	**1,061,555**	**△35,819**	**△3.3**

※ 주: 총지출 기준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240)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함(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나. 세입·세출예산안

□ 농촌진흥청 소관 '25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 농촌진흥청 소관 '25년도 세입예산안은 147억원으로 '24년 예산(153억원) 대비 6억원(3.9%)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억원임.

□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이 3억원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수입이 9억원 감소하였음.

【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23 결산	'24 본예산	'24 추경(A)	'25 예산안(B)	증감 B-A	증감 (B-A)/A
일반회계	9,391	11,722	11,722	12,023	301	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48	1,118	1,118	1,118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84	2,446	2,446	1,516	△930	△38.0
합 계	**10,523**	**15,286**	**15,286**	**14,657**	**△629**	**△4.1**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농촌진흥청 소관 '25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616억원으로 '24년 예산(1조 974억원) 대비 358억원(△3.3%)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40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8억원임.

□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24년 예산 대비 인건비는 84억원(5.1%)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11억원(△4.3%), 사업비는 453억원(△5.0%) 감액되었음.

【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23 결산	'24		'25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29,948	1,004,622	1,004,622	940,894	△63,728	△6.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692	7,518	7,518	6,849	△669	△8.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0,451	85,234	85,234	113,812	28,578	33.5
합 계	**1,233,091**	**1,097,374**	**1,097,374**	**1,061,555**	**△35,819**	**△3.3**

※ 주: 총지출 기준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2.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부사업 주요 변동내역

가. 2025년 신규사업

□ 농촌진흥청의 '25년도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경감기술실용화(R&D) 등 총 7개 사업 335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이관된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지역지원) 1개 사업 389억원 규모임.

【 농촌진흥청 소관 2025년도 신규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25년 예산안	사 업 내 용
합 계		72,357	
▪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 및 피해경감기술실용화(R&D)	일반	7,900	▪ 문제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의 현장 실용화 및 중점관리 병해충의 선제 대응 기반 기술 확보
▪ 밀자급률도약생산소비 연계핵심기술개발(R&D)	일반	4,400	▪ 동계 밀 생산 확대와 국산밀 소비촉진 선순환 체인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원예작물수급안정을위한이상기상대응기술고도화(R&D)	일반	6,000	▪ 이상기상 선제대응 피해경감기술 개발로 과채류, 과수, 인경채소, 여름배추의 생산·공급 체계 확립
▪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양성(R&D)	일반	2,400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대학의 농업 기초·기반 분야 R&D 참여형 전문기술 인재 양성
▪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일반	3,750	▪ 디지털 영농 모델 개발·보급을 통한 노지 스마트팜 확산 가속화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구축(R&D)	일반	4,000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통합정보 생산·서비스 및 실물자원(미생물) 연계 실용화
▪ 농산부산물Eco순환 기술개발(R&D)	일반	5,000	▪ 농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소재화(업사이클링)를 통해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행 및 자원의 효율성 증대
▪ 신기술보급사업 (보조, 지역지원)	지특	38,907	▪ 농업 신기술을 영농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고 농가 기술수준과 농업 경쟁력을 증진 * 일반회계 → 지특회계 사업으로 이관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나. 2024년 종료사업

□ ’24년 농촌진흥청 예산 중 종료 예정인 사업은 과수화상병등 현안문제병해충 피해경감 기술개발(R&D)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204억원임.

【 농촌진흥청 소관 2024년도 종료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년 예산	사 업 내 용
합 계	20,422	
▪ 과수화상병 등 현안문제 병해충피해경감기술개발(R&D)	9,795	▪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문제병해충의 확산 방지 및 종합적 치료기술 개발
▪ 미생물활용농업환경문제 개선 기술개발(R&D)	3,062	▪ 농업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미생물 신소재 개발 및 미생물 유래 효소 활용 신기술 개발 등
▪ 노지디지털농업기술단기고도화 (R&D)	7,475	▪ 데이터 활용 노지농업 디지털화 기술 개발 및 스마트 영농 솔루션 개발
▪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보조, 제주)	90	▪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및 상품 경쟁력 확보 기반 조성 등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다. 주요 증액사업

□ 농촌진흥청의 '25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파속채소[241] 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파속채소의 품종을 육성하고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거점을 조성하는 '파속채소연구소구축(R&D)' 등 6개 사업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1,135억원임.

【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비고
합 계	**75,137**	**113,535**	**38,398**	**51.1**	
▪ 신품종 지역 적응연구(R&D)	15,529	20,529	5,000	32.2	
▪ 시험연구활동 지원(R&D)	5,092	6,998	1,906	37.4	
▪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 고도화(R&D)	1,700	4,440	2,740	161.2	
▪ 수출전략형 신작물보호제 기반기술개발(R&D)	4,000	5,332	1,332	33.3	
▪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 기술개발(R&D)	5,331	7,005	1,674	31.4	
▪ 파속채소연구소 구축(R&D)	3,830	12,310	8,480	221.4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주. 주요 증액사업 : '24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증액된 세부사업

241) 파속채소 : 양파, 마늘, 파, 부추 등

3. 연구개발(R&D) 사업규모

□ '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은 1조 616억원으로 '24년도 1조 974억원 대비 358억원(△3.3%) 감소하였고, 순수연구개발 예산은 5,673억원으로 농촌진흥청 전체 예산(1조 616억원)의 53.4% 비중으로 '24년도 5,823억원 대비 150억원(△2.6%) 감소하였음.

【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안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비중(%)	'25예산안 (B)	비중(%)	전년대비 (B-A)	%
합계	**10,974**	**100.0**	**10,616**	**100.0**	**△358**	**△3.3**
□ 사 업 비	9,056	82.5	8,603	81.0	△453	△5.0
○ 순수연구개발	5,823	53.1	5,673	53.4	△150	△2.6
○ 기술보급	2,359	21.5	2,186	20.6	△173	△7.3
○ 농업기술진흥원	387	3.5	211	2.0	△22	△5.7
○ 정 보 화	240	2.2	365	3.4	△29	△12.1
○ 기타사업	247	2.3	168	1.6	△79	△32.0
□ 기본경비	255	2.3	266	2.5	11	4.3
□ 인 건 비	1,663	15.2	1,747	16.5	84	5.1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주. 순수연구개발 예산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본경비, 인건비 등이 제외된 수치임.

□ 최근 5년간 국가전체 R&D예산은 연평균 1.6%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분야 R&D예산은 연평균 2.4%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R&D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2.3%로 국가전체 R&D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1.6% 대비 낮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예산 비중 】

(단위 : 억원, %)

구 분	국가전체 R&D(A)	농림수산분야 R&D(B)	농진청 R&D(C)	농림/국가 (B/A)	농진/국가 (C/A)	농진/농림 (C/B)
'21년	274,018	14,687	8,022	5.4	2.9	54.4
'22년	297,755	15,125	8,533	5.1	2.9	56.4
'23년	310,574	15,542	9,022	5.0	2.9	58.0
'24년	265,369	12,741	7,260	4.8	2.7	57.0
'25년안	**296,783**	**13,037**	**7,147**	**4.4**	**2.4**	**54.8**
연평균 증가율	1.6	△2.4	△2.3	-	-	-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R&D예산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포함된 수치임.
※ 농림수산분야 R&D예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R&D예산을 모두 합한 수치임.
※ '23년까지는 확정예산이고, '24년은 정부제출안임.

1.

4.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주요 특징

□ 농촌진흥청은 '25년도 예산안이 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촉진 ② 식량자급률 향상 지원 ③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세입예산안은 147억원으로, '24년 예산 153억원 대비 6억원 감액(△3.9%)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안은 첫째, '25년도 총지출 규모가 1조 616억원으로, '25년도 정부세출 예산안 총지출 규모인 677조원 대비 0.2% 수준이며, '21년(1조 961억원)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농촌진흥청 총지출 비중 】

(단위 :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정부 총지출(a)	5,579,871	6,076,633	6,387,277	6,566,182	6,774,107
농촌진흥청 총지출(b)	10,961	11,893	12,547	10,974	10,616
비중(b/a)	0.2	0.2	0.2	0.2	0.2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둘째, '25년 예산안 중 기술보급 예산[242]은 '24년 대비 173억원(7.3%)

242) 기술보급 사업 : 새로운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실용화를 촉진하고, 농가 기술수준과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감액된 2,186억원으로, 이는 농촌진흥청의 세출예산안 1조 616억원 대비 20.6%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R&D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2.3% 대비 높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기술보급 예산 비중 】

(단위 : 억원, %)

연도별	세출예산 (총계)(A)	R&D 예산(B)	비중 (B/A)	기술보급 관련 예산(C)	비중 (C/A)	R&D 대비 기술보급관련 비중 (C/B)
'21년	10,961	8,022	73.2	1,813	16.5	22.6
'22년	11,893	8,533	71.7	2,156	18.1	25.3
'23년	12,547	9,022	71.9	2,230	17.8	24.7
'24년	10,974	7,260	66.2	2,359	21.5	32.5
'25년안	10,616	7,147	67.3	2,186	20.6	30.6
연평균 증가율	△0.6	△2.3	-	3.8	-	-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R&D예산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포함된 수치임.

□ 기술보급 예산 2,186억원 중 농업의 미래성장촉진화 사업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농업기술협력지원 사업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분리 이관하며 '24년 대비 389억원(순증),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은 70억원(14.7%)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농업기술협력지원 사업비는 469억원(△72.9%),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비 79억원(△50.3%),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비 608억

원(△13.1%) 등이 감액편성 되어 기술보급 예산 전체적으로는 '24년에 비하여 총 173억원(7.3%)이 감액편성 되었음.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한 우수 연구결과가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 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2025년도 기술보급 예산 주요 증감액 현황 】

(단위 : 억원, %)

사 업 명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 기술보급 예산 총액	2,359	2,186	△173	△7.3
- 농업기술협력지원	643	174	△469	△72.9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55	69	14	25.5
-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157	78	△79	△50.3
-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477	547	70	14.7
- 농촌통계조사분석	36	38	2	5.6
- 데이터기반농업활성화	79	79	-	-
- 농업전문인력양성	63	63	-	-
- 농업과학기술교육	32	33	1	3.1
- 농작업재해예방	25	30	5	20.0
-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22	19	△3	△13.6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700	608	△92	△13.1
- 신기술보급사업	-	389	389	순증
-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40	37	△3	△7.5
- 농촌자원소득화지원	30	22	△8	△26.7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2025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진흥청은 2025년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R&D)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장립종 벼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기 위하여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국내 수요 부족 및 낮은 가격 경쟁력 등과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장립종 쌀 품종 개발 및 가공품 사업화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진흥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간 “토양, 식물영양, 병원균생태, 해충·잡초생태” 등 4개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2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음.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대학원생 인턴십 참여 건수 등을 설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에 몰두해야 하는 사

업 초기에 인턴십 활동을 하는 것은 인력 양성과 연구 성과 제고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해 보임.

또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출연금 예산을 통해 동 사업의 과제운영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농촌진흥법」상 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진행 중이고,
실시설계가 2025년 8월 무렵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공사비 예산으로 약 342억원이 편성되었음.

매년 집행가능한 수준을 상회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잔여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소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총사업비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보상비 적정 소요를 편성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치유농업확산센터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예산안은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을 위한 공사비 29억 9,200만원 등 약 33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공사비의 이월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문화재 표본조사 및 농작물 철거 등의 작업에서 추가적인 사업 추진 지연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25년 공사비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향후 조속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축산시험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축산 시험 연구 사업의 사업추진비에는 외국인 전문가 초청 경비 목적으로 2025년 약 3,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로는 초청경비로 편성된 사업추진비 예산을 매년 긴급현안 등에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은 향후 국외업무여비 비목의 시험연구비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된 내역에 부합한 예산 집행을 하는 등 예산 편성의 비목과 실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여섯째,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화 시스템은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내에 총 19개의 내역사업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혼동을 초래하고 있고,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 농촌진흥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소관 동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예산의 집행 및 관리와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역사업의 이관이 필요해 보임.

Ⅱ. 예산안 총괄 분석

1. 수입 관련

□ 농촌진흥청의 '25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46억 5,700만원이며, '21년~'22년 결산 결과 매년 예산안에 비하여 실제 수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농촌진흥청 예산안 총수입 대비 실제 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안)
예산안 총수입	12,433	17,541	15,943	15,286	14,657
실제 수입(결산)	18,269	21,744	10,523	8,893	-

※ 자료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2. 지출 관련

□ ’25년도 정부 총지출(안)은 677조 4,107억원으로 ’24년도 예산에 비하여 3.2% 증가하였으며, ’25년도 농촌진흥청의 총지출은 1조 616억원으로 ’24년도 예산에 비해 3.3% 감소하였음.

정부 총지출 중 농촌진흥청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년도 예산안 기준 0.16%로, ’24년도 예산 기준 0.17%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음.

【정부 총지출 중 부처별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예산 (본예산)	2025년 예산안	비중	
			2024 예산	2025 예산안
총지출	6,566,182	6,774,108	100.0	10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69	0	0.00	0.00
감사원	1,462	1,508	0.02	0.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54	646	0.01	0.01
경찰청	129,907	135,364	1.98	2.00
고용노동부	336,825	353,661	5.13	5.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7	253	0.00	0.00
공정거래위원회	1,584	1,634	0.02	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6,213	190,178	2.84	2.81
관세청	6,624	6,583	0.10	0.10
교육부	957,888	1,048,767	14.59	15.48
국가교육위원회	103	106	0.00	0.00
국가보훈부	64,057	64,814	0.98	0.96
문화재청	13,659	13,878	0.21	0.20
국가인권위원회	413	424	0.01	0.01
국가정보원	8,921	9,310	0.14	0.1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604	6,747	0.10	0.10
국민권익위원회	1,116	1,054	0.02	0.02
국방부	433,523	451,769	6.60	6.67
국세청	19,512	20,040	0.30	0.30
국토교통부	609,439	582,161	9.28	8.59
국회	7,677	7,762	0.12	0.11
금융위원회	15,031	17,409	0.23	0.26

구 분	2024년 예산 (본예산)	2025년 예산안	비중	
			2024 예산	2025 예산안
기상청	4,482	4,698	0.07	0.07
기획재정부	407,195	423,988	6.20	6.26
농림축산식품부	183,392	187,496	2.79	2.77
농촌진흥청	10,974	10,616	0.17	0.16
대법원	21,738	23,127	0.33	0.34
대통령경호처	1,341	1,391	0.02	0.0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031	1,040	0.02	0.02
문화체육관광부	69,545	71,214	1.06	1.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50	358	0.01	0.01
방송통신위원회	491	505	0.01	0.01
방위사업청	176,432	180,607	2.69	2.67
법무부	43,640	44,774	0.66	0.66
법제처	454	463	0.01	0.01
병무청	4,119	4,732	0.06	0.07
보건복지부	1,223,779	1,256,565	18.64	18.55
산림청	26,126	26,246	0.40	0.39
산업통상자원부	115,188	115,010	1.75	1.70
새만금개발청	477	1,128	0.01	0.02
소방청	3,404	3,311	0.05	0.05
식품의약품안전처	7,182	7,489	0.11	0.11
여성가족부	16,861	17,769	0.26	0.26
외교부	41,905	43,194	0.64	0.64
우주항공청	0	9,614	0.00	0.14
원자력안전위원회	1,360	1,488	0.02	0.02
인사혁신처	266,541	284,888	4.06	4.21
재외동포청	1,067	1,071	0.02	0.02
조달청	2,425	2,466	0.04	0.04
중소벤처기업부	149,497	152,920	2.28	2.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572	3,635	0.13	0.0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67	169	0.00	0.00
질병관리청	6,488	4,921	0.10	0.07
통계청	4,253	5,628	0.06	0.08
통일부	10,965	10,554	0.17	0.16
특허청	5,485	5,641	0.08	0.08
해양경찰청	18,967	19,923	0.29	0.29
해양수산부	66,879	67,837	1.02	1.00
행정안전부	724,474	720,872	11.03	10.6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48	2,288	0.02	0.03
헌법재판소	568	585	0.01	0.01
환경부	135,534	139,819	2.06	2.06

※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정부 총지출 중 농촌진흥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부터 '23년까지 0.19%~0.20%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4년에 0.17%로 감소한 이래 '25년(안)은 0.16%까지 감소하였음.

【정부 총 지출 중 농촌진흥청 지출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안)
비중	0.19	0.19	0.20	0.17	0.16

※ 자료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정부 전체의 의무지출은 365.6조원으로 총 지출의 54%를 차지, 재량지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촌진흥청은 의무지출 없이 100% 재량지출로 구성되어 있음[243].

【정부와 농촌진흥청 의무/재량지출 비율 비교】

(단위 : 조원, %)

	정부 전체	농촌진흥청
총지출	677.4	1.06
의무지출	365.6	-
(비중)	(54.0)	-
재량지출	311.8	1.06
(비중)	(46.0)	(100)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참조,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243) 일반적으로 재량지출의 비중이 높을 경우, 정책기조·세수여건 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25년도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안은 2,065억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된 31개 부처 중 14번째로 큰 규모이며, ’24년도 보조사업 예산에 비하여 1억 5,800만원(△7.1%) 감소하였음.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안 부처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24 예산	일반회계(A)		특별회계(B)		기금(C)		합계 (D= A+B+C)
		2025 예산안	A/D	2025 예산안	B/D	2025 예산안	C/D	
보건복지부	536,579	530,569	94.7	15,588	2.8	13,940	2.5	560,097
환경부	76,361	3,477	4.4	69,017	87.0	6,862	8.6	79,356
교육부	52,697	55,010	73.1	20,252	26.9	-	0.0	75,263
국토교통부	69,804	32,372	44.9	30,647	42.5	9,021	12.5	72,039
농림축산식품부	55,169	-	0.0	22,740	40.1	33,932	59.9	56,672
행정안전부	24,553	4,127	23.6	13,362	76.4	-	0.0	17,488
여성가족부	14,491	5,323	34.9	892	5.9	9,017	59.2	15,233
문화체육관광부	12,062	1,606	12.2	4,164	31.6	7,403	56.2	13,173
산림청	10,945	4,672	42.3	6,366	57.7	-	0.0	11,038
해양수산부	10,361	676	6.2	10,094	92.3	165	1.5	10,935
산업통상자원부	7,196	245	3.4	5,019	69.7	1,938	26.9	7,202
국가유산청	6,524	5,936	88.8	282	4.2	470	7.0	6,689
기획재정부	6,342	-	0.0	-	0.0	6,322	100.0	6,322
농촌진흥청	2,223	896	43.4	1,169	56.6	-	0.0	2,065
고용노동부	2,505	854	43.2	1,120	56.7	1	0.1	1,975
중소벤처기업부	1,473	-	0.0	1,658	98.8	20	1.2	1,6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96	33	2.2	1,473	97.8	-	0.0	1,506
식품의약품안전처	745	733	95.0	38	5.0	-	0.0	771
외교부	70	501	100.0	-	0.0	-	0.0	501
법무부	372	1	0.3	-	0.0	386	99.7	387
소방청	237	287	100.0	-	0.0	-	0.0	287
통일부	222	106	92.2	-	0.0	9	7.8	115
대법원	142	112	100.0	-	0.0	-	0.0	112
질병관리청	171	108	100.0	-	0.0	-	0.0	108
새만금개발청	22	93	100.0	-	0.0	-	0.0	93
경찰청	67	27	35.0	50	65.0	-	0.0	77
국가보훈부	106	43	64.3	24	35.7	-	0.0	67
방위사업청	23	30	100.0	-	0.0	-	0.0	3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8	100.0	-	0.0	-	0.0	8
재외동포청	-	7	100.0	-	0.0	-	0.0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	0.0	2	100.0	-	0.0	2
국방부	1	-	0.0	-	0.0	1	100.0	1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5	-	-	-	-	-	-	-
총계	**892,667**	**647,851**	**68.8**	**203,957**	**21.7**	**89,488**	**9.5**	**941,296**

※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중 민간 보조금은 2,000억원으로 ’24년도 예산에 비하여 1,197억원 감소(△28%)하였음.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중 민간 보조금】

(단위 : 억원)

’24 예산	일반회계(A)		특별회계(B)		기금(C)		합계 (D=A+B+C)
	’25 예산안	A/D	’25 예산안	B/D	’25 예산안	C/D	
3,650	2,000	100.0	-	-	-	-	2,000

※ 자료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25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은 29조 6,783억원으로 ’24년에 비하여 11.8% 증가하였고, ’25년도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7,174억원으로 ’24년 7,260억원 대비 113억원(△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 전체 및 농촌진흥청 R&D 예산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4년 예산(A)	’25년 예산안(B)	증감	
			(B-A)	%
정부 전체 R&D	265,369	296,783	31,414	11.8%
농촌진흥청 R&D	7,260	7,147	△113	△1.6%

※ 자료 : 농촌진흥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 농촌진흥청이 소관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농촌진흥청의 공공기관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23 결산	'24 본예산(A)	'25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형)	37,019	38,681	36,504	△2,177	△5.6

※ 자료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체 예산에서 농촌진흥청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체 예산에서 농촌진흥청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24년			'25년안		
	전체 예산(A)	농진청 지원예산(a)	비중 (a/A)	전체 예산(B)	농진청 지원예산(b)	비중 (b/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형)	170,930	51,377	30.1	164,568	50,010	30.4

※ 자료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요약

연번	회계구분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백만원)	제목	지적사항	국회 지적
1	일반회계	신품종 지역적응 연구(R&D)	20,529 (3,000 장립종)	장립종 쌀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신규 내역사업 '장립종 벼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는 국내 수요 부족 및 낮은 가격 경쟁력 등과 비교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장립종 쌀 품종 개발 및 가공품 사업화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2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R&D)	2,400	합리적 성과지표 및 사업 추진 출연 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사업추진 시 인력 양성과 연구 성과 제고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한편, 동 사업의 과제운영을 수행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인재 양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축산자원 개발부 이전 사업(R&D)	40,254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잔여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소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보상비 적정 소요를 편성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2년 '23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4		치유농업확산센터 구축	3,291	공사비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치유농업확산센터구축 사업은 공사비의 이월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불용 발생으로 인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5년 공사비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21년 '23년 시정요구 (제도개선)
5		축산 시험연구(R&D)	4,575	편성된 내역에 부합한 예산 집행 필요	국립축산과학원은 연례적으로 축산 시험연구 사업의 외국인 전문가 초청경비 명목으로 편성된 사업추진비를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집행하고 있으므로 편성된 내역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6		농업기술 정보화	8,597	소속기관 운영 시스템 내역사업 이관 필요 등	농촌진흥청의 각종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이 농업기술정보화사업에 19개의 내역 사업으로 나누어져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혼동을 초래하고 있고, 실제 소속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 동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예산의 집행 및 관리와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역사업의 이관이 필요해 보임.	

Ⅲ. 회계·기금별 검토

1. 일반회계

가. 개 요

□ '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20억원으로 '24년도(117억원) 대비 2.6%(3억원)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11,722	12,023	301	2.6
○ 관유물대여료	77	76	△1	△1.3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642	1,006	364	56.7
○ 과태료	4	4	-	-
○ 변상금및위약금	119	119	-	-
○ 기타경상이전수입	7,216	7,216	-	-
○ 면허료및수수료	107	45	△62	△57.9
○ 실습수입	3,164	3,164	-	-
○ 잡수입	293	293	-	-
○ 고정자산매각대	100	100	-	-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409억원으로, ’24년도(1조 46억원) 대비 6.3%(637억원) 감소하였음.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파속채소 연구소 기반구축 123억원으로 ’24년(38억원) 대비 221.4%(85억원) 증가하였고, 현장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R&D) 사업은 44억원으로 ’24년(17억원) 대비 161.2(27억원) 증가하였으며, 시험연구 활동지원(R&D) 사업은 70억원으로 ’24년(51억원) 대비 37.4%(19억원) 증가하였음.

수출전략 혁신작물 보호제 기반기술(R&D) 사업은 53억원으로 ’24년(40억원) 대비 33.3%(13억원) 증가하였으며, 신품종 지역적응 연구(R&D) 사업은 205억원으로 ’24년(155억원) 대비 32.2%(50억원) 증가하였고,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 기술개발(R&D) 사업은 70억원으로 ’24년(53억원) 대비 31.4%(17억원) 증가하였음.

반면, 북부원예출장소 구축(R&D) 사업의 경우 25억원으로 ’24년(185억원) 대비 86.3%(160억원) 감소하였고, 과수디지털 농업 실증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6억원으로 ’24년(32억원) 대비 80.5%(26억원) 감소하였으며,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36억원으로 ’24년(74억원) 대비 52.5%(38억원) 감소하였고, 치유농업 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33억원으로 ’24년(48억원) 대비 31.2%(15억원)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감 (B-A)	%
총 계	10,046	9,409	△637	△6.3
○ 일반지출	10,046	9,409	△637	△6.3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R&D) : 장립종 쌀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농촌진흥청은 2025년 장립종 벼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할 예정인데, 국내 수요 부족 및 낮은 가격 경쟁력 등과 비교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장립종 쌀 품종 개발 및 가공품 사업화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신품종 지역 적응연구(R&D) 사업은 식량자급률 향상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을 개발하고 종자생산 보급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024년보다 50억원(32.2%)이 증액된 205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244].

【 2025년도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 (R&D)	21,017	15,529	11,041	20,529	5,000	32.2
·신품종 개발 공동연구	11,844	11,209	7,699	13,209	2,000	17.8
·농업 생명자원 국가 관리기관 운영	4,800	4,320	3,342	4,320	-	-
·고위도지역 작물생산성향상 기술개발	4,373	-	-	-	-	-
·장립종 벼기반 쌀산업혁신프로젝트	-	-	-	3,000	3,000	순증

244)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R&D) (1133-302)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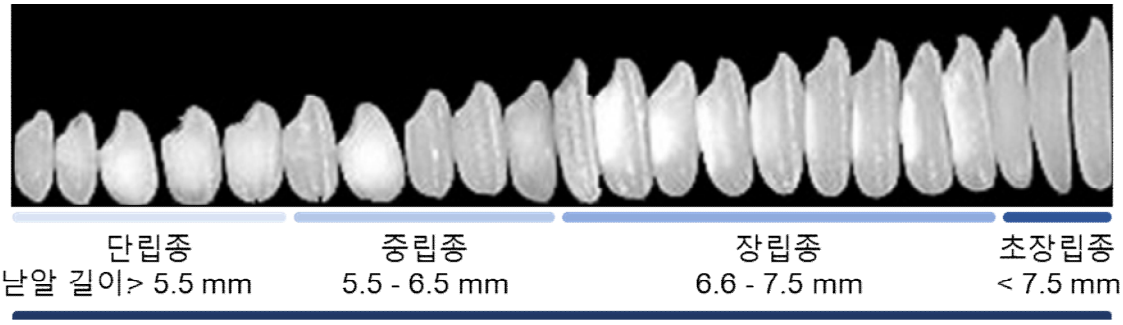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은 2025년 신품종 지역 적응 연구(R&D)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장립종 벼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기 위하여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인디카로 불리는 장립종 쌀(낟알 길이 6.6~7.5mm)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비교적 찰기가 없는 쌀 품종임.

반면, 자포니카로 불리는 단립종 쌀(낟알 길이 5.5mm 이하)은 한국과 일본 등 온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며 찰기가 많은 품종임.

폭우로 인한 침수 등 이상기후에 대한 내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장립종 쌀은 전 세계 쌀 소비량의 85~90% 정도를 차지함.

【 장립종 및 단립종 비교 】



※ 자료: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제출(2024.10.28.)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1월 발표한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쌀가공산업이 K-Food 대표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시장 다각화를 통하여 쌀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개 과제 수행 예산 30억원이 편성된 동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용도별로 맞춤형 장립종 품종과 가공기술 등을 개발하여 국내 밥쌀용 쌀 수급을 조절하고 국내 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세부내용을 과제별로 살펴보면, ① 농촌진흥청은 국내체류 외국인 수요 대응용 및 수출용 장립종 벼를 개발하고, ② 국내 환경에서 장립종 품종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생리생태 특성을 연구하여 재배 적응성을 평가하는 한편, ③ 국내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분이용효율[245], 내냉성[246], 병해충저항성[247] 등 저항성 형질을 발굴할 계획임.

또한 ④ 국제기구와의 연구협력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자원을 선발하고 한국형 인디카 품종 개발의 중간 모본으로 활용하고자 함.

---

245) 양분이용효율 : 작물이나 식물이 흡수한 양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장하고 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농업에서 주로 비료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됨.

246) 내냉성 : 식물이나 작물이 낮은 온도나 추위에 견디는 능력

247) 병해충 저항성 : 식물이나 작물이 병원균이나 해충의 공격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병해충 저항성을 가진 식물은 특정 질병이나 해충에 감염되거나 피해를 입어도 생장과 발육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장립종 벼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 세부 사업내용(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산출 내역	'25
- 내수 및 수출 용도별 맞춤형 장립종 품종개발 - 한국형 장립종 벼 안정생산 및 규모화 재배기술 개발 - 인디카 장립종의 내병충성 및 재해저항성 증진기술 개발 - 인디카 장립종 벼 유전자원 및 중간모본 도입(국제공동)	4개×1,000백만 ×9/12개월	3,000

※ 자료: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제출(2024.10.10.)

□ 최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26.6ha 규모의 장립종 쌀 생산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세종대 산학협력단에서 개발한 2개 품종의 실증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품종 자체의 낮은 수량성[248]으로 인하여 시장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함.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의 한계와 더불어 아직 장립종 벼 생산 재배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수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이를 감안하면, 이 사업의 목표인 수출 경쟁력을 갖춘 장립종 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가공성·기능성 등에 대한 산업체 및 수출 시장 수요를 목표 형질[249] 구명 연구에 반

248) ▪ 자포니카 평균 쌀 수량 : ('23) 523kg/10a, ('24) 524kg/10a(통계청 발표자료)
▪ 해남지역 실증단지 장립종 쌀 수량 : ('23년) 실증 374kg/10a

249) 목표 형질 : 품종개발 시 목표로 하는 고유한 특성 예) 수량성, 기능성, 가공성, 재배기간 등

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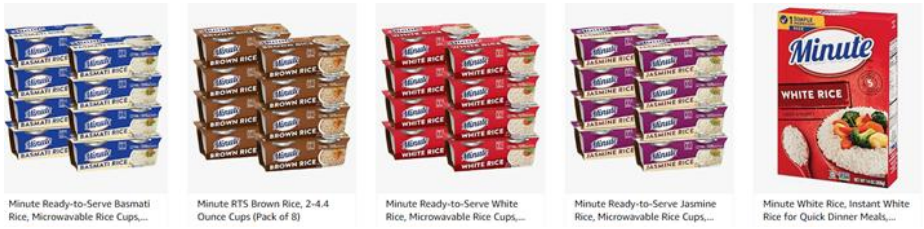
□ 장립종 품종을 육성하려는 동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에 폭염이 지속되고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비하여야 하고, 단립종 벼를 대신한 생산을 통해 과잉 생산되는 밥쌀용 쌀 수급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장립종 쌀을 가공하여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남아권 외국인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임[250].

□ 다만, 농촌진흥청이 장립종 쌀에 대한 국내 수요를 국내 체류 동남아권 외국인으로 파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의 장립종 쌀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장립종 쌀 생산 관련 연구의 상업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해외 수출용으로 가공품을 개발하는 것 역시, 이미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베트남, 태국, 미국 등의 쌀 가공 제품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것이 우려됨.

250) 법무부에 따르면 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등)·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국적 체류 인원은 2007년 24만명에서 2023년 85만명으로 늘었다고 함[출처 :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법무부)]

【 장립종쌀 이용 미국 및 유럽의 즉석밥 등 가공제품】

미국 Minute White Rice (제조사: Minute Rice)	
유럽 Mahatma 및 Carolina (제조사 : Riviana Foods Inc.)	

※ 자료: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개발과 제출(2024.10.11.)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개발된 장립종 쌀 활용 가공품은 동남아 지역보다는 미국, EU, 중동 지역 등 구매력을 갖춘 국가를 대상으로 가공품을 수출할 전략이라는 설명이나, 한정된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가공품목 개발의 시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기후조건과 생산비용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쟁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장립종 쌀 품종 개발 및 가공품 사업화 등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동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한정된 연구 예산과 인력을 고려할 때, 장립종 쌀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작물 개발이나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연구 등 더 긴급하

고 필요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R&D) : 합리적 성과지표 및 사업 추진 출연 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농촌진흥청은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력 양성과 연구 성과 제고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한편, 동 사업의 과제운영을 수행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인재 양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R&D) 사업은 농업과학 기초·기반 분야 R&D 참여형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기반기술을 개발·보급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신규로 24억원이 편성되었음[251].

【 2025년도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R&D)	-	-	-	2,400	2,400	순증

251)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R&D) (1136-365)

(나) 검토의견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으로 작물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농업생태계의 변동성·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는 추세임.

지속가능한 농업과 작물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품종 개발, 토양 및 생태계 연구 등 농업 기초·기반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시급함.

그러나 농업 기초·기반 분야는 연구 주기의 장기성, 환경 변수에 영향을 받는 특성, 즉각적인 상업화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여 논문, 특허 등 단기성과 산출 효율이 낮기 때문에[252] 농업과학 전공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에 농촌진흥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간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기성과 및 사적이익의 창출이 어려운 “토양, 식물영양, 병원균생태, 해충·잡초생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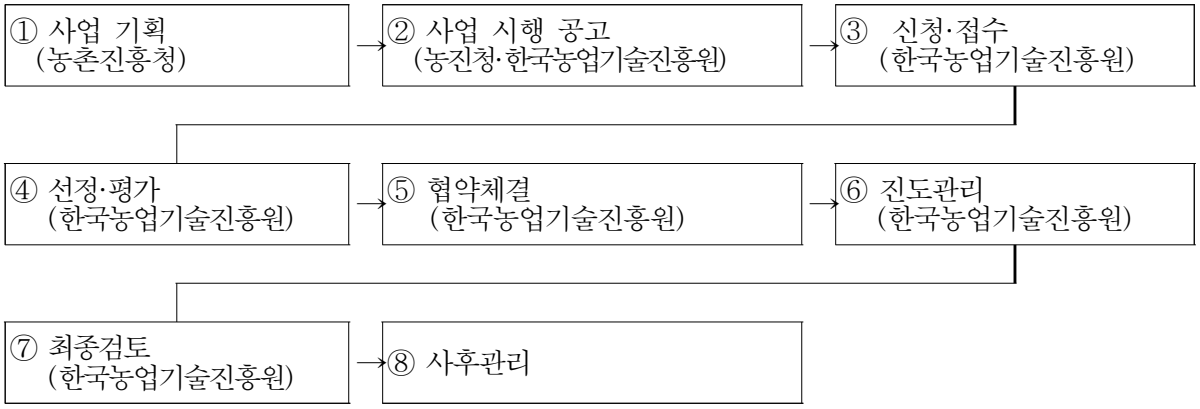
□ 동 사업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4개 분야(토양, 식물영양, 병원균생태, 해충·잡초생태)에서 분야별 각 3개 과제씩을 기획하고 있으며, 5년간 120명(과제당 10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52) 어젠다별 1억원당 SCI 논문편수('15-'17): 환경 0.13, 식량작물 0.26, 생명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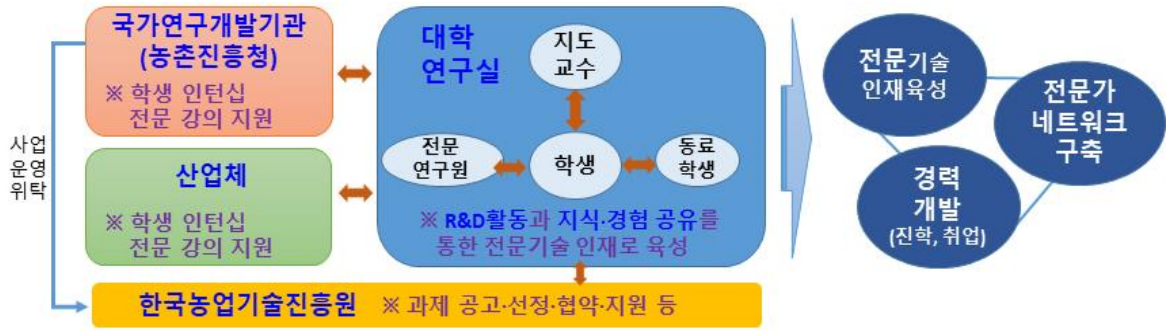
과제공모와 선정, 협약, 출연금 집행·관리, 과제평가 등 과제운영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할 계획임.

【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사업 추진절차 및 체계(안) 】

○ 사업기획·추진절차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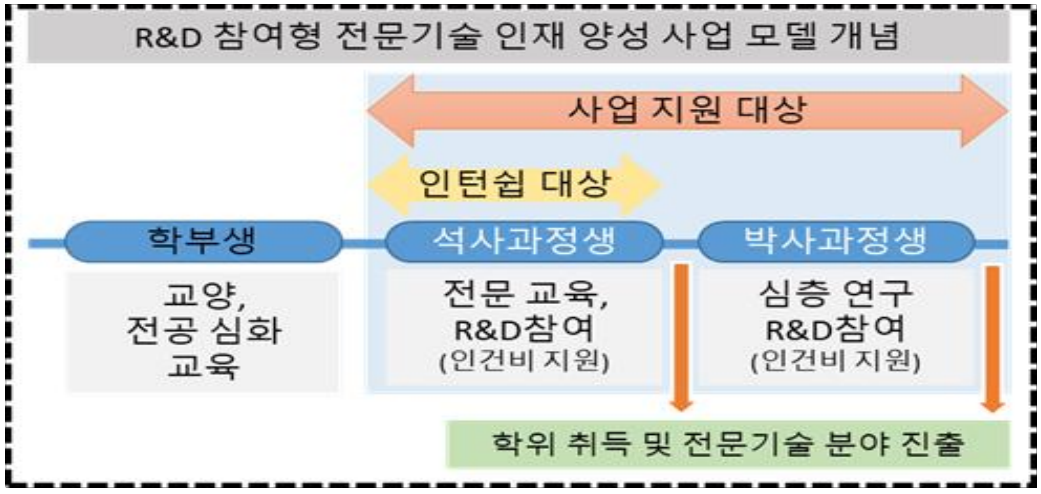


※ 자료: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제출(2024.10.11.)

□ 주관연구기관으로 농업 기초·기반분야 석박사 과정 설치 대학이 참여하는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임.

대학원생들은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연구 수행 및 성과 창출을 통해 전문 연구역량을 배양하여야 함.

【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사업 내용 】



※ 자료: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제출(2024.10.11.)

(1) 합리적인 성과지표 설정 필요

□ 2025년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예산안은 24억원이 편성되었음.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1과제당 연구개발활동비 2억원이 계상되어 석사과정에게는 월 220만원, 박사과정에게는 월 3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될 예정임.

【 2025년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예산 세부 산출 근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금액	산출근거
총 과제비	200.0	학생인건비(80.0백만원) + 연구비(110.0) + 간접비(10.0)
학생인건비	80.0	▪ **총 과제비(200백만원)의 40%** * (석사과정) 2.2백만원(인건비) × 9개월 × 4명 ≒ 80.0백만원 * (박사과정) 3.0백만원(인건비) × 9개월 × 3명 ≒ 80.0백만원 ※ (기준) 석사과정 월 220만원(9개월 1,980만원), 박사과정 300(2,700)
연구비	110.0	▪ **총 과제비의 55%**
간접비	10.0	▪ **총 과제비의 5%**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37조)에 의거, 인재양성사업 대상 정부출연기관 간접비 비율(5%)로 산정

※ 자료: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제출(2024.10.15.)

2025년 학생인건비는 9개월분이 반영되었는데, 사업 시행 공고, 과제선정,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과

제 선정 등의 선행 절차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사업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및 효과적인 사업 성과의 달성을 위하여 세부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건수, 대학원생 인턴십 참여 건수 등을 설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함.

【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성과지표(안) 】

성과지표	구분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문인력 양성 교육 건수 (단위: 건)	목표	-	-	3	대학(원)생 대상 연간 전문역량 강화 교육 수행 건수 감안	대학 내 정규교육 외 관련 특별강의 설계 및 시행 건수	측정방법 : 성과지표별 실적 증빙·승인
	실적	-	-	-			
	달성도	-	-	-			
대학(원)생 인턴십 참여 건수 (단위: 명)	목표	-	-	5	대학(원)생 연간 인턴십 참여 건수 감안	사업 참여 대학(원)생의 산연 인턴십 건수	측정기관 :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실적	-	-	-			
	달성도	-	-	-			

※ 자료: 농촌진흥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대학원생의 인턴십 참여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1개월 이상 인턴십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실무 경험을 쌓게 하려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관련 분야 취업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2025년 목표치를 5건으로 설정하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대학원생이 연구개발에 몰두해야 하는 사업 초기에 인턴십 활동을 하는 것은 인력 양성과 연구 성과 제고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해 보임.

특히, 성과지표는 투입된 자원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되고 사업 참여 주체에게는 사업 추진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공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효과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도록 성과지표를 면밀히 기획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 범위에 법적 근거 명시 필요

□ 「국가재정법」 제12조[253]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과제 공모와 선정, 협약, 출연금 집행·관리, 과제평가 등 과제운영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개별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임.

□ 「농촌진흥법」[254]에 따르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조사와 연구,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과 사업화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재

---

253)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254)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8.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사업 지원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성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농촌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정관에도 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농촌진흥법」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관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8.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사업 지원 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2.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7의2.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사업 지원 8.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9.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민원인이 의뢰하는 시험·분석·측정대행업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고자 하는 종자·종묘의 증식·보급 11.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12.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13. 농식품 기술 실용화, 기술금융 등을 위한 기술평가 14. <삭제 2024.01.25.> 15. 농식품 우수기술의 해외 이전 및 수출사업화 촉진 1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17.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18. 스마트농업 기술의 표준화 및 실증 지원 19.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 20.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자본 및 기술 출자 21.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지원 업무 22.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시설 등 임대 23.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24. 위 각호와 관련한 출판 등 부대사업

3)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R&D) :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지연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매년 집행가능한 수준을 상회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잔여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소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보상비 적정 소요를 편성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R&D) 사업은 지속가능한 축산자원개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에 축산자원개발 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024년보다 280억 2,100만원이 감액(△41%)된 40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255].

【 2025년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 (A)	예산 현액	집행		(B-A)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R&D)	91,703	68,275	70,746	42,208	40,254	△28,021	△41.0

255)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R&D) (1232-305)

(나) 검토의견

□ 농촌진흥청은 축산 연구를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고, 관련 연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축산자원개발부를 전남 함평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은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2027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총사업비 7,692억원의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 중임.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개요 】

사업 위치	전남 함평군 신광면 및 손불면 일원
사업 규모	부지면적 6,426,091㎡, 건물연면적 110,525㎡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재원 조달	국가
사업 기간	2021년~2027년(7년)
총사업비	8,425억원(최초 7,692억원)

※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제출(2024.10.11.)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관련 사진 】



< 조감도 >



< 사업위치도 >

※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제출(2024.10.28.)

□ 동 사업의 최근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3년 공사비를 제외한 건설보상비, 기본·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기본설계 지연으로 인해 실시설계에 착수하지 못하여 실시설계비 편성액인 12억 5,500만원이 전액 불용된 바 있음.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세부 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2025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안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96,266	91,703	2,471	2,092	68,275	70,746	55,534	-	14,602	40.254
건설보상비	88,601	88,309	292	-	51,548	51,840	51,840	-	-	-
기본조사설계비	5,898	3,052	2,093	753	-	2,093	-	-	1,483	96
실시설계비	1,255	-	-	1,255	10,508	10,508	-	-	10,508	1,912
공사비	-	-	-	-	3,219	3,219	3,219	-	-	34,188
감리비	323	236	86	-	2,500	2,586	446	-	2,140	3,558
시설부대비	190	106	-	84	500	500	29	-	471	500

※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제출(2024.10.11.)

□ 농촌진흥청은 2023년의 기본설계 지연 원인에 대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달청과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256].

256)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기본설계가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적절한지 평가하는 과정임.
- 조달청 입장('23.7.)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사업이므로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제외 대상
- 기획재정부 입장('24.1.) : 적정성 검토 제외 대상이나 사업규모 및 공사비가 큰 사업으로 조달 청 설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로 총사업비 조정 검토하겠음

이로 인한 검토는 2024년까지 계속되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24년 5월에 이르러 조달청이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2024년 10월 현재 농촌진흥청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중으로[257],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실시설계단계인 환경영향평가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로 인해 2024년 예산에 편성된 기본조사설계비 14억 8,300만원과 실시설계비 105억 800만원 전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총사업비 조정 현황 】

구분	결정일	변경 사유
당초	2021.03.23.	최초 총사업비 769,157백만원
1차 변경(자율조정)	2023.01.05.	기본조사설계비 낙찰차액 감액 (현행) 769,157→ (변경) 761,946 (감 7,211)
2차 변경(자율조정)	2023.10.04.	보상대상 토지 등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1차 증액 (현행) 761,946→ (변경) 842,466 (증 80,520)
3차 변경 (기재부 협의 중)	2024.1.15.~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진행 1. 공사비 : 43,773백만원 증액 요구 2. 보상비 : 16,325백만원 증액 요구

※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제출(2024.10.16.)

257)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총사업비 조정 완료 될 것이라고 하며, 현재 조정 중인 내용은 이주단지 조성사업 설계결과및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 (현행) 8,425억원 → (조정) 8,327 라고 함.<보상비 +163억, 공사비 +438억, 예비비감 699억>
총사업기간 연장 협의 : 2027년 → 2029년

또한 2024년 편성된 감리비 25억원 중 시공단계에서 소요될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약정 체결과 수수료 납부를 위한 21억 4,000만원도 불용될 예정임.

종합하면, 2024년 예산 682억 7,500만원(전년도 이월액 24억 7,100만원 포함 707억 4,600만원) 중 146억 200만원(예산현액의 20.6%)이 불용될 것으로 보임.

□ 한편, 2025년 예산안으로는 공사비 341억 8,800만원, 감리비 35억 5,800만원 등 40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2025년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세 부 내 용
공사비	34,188	○ 공사비 중 보상비 21,379백만원 전용 예정 - 토지 및 지장물 3차 감평결과 16,800백만원 - 국공유지 매입비 1,722백만원 - 부대비용 2,857백만원(한국부동산원 수수료 등) ○ 공사비 12,809 (우선시공분 공사) 예정
기본조사 설계비	96	○ 기본조사 관련 용역 96백만원 * 재해영향평가 용역 96백만원
실시설계비	1,912	○ 실시설계 보조사 관련 용역 * 설계보상금 지급
감리비	3,558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3,358백만원 ○ 건설사업관리 200백만원
시설부대비	500	○ 500백만원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24년도 동일하게 설정

※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제출(2024.10.16.)

□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진행 중이고 실시설계가 2025년 8월 무렵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공사비 예산으로 약 342억원이 편성되었음.

대규모 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를 반영하고,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음.[258)]

□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해 기본설계가 2024년 내 완료될 예정으로, 2025년 편성된 설계비는 재해영향평가 용역 완수금 지급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또한 공사비는 지장물 철거공사 등 우선시공을 위한 소요이고, 2025년도 토지 및 지장물 3차평가 결과를 반영한 토지보상비 전용소요 214억원을 포함 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건설보상비가 총사업비 한도에 도달하여 2025년 예산안에는 건설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공유지 유무상귀속여부(함평군, 국토부 등 협의) 및 3차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2025년도 예산에 건설보상비가 편성되지 않았기에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공사비

258)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76

일부를 보상비로 전용하여 토지·지장물 보상 및 국공유지 매입비에 활용하는 등 보상비 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매년 집행가능한 수준을 상회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불용 반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투자소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총사업비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보상비 적정 소요를 편성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의 당초 계획 및 추진 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지연 사유	비고
예비타당성 조사		'20. 11	-	-	
인허가	군관리계획 결정	'21.9.~'23.6.	'21.9.~'23.12.	구획계 조정 및 초지면적 확보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입안지연(구역계 확정)	완료('24.1.4.)
	문화재지표조사	'21.5.~'21.10.	'21.5.~'21.12.	완료	
	전략환경영향평가	'21.11.~'22.9.	'21.11.~'23.12.	완료	
	재해영향평가	'21.11.~'22.9.	'21.11.~별도통보시	사업순연('23.8.1.일시정지중) 실시설계 시 재개	실시설계 시 재개
	석면조사	'22.11.~'23.4.	'22.11.~별도통보시	조사 등 주민들의 출입 부동의 ('23.10.6. 일시정지중)	10월 재개 예정
	환경영향평가	'22.12.~'23.11.	'22.12.~별도통보시	사업순연('23.2.20. 일시정지중), 실시설계 시 재개	실시설계 시 재개
기본설계	기본설계 (토목 및 건축 등)	'21.9.~'23.6.	'21.9.~별도통보시	○지장물조사 거부, 토지출입 부동의 등 민원 발생으로 지연 ○총사업비 미확정에 따른 지연 ('23.9.1. 일시정지중)	총사업비 확정 후 완료 예정('24.12.)
	연구시설 설계공모	'22.6.~'23.6.	'22.6.~별도통보시		
	지반조사 및 토질조사	'21.9.~'23.3.	'22.8.~'23.9.	완료	
	철거설계(폐기물) 조사	'21.9.~'23.3.	'22.12.~'23.9.	완료	

구 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지연 사유	비고
건설사업관리(CM) 계약		'22.12.~'27.10.	'22.12.~28.11.	기본설계 지연에 따른 ('23.12~'24.7.) 중지	'24.8월 재개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		'23.9.~'24.10.	'25.8.~'26.3.	사업순연	기본설계 완료 후 추진계획
공사착공	우선시공	'24.10.~'24.12.	'25.9.~'26.4.	사업순연	실시설계 시 우선시공분 추진계획
	토목·건축 등 본공사	'25.1.~'27.12.	'26.5.~'29.4.	사업순연 실시설계 완료 후 추진계획	실시설계 완료 후 추진계획
토지보상	토지 및 지장물조사	'22.9.~'23.2.	'22.9.~완료시	지장물조사 거부, 토지출입 부동의 등 민원 발생으로 지연	지장물 조사 수행중 (12명 미실시)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	'23.3.~'23.6.	'23.4.~완료시	보상계획공고('23.4.) 이후, 1~2차 완료, 감정평가 수행 중	
	토지보상	'23.7.~'23.12.	'23.9.~완료시	협의계약 및 보상금 지급 중	협의계약 및 보상금 지급 중
	재 결	'24.1.~'24.8.	'26.3.~'26.11.	사업순연	실시설계인가고시 시 추진계획
이주단지조성	이주단지 조사설계	'21.11.~'22.10.	'21.11.~별도통보시	사업순연('24.4.9.~일지정지중)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완료('24.3.) 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협의조정중	총사업비 확정이후 완료 예정
	부지 매입	'22.8.~'23.10.	'22.8.~완료시	협의계약 및 보상금 지급 중	대지조성사업승인 후 수용재개 추진 계획
	이주단지조성 공사	'23.12.~'24.11.	'25.1.~'25.12.	총사업비 협의조정 지연으로 사업순연	총사업비 확정 후 입찰공고 추진 계획
	분양 및 입주	'24.12.~'25.6.	'26.1.~'26.6.	사업순연	공사준공 이후 분양
완 공		'27.12.	'29.4.	사업순연	

※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제출(2024.10.11.)

□ 한편, 농촌진흥청은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은 대형공사 입찰방법 중 하나로써,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 일정 단축을 위해 실시설계 및 공사를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을 말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9]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와 시공 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설계와 시공의 병행으로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 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기술 제안서 검토 및 협상 과정이 길어져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여지가 있다는 점, 기술 제안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계 변경이나 요구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유념하여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치유농업확산센터 구축 : 공사비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 치유농업확산센터구축 사업은 공사비의 이월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불용 발생으로 인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5년 공사비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치유농업확산센터 구축 사업은 2021년 3월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20.3. 제정)[260]을 근거로, 치유농업을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임.

2025년에는 2024년보다 14억 8,900만원이 감액(31.2%)된 32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261].

【 2025년도 치유농업확산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치유농업확산센터구축	4,245	4,780	368	3,291	△1,489	△31.2

26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61)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치유농업확산센터기반구축 (1136-330)

(나) 검토의견

□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경남 김해시에 부지 16,776㎡, , 연면적 6,000㎡의 규모의 교육·연구기관인 치유농업연구소를 구축 중임.

치유농업연구소는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농업 분야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 치유농업의 연구성과 실증, 서비스 품질관리, 산업적 육성 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계획임.

【 치유농업확산센터 구축 사업 개요 】

○ 사업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6,776㎡(연면적 6,000㎡)
○ 사업시행방법 : 농촌진흥청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건립·소유) 농촌진흥청, (운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재원조달 : 국가(80%), 지자체(20%)
○ 사업 기간 : 2021년~2025년(5년), 기획재정부와 사업 1년 연장 협의 중
○ 총사업비 : 291억원[262]('24.5.)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제출(2024.10.11.)

262) 당초 320억원이었던 총사업비는「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감액으로 인하여 2023년 5월, 291억원으로 조정됨

【 치유농업확산센터 구축 사업 조감도 및 공사 현장 】





문화재 정밀조사 사진



농작물 철거 중인 사진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제출(2024.10.28.)

□ 동 사업은 사업비 291억원(국비 231억원, 지방비 60억원) 규모로, 구축 기간은 당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2023년 4월,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연장되었음(2023년 4월).

【 치유농업연구소기반 구축 사업 세부 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2025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10.16.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안
치유농업연구소 기반 구축	7,200	4,245	2,579	376	4,780	7,359	548	4,052	2,511	3,291
건설보상비	1,399	1,399	-	-	-	-	-	-	-	-
기본조사 설계비	39	38	-	1	-	-	-	-	-	-
실시설계비	209	184	-	25	-	-	-	-	-	-
공사비	5,073	2,494	2,579	-	4,300	6,879	544	3,576	2,511	2,992
감리비	400	97	-	303	450	450	-	450	-	296
시설부대비	80	33	-	37	30	30	4	26	-	3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제출(2024.10.11.)

□ 농촌진흥청은 2023회계연도에 총 7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청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263] 및 총사업비 조정[264]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비, 건설보상비[265] 등 4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25억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63) 적정성 검토(조달청) : 계획·중간·실시 등 설계단계마다 사업 목적에 맞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사업 예산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

264) 총사업비 협의조정(기재부) :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비 증액, 감액 등 총사업비 조정

265) 2023년 건설보상비로 편성된 예산 13억 9,900만원은 토지보상 위탁 업무를 맡은 한국부동산원에 전액(지방비 포함 74억원) 집행('23.1.)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 협의 거부로 부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24년 농촌진흥청은 17필지[266]의 사업부지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5필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24.4.25.)[267]하였고, 2024년 8월 수용재결이 확정되어 미보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10월에 농촌진흥청으로 이전되었으나('24.10.2.)[268], 일부 토지주가 이의신청[269]을 추진 중이어서 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임.

□ 2025년 예산안 편성 내용은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을 위한 공사비 29억 9,2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억 9,900만원으로 총 32억 9,100만원이며, 2024년 이월될 것으로 예정된 40억 5,200만원을 포함하면 예산

---

266) 16,776㎡(1.68ha)

26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268) 수용개시일(10.2.) 전까지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토지수용을 완료하였으며, 치유농업확산센터 전체 건립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완료

26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현액은 약 73억 4,300만원임.

농촌진흥청은 공사비 65억 6,800만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7억 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음.

【 치유농업연구소기반 구축 2025년 공사비 집행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건명	'25년 집행내역		소요금액(백만원)	
공사비	건립공사	건축공사	4,578	6,568
		토목·조경공사	502	
		설비공사	201	
	전기공사		518	
	통신공사		199	
	소방공사		570	
감리비				746
시설부대비				29
합 계				**7,343**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제출(2024.10.15.)

□ 2024년은 민간 소유인 토지 대부분이 전체 부지의 중앙, 상단 부분을 차지하여 착공이 불가능하였으나, 농촌진흥청은 2025년 편성된 공사비의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2024년 11월 이후 착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11월 착공을 위해서는 문화재 표본조사[270], 건축허가, 착공계

27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상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2. 삭제 <2015. 8. 26.>
3.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영 제4조제2항제1호

승인[271] 순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경작 중인 농작물 등 지장물 철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특히, 2024년 10월 현재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3개 구역 중 2개 구역은 아직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반면, 조사가 실시된 1개 구역에서는 유의미한 문화재의 분포가 확인되어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 기간이 추가적으로 지연될 여지가 있음.

또한 협의보상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토지('24.3월)와 수용재결을 통해 이전을 완료한 토지('24.10월)의 농작물 철거 작업이 미진하여 표본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2024년 공사비는 전년도 이월액 25억 7,900만원을 포함한 68억 7,900만원이나, 10월 현재 5억 4,400만원(예산현액 대비 8%)에 불과한 금액을 집행하고 35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5억 1,100만원은 불용할 것으로 예상됨.

공사비의 이월이 매년 대규모로 발생[272]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비

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유산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271) 착공계(着工屆):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착수를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승인 : 착공계 승인이란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주나 시공사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착공계를 승인받는 절차를 의미함.

272) 공사비 이월 발생 현황: 2023년 2,579백만원, 2024년 4,052백만원(예정)

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문화재 표본조사 및 농작물 철거 등의 작업에서 추가적인 사업 추진 지연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25년 공사비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치유농업연구소기반 구축 2025년 공사비 집행 계획(안) 】

구 분		최초 사업 추진 당시 계획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	실제 추진 현황 ('24. 9. 기준)
기본계획 수립		'21. 1.~'21. 3.	'21 .3.~'21. 5.	'21 .3.~'21. 5.
부지 선정		'21. 4.	'21. 7.	'21. 7.
공공건축 사전검토		'21. 4.~'21. 5.	'21. 8.~'21. 9.	'21. 8.~'21. 9.
인·허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21. 7.~'22. 8.	'21. 7.~'22. 8.	'22. 2.~'23. 4.
	재해영향평가	'21. 7.~'22. 8.	'21. 7.~'22. 8.	'22.2.~'23. 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1. 7.~'22. 8.	'21. 7.~'22. 8.	'22. 2.~'23. 1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1. 7.~'21. 10.	'21. 7.~'21. 10.	'22. 10.~'22. 12.
실시설계 용역	계획설계	'21. 8.~'21. 11.	'22. 2.~'22. 4.	'22. 1.~'22. 4.
	중간설계	'21. 12.~'22. 3.	'22. 5.~'22. 8.	'22. 5.~'23. 4.
	실시설계	'22. 3.~'22. 6.	'22. 9.~'23. 3.	'23.5.~'23. 11.
토지보상		'22. 3.~'23. 1.	'22. 6.~'23. 7.	'22. 5.~'24. 10.
공사기간		'22. 11.~'24. 9.	'23. 7.~'25. 8.	'24. 11.~'26. 8.(예정)
시설완공		'24.9.	'25.9.	'26.8 (기재부와 사업기간 연장 협의 중)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제출(2024.10.11.)

□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3년 한차례 조정되어 2025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였던 동 사업의 사업기간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2026년 8월로 연장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함[273].

273)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조(사업기간의 관리)**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7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협의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농촌진흥청은 2025년 동 사업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추가적인 연장이 발생하지 않고 조속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계약서에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제1항의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축산 시험 연구(R&D) : 편성된 내역에 부합한 예산 집행 필요

○ 국립축산과학원은 연례적으로 축산 시험연구 사업의 외국인 전문가 초청경비 명목으로 편성된 사업추진비를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집행하고, 실제 외국인 전문가 초청 목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편성된 내역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축산 시험 연구 사업은 축산물 및 축산식품 품질향상, 국가단위 가축 개량·보급, 가축유전자원의 수집·보존, 탄소중립 저탄소 축산기술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024년보다 45억 7,500만원이 증액(9.3%)된 535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274].

【 2025년도 축산 시험 연구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축산 시험 연구	55,561	48,938	32,301	53,513	4,575	9.3

274)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축산 시험 연구(R&D,책임운영) (1232-300)

(나) 검토의견

□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축산 시험 연구의 내역사업에는 축산 생명환경 연구, 축산 자원 개발연구, 가축 유전자원 연구, 한우 연구, 가금[275] 연구, 난지축산[276] 연구, 축산 융복합 현장 실증 연구 등이 있음.

이러한 내역사업에는 사육사 및 연구원 등에게 지급되는 상용임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시험연구비, 연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 돈사 시설 및 한우 사육동 등의 개보수와 증축을 위한 공사비 등이 편성되어 있음.

또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비용과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업무협의회, 외국인 전문가 초청 경비 등을 위한 사업추진비로는 2024년에는 2,821만원, 2025년에는 3,821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275) 가금 : 닭·오리·거위 등 야생의 조류를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길들이고 품종개량을 하여 육성한 조류
276) 난지축산 : 재래가축(제주흑후, 제주재래흑돼지, 제주마 등)의 개량·증식 및 이용성 증진

【 축산시험 연구 사업 포함 비목 현황 】

비목	세부사업코드	내용
상용임금	110-0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시험연구비	210-13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
관리용역비	210-15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공사비	420-03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경비, 토지 정지공사비,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사업추진비	240-01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 경비

※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그런데 축산 시험 연구 사업의 사업추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외국인 전문가 15명의 초청경비를 편성한 것과는 달리 실제 외국인 전문가 초청 경비로 집행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4년간 축산시험 연구 사업 추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2021년				2022년			
	분야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축산생명환경연구	18회	7,200	20회	9,998	18회	7,200	18회	8,414
	축산자원개발연구	10회	3,000	8회	2,385	10회	3,000	10회	2,250
	가축유전자원연구	7회	1,400	5회	1,230	7회	1,400	9회	1,624
	한우연구	7회	1,400	8회	1,268	7회	1,400	5회	1,029
	가금연구	7회	1,400	6회	1,230	7회	1,400	6회	1,230
	난지축산연구	6회	1,200	7회	986	6회	1,200	7회	1,156
·외국인 전문가 초청경비		15명	4,611	-	-	15명	4,611	2명	166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업무 협의회		-	-	8회	3,114		8,000	13회	4,342
계			20,211		20,211		28,211		20,211[277]

구분	년도	2023년				2024년			
	분야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축산생명환경연구	18회	7,200	22회	12,602	18회	7,200	20회	8,851
	축산자원개발연구	10회	3,000	9회	2,951	10회	3,000	10회	2,462
	가축유전자원연구	7회	1,400	7회	1,433	7회	1,400	4회	820
	한우연구	7회	1,400	7회	1,725	7회	1,400	5회	836
	가금연구	7회	1,400	7회	800	7회	1,400	4회	740
	난지축산연구	6회	1,200	6회	1,485	6회	1,200	6회	1,382
·외국인 전문가 초청경비		15명	4,611	-	-	15명	4,611	-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업무 협의회		20회	8,000	22회	7,215	20회	8,000	11회	3,176
계			28,211		28,211		28,211		18,267

※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제출(2024.10.10.)

277) 2022년 추경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감: 28,211천원 → 20,211천원(△8,000)

□ 농촌진흥청은 지난 4년간 축산생명환경 시험연구분야에서 외국인 전문가 14명을 초청하는 경비 약 430만원, 난지축산 시험연구분야에서 외국인 전문가 1명을 초청하는 경비 31만원, 총 15인 초청경비 461만원을 답습적으로 편성해오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매년 4명~9명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초청경비로 편성된 사업추진비 예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른 방역 업무협의회 등 예상치 못한 긴급 현안 등에 활용하였음.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가 초청경비의 미집행 사유는 여비 외의 경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즉, 외국인 전문가 초청 시 축산 시험 연구 내 국외업무여비 목적의 시험연구비를 사용하고, 상대측 기관의 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초청 경비 명목으로 편성된 사업추진비를 매년 해당 목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 편성 및 심의권을 저해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 최근 3년간 축산 시험 연구 사업추진비 편성 및 집행 현황[278] 】

(단위 : 천원)

연도	주제	참석자 및 명수	체재비 등 부담	예산
2022	(국제공동연구) 가축유전자원 생태계 관리 역할 및 효율적 보존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추진 상황 공유, 시료 제공, 기술 전수	Asankadyr ZHUNUSHOV 등 2명	상대측 기관	-
			축산시험연구 (사업추진비)	166
2022	(국제협력과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확산 모델 실험 1년차 결과 논의	Anna Lacasta-Marin 등 4명	상대측 기관	-
2023	(국제협력과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확산 모델 실험 연구 결과 논의	Duy Tung Dao 등 2명	상대측 기관	-
2023	(세미나) 미국의 저지종 개량, 사양, 질병관리 등 축군 관리 현황 주제 발표 및 토의	Cedric Gondro 1명	상대측 기관	-
2023	난축맛돈과 제주 흑우의 근육내 지방 축적 및 근육 성장관련 유전자 발굴 및 기능 분석	이기춘 1명	축산시험연구 (국외업무여비)	6,355
2024	(국제심포지엄) 한우연구 발전을 위한 주제 발표 및 토의	Nagano Masashi 등 4명	축산시험연구 (국외업무여비)	14,735
2024	(국제심포지엄) 국내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을 위한 주제 발표 및 토의	NOMOTO HANAE 1명	축산시험연구 (국외업무여비)	1,673
2024	(세미나) 한일 농장동물 질병연구 협력방안 학술교류 세미나 개최	마코토 오사키 등 4명	상대측 기관 및 농진청	예정 (10.29~)
합계		**19명**		**22,929**

※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제출(2024.10.10.)

□ 2025년 축산 시험 연구 사업의 사업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82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농촌진흥청은 2024년부터 축산분야 현안해결·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도 축산연구기관 등과의 협의회, 교류 확대 추진에 따라 사업추진비를 증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279].

278) 2021년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미초청

279) '24년 신규 및 재개 대외 활동: '농식품부-축산원 소통 간담회', '축산 관련 협회장 간담회', '도 축산연구기관장 협의회', '젊은 과학자·중견 과학자 협의회' 등

□ 2025년 역시 외국인 전문가 15인을 초청하는 경비 46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례적으로 사업추진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비를 대신하여 실제 집행하게 될 국외업무여비 비목의 시험연구비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된 내역에 부합한 예산 집행을 하는 등 예산 편성의 비목과 실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2025년 축산 시험 연구 사업추진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안 편성		
구분		금액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축산생명환경연구 분야 26회	10,200
	축산자원개발연구 분야 25회	5,000
	가축유전자원연구 분야 12회	2,400
	한우연구 분야 12회	2,400
	가금연구 분야 12회	2,400
	난지축산연구 분야 11회	2,200
·외국인 전문가 초청경비 15명		**4,611**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업무 협의회 23회		9,000
계		38,211

※ 자료: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제출(2024.10.10.)

6) 농업기술 정보화 : 소속기관 운영 시스템 내역사업 이관 필요 등

○ 농촌진흥청의 각종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이 농업기술정보화사업에 19개의 내역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혼동을 초래하고 있고, 실제 소속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 동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예산의 집행 및 관리와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역사업의 이관이 필요해 보임.

○ 농촌진흥청은 각 사업의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역사업의 명칭을 조정·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전략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024년보다 5억 9,100만원이 증액(7.4%)된 85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280].

【 2025년도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3결산	'24예산(7월기준)		'25 예산안 (B)	증 감	
		예산(A)	집행		(B-A)	%
농업기술 정보화	10,129	8,006	4,228	8,597	591	7.4

28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농업기술 정보화(정보화) (2333-500)

(나) 검토의견

□ 농촌진흥청의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화 시스템은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내 총 19개의 내역사업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이 중 농촌진흥청 내부 업무시스템으로는 농업분야 국가 연구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농업R&D 데이터 플랫폼,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을 지원하는 차세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 시스템(ATIS)[281], 농업현장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사물인터넷 작물 정밀관리기술 정보 서비스 등 6종이 있음.

대민 서비스로는 핵심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농업기술 콘텐츠, 농업기술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업기술정보서비스, 농촌진흥청에서 보유 중인 농업관련 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농업공간정보 서비스 등 8종이 있음.

그 밖에 치유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치유농업정보망, 농촌지도사업 업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과학영농시설 사용신청 등을 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농가 소득조사 자료를 입력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등 5종의 시스템은 내부업무 및 대민서비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281) ATIS : Agriculture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농업기술정보화 내역 사업 현황 】

연번	내역 사업명	대상 시스템명	구축 년도	서비스 대상	주요 내용	소관부서
1	농업R&D 데이터 플랫폼 구축	농업 RnD 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	'23~'25	내부	·농업분야 국가 연구데이터의 수집·저장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농촌진흥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2	맞춤형 농업기술 콘텐츠 확충	-	'01~계속	대민	·작목별 최신기술 등 핵심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동영상(숏폼 형태 포함),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3	치유농업정보망 운영	치유농업정보망	'22~'23	내부, 대민	·치유농장,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관리	
4	차세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	차세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22~'23	내부	·국가연구개발 정책에 따른 농업R&D 과제 및 성과관리 등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	
5	농업기술정보 서비스 운영	국가농업기술공유네트워크	'14~'15	대민	·농업기술 포털로서 영농기술, 품종, 농약, 식품, 농업경영, 도시농업, 농업기술동영상 등 농업기술정보의 종합적인 제공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12	대민	·농촌진흥청 소개, 조직, 채용정보, 정책정보 등 기관 안내	
6	연구행정정보 시스템 통합운영	통합행정 시스템	'13~'15	내부	·물품신청, 당직, 차량, 회의실, 간행물, 출입증, 시설물, 공고, 후생식당, 근로자 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 관리	
		국제기술협력포털시스템	'12~'13	내부	·공무국외출장,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해외과학자 초청 등 국제기술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	
7	농업과학기술 전자도서관 운영	농업과학 도서관	'09~'12, '16	대민	·농촌진흥청 발간도서, 외부 전자학술정보 등 국내외 농업과학기술 문헌정보 제공	
8	사물인터넷 작물 정밀관리기술 정보 서비스	사물인터넷 작물정밀관리 기술 정보시스템	'17~'19	내부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구현을 위한 스마트 팜 등 농업현장의 센서 데이터 등 수집관리	
9	대국민 행정업무 자동화 서비스 운영	-	'21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급여계산, 통계자료 수집 등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 관리	
10	국가농작물병해충 관리시스템 운영	국가병해충관리 시스템	'10~'22	대민	·병해충 피해의 최소화 및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도감, 예찰, 예측정보 및 상담서비스 등 제공	
11	농업공간정보 서비스 운영	농업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21~'22	대민	·병해충, 토양특성도, 토양 적성 등급, 미래 재배적지, 이상기후정보, 미래기후 등 청에서 보유중인 농업관련 공간정보의 통합서비스 제공	

연번	내역 사업명	대상 시스템명	구축 년도	서비스 대상	주요 내용	소관부서
1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22~'24	내부, 대민	·농촌지도사업 업무관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과학영농시설의 사용신청 등 관리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13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09	내부, 대민	·국가승인통계인 농가 소득조사 자료의 입력관리,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을 통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14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농약안전정보시스템	'20~'22	내부, 대민	·농약의 생산, 등록, 판매, 교육 등 농약안전사용 관련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먹거리 안전 강화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15	농업과학기반기술정보서비스 운영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	'09~'18	대민	·토양환경지도, 비료사용처방, 토양검정 등 토양환경정보 제공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
		농업기상정보시스템	'10~'16	대민	·농업기상관측, 분석, 지도서비스 등 농업기상정보 제공	
		농업인건강안전정보시스템	'09~'16	대민	·농작업안전교육, 예방정보, 통계자료 농업인안전정보 제공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09. '14~'16	대민	·발효식품, 식품영양·기능성정보, 식단관리 등 농식품정보 제공	
		농업유전자원정보시스템	'10~'16	대민	·유전자원 관리, 검색, 분양, 기탁 등 농업유전자원정보 제공	
16	식량작물 우량계통 품종관리시스템 운영	작물연구정보시스템(CRIS)	'17~'19	내부	·식량분야 신품종 육종 관련 전과정의 체계적인 관리(육종자원관리, 교배대장관리, 작황분석 등)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
17	기후변화 대응 과수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	'16~'18	대민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의 생물계절 변화 등 연구수행을 위한 생육정보, 과실 품질정보, 주산지 기상 관측정보 등 수집·제공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18	국가단위 축산농장 지원시스템 운영	축사로시스템	'13~'17	대민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종별(한우, 젖소, 가금, 돼지) 농장기록관리(개체정보, 번식정보, HACCP기록, 경영정보 등) 지원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19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시험관리시스템 운영	가축인공수정사 자격관리시스템	'20	내부, 대민	·가축인공수정사 인력양성을 위한 자격시험 정보 안내 및 원서접수, 문제은행, 합격자, 면허정보 등 시험관리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제출(2024.10.19.)

【 농업기술 정보화 내역 사업의 비목별 예산 편성·집행 현황 】

시스템	비목	2024		2025	시스템	비목	2024		2025
		편성	집행 (9월말)				편성	집행 (9월말)	
농업 RnD 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	공공요금 및 제세	207	141	424	국가병해충 관리시스템	관리용역비	300	218	300
	일반연구비	478	286	1,041					
	자산취득비	48	48	129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	관리용역비	-	-	568	농업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관리용역비	100	62	100
	일반연구비	579	371	-					
	자산취득비	355	355	-					
치유농업 정보망	관리용역비	211	153	240	흙토람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관리용역비 (통합 편성 및 집행)	900	540	900
차세대농촌 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관리용역비	316	230	300	농업기상정보 시스템				
					농업인건강안전정보시스템				
국가농업기술 공유네트워크	관리용역비 (통합 편성 및 집행)	936	698	936	농식품종합 정보시스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업유전자원 정보시스템				
통합 행정시스템	관리용역비 (통합 편성 및 집행)	500	396	534	작물연구정보 시스템(CRIS)	관리용역비	100	70	100
국제기술협력 포털시스템									
농업 과학도서관	관리용역비	331	235	331	과수생육·품질 관리시스템	관리용역비	93	65	93
사물인터넷 작물정밀관리 기술 정보시스템	공공요금 및 제세	232	145	282	축사로시스템	관리용역비	150	88	150
	관리용역비	538	331	538					
	자산취득비	35	35	35					
농업경영종합 정보시스템	관리용역비	100	59	90	가축인공수정사 자격관리시스템	관리용역비	81	47	81
농약안전정보 시스템	관리용역비	500	307	500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제출(2024.10.11.)

□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방식과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우선,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내에서 농촌진흥청의 각종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이 각각의 내역 사업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서 혼동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더욱이 예산의 편성 기관과 실제 집행하는 기관이 다른데,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이 운영하는 정보화 시스템이 동 사업의 내역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즉, 농촌진흥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이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받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처리 과정이 수반되어 예산의 집행 및 관리와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후 시스템을 실제 운영·관리하는 주체의 소관 사업으로 내역사업을 이관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내 소속기관 운영 정보화 서비스 내역사업 】

사업대상 시스템	'24	'25	정보화서비스 내용	실제 운영부서
농식품종합 정보시스템	136	136	전통 음식에 대한 문화, 식품, 영양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국립농업 과학원
농업기상 정보시스템	169	169	기후 변화 대응 첨단 농업기상응용연구 필요성 증대 및 농업기상정보 신뢰성 제고를 통한 현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강화	
농업인건강 안전정보시스템	108	108	농작업 안전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농업인 건강안전 제고를 위함	
토양환경 정보시스템	226	226	전국 농경지의 토양검정자료를 활용한 시비처방, 재배적지 선정 등 농경지 활용 종합정보 제공	
농업유전자원정보시스템	261	261	농업유전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GMS) 보완 및 운영 최적화, 법적 업무인 농업유전자원의 기초정보 관리, 자원 등록·보존·분양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	
작물연구 정보시스템	100	100	식량작물연구 및 행정 업무를 위한 내부업무시스템	국립식량 과학원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	93	93	기후변화 관련 과수 생물계절변화, 재배적지, 생산성 변화 관련 연구활동 수행을 위해 생육데이터 및 기상관측 정보, 영상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과수분야 종합 농업기술정보 제공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가축인공수정사 자격관리시스템	81	81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시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험관리 업무 지원	국립축산과 학원
축사로시스템	150	150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농장관리 서비스 제공, 가축사육기상정보 제공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제출(2024.10.1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다음으로, 농업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운영, 농업 기술정보 서비스 운영, 농업 과학기반 기술정보 서비스 운영 내역사업은 유사한 명칭으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내역사업별로 사업대상과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역사업의 명칭만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지 유추하기 어려워 예산 편성과 검토, 사업 내용 파악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각 사업의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역사업의 명칭을 조정·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중 유사명칭의 내역사업 】

내역사업 명칭	사용 대상	내역사업 내용	시스템 운영기관
농업 과학기술 정보 서비스 운영	내부, 대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과학영농장비 지원 등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 * 대상 시스템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도정책과
농업 기술 정보 서비스 운영	대민	영농기술, 품종, 농업경영,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업, 도시농업, 농업정책 및 제도 등 다양한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 * 대상 시스템 : 대표 홈페이지, 국가농업기술공유네트워크 등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데이터정보화 담당관실
농업 과학기반 기술정보 서비스 운영	대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토양환경, 농업기상, 농업인안전, 농식품, 농업유전자원 등 농업 기반기술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5개 시스템 운영 * 대상 시스템 : 토양환경정보시스템, 농업기상정보시스템, 농업인건강안전정보시스템,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업유전자원정보시스템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

※ 자료: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제출(2024.10.1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 ’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11억원으로 ’24년도(11억원)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1,118	1,118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4	34	-	-
○ 기타경상이전수입	1,084	1,084	-	-

※ 자료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69억원으로 ’24년도(75억원) 대비 8.0%(6억원)가 감소하였음.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농작업재해예방 사업이 ’24년(25억) 대비 20.6%(5억원) 증가한 반면,

농업기술실용화기술R&D지원(R&D) 사업이 ’24년(15억) 대비 60.0%(9억원)가 감소하였고, 농업기계안전교육 사업이 ’24년(22억) 대비

10.0%(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고객현장지원 사업이 '24년(14억원) 대비 5.0%(1억원) 감소하였음.

【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7,518**	**6,849**	**△669**	**△8.9**
<구조개선사업계정>	7,518	6,849	△669	△8.9
○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R&D)	1,500	600	△900	△60.0
○ 농작업재해예방(보조)	2,505	3,020	515	20.6
○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2,156	1,940	△216	△10.0
○ 고객현장지원	1,357	1,289	△68	△5.0

※ 자료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 ’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16억원으로 ’24년도(25억원) 대비 36.0%(9억원) 감소되었음.

주된 감액 사유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이 15억원으로 ’24년(24억원) 대비 37.5%(9억원) 감소함에 따른 것임.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4예산 (A)	’25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2,446**	**1,516**	**△930**	**△38.0**
<지역자율계정>	**1,845**	**1,115**	**△730**	**△39.6**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	4	△2	△76.5
○ 기타경상이전수입	1,828	1,111	458	△39.2
<지역지원계정>	**546**	**346**	**△200**	**△36.6**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6	7	△9	△56.3
○ 기타경상이전수입	530	339	△191	△36.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3	53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	1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2	52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	2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	2	-	-

※ 자료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

□ ’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138억원으로 ’24년도(852억원) 대비 33.6%(286억원) 증가하였음.

계정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자율계정은 585억원으로 ’24년(679억원) 대비 13.4%(91억원) 감소하였고, 지역지원계정은 525억원으로 ’24년(147억원) 대비 257.9%(379억원) 증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24억원으로 ’24년(25억원) 대비 3.6%(1억원) 감소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4억원으로 ’24년(5억원) 대비 1억원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4년 예산(A)	’25년 예산안(B)	증감	
			(B-A)	%
총 계	**85,234**	**113,812**	**28,578**	**33.5**
<지역자율계정>	**67,858**	**58,500**	**△9,058**	**△13.4**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67,858	58,500	△9,058	△13.4
<지역지원계정>	**14,675**	**52,528**	**37,853**	**257.9**
○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	7,764	7,764	-	-
○ 신기술보급사업	-	38,907	38,907	순증
○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3,951	3,672	△279	△7.1
○ 농촌자원소득화지원	2,960	2,185	△775	△26.2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474**	**2,384**	**△90**	**△3.6**
○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	484	484	-	-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1,900	1,900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500**	**400**	**△100**	**△20.0**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500	400	△100	△20.0

※ 자료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2024.10.25.)